

2002년 가을호

언론중재

2002년도 정기세미나

대주제 :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 선거보도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기획연재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③

언론중재

2002. 가을

차 례



계간/2002년 가을호 • 제22권 • 제3호/통권84호
 인쇄/2002년 9월 25일 • 발행/2002년 9월 30일
 등록/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영식 • 편집인/최정
 인쇄인/이병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정기세미나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5 •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 권혁남
- 18 • 선거보도심의 청구에 비친 언론보도 • 김영호
- 30 •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 이용식
- 40 • 종합토론

기획인사

51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 주소 ③ • 한영학

언론보도의 인적

60 • 위법적 취재관행과 탐사저널리즘 • 이용성

위원칼럼

66 • 언론의 “마녀사냥” • 최선열

해외동향

68

자료

- 74 • 언론중재신청사례
- 106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2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2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158

위원회소식

164

언론법제리뷰

166

지상중재

168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삼자윤리실적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2년도 정기세미나



때 82002. 9. 5(목)~9. 7(토)
 곳 8:낙산비치호텔

○발표자

- 권희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영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이용식 (문화일보 정치부장)

○사회자

- 주동환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사

- 김관훈 (경남신문 사회부장)
- 김진홍 (국민일보 정치부 차장)
- 신성범 (한국방송 정치부 차장)
- 양철훈 (서울방송 정치부 차장)
- 육심무 (충청일보 정치부장)
- 윤동영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
- 윤재준 (경인일보 정치부장)
- 이인수 (인천일보 정치부장)
- 이준영 (부산일보 정치부 차장)

최종철 (영남일보 정치부 차장)

한종태 (대한매일 정치부 차장)

황영식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중재위원

- 박영식 (위원장)
- 송정제 (부위원장)
- 송선무 (서울 중재위원)
-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양삼승 (서울 중재위원)
-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 이병훈 (서울 중재위원)
-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이용근 (대구 중재위원)
- 허광옥 (광주 중재위원)
- 이연수 (광주 중재위원)
- 조군상 (대전 중재위원)
- 김광옥 (경기 중재위원)
- 한영달 (강원 중재위원)

우종인 (충북 중재위원)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선거기사심의위원

-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성한표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 임상택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영식 (홍보관리관)
- 안병도 (공보과장)

○사무처

- 최 정 (사무총장)
- 김용주 (기획실장)
- 임병국 (중재심의실장)
- 박종만 (전문위원)

〈제1주제〉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I. 머리말

오늘날 민주주의는 분명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증거물이다. 선거에서 주인공은 일반 공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반면에 정치인과 후보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언론은 뽑는 사람보다는 뽑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는다. 일반 공중은 겨우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공중들이 선거에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고,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지지받고 있는 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여론조사 역시 어디까지나 뽑히는 사람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모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으로 규정된 민주주의와 실천적 민주주의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이지만 참여민주주의는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 끝났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각종 부정부패 게이트, 월드컵과 대통령선거 열풍 등 여러 원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공중들이 정치와 선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과 유권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불행히도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언론은 자유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언론이 정치권과 공중을 연결해주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자와 언론학자들은 언론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석·박사
- 미국 인디애나, 플로리다 주립대 방문교수
- 언론중재위원, 호남언론학회장
- 저서 :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과 선거제도』 외 다수

다시 말해 언론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감, 냉소주의, 무관심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media malaise theory)이다.

이제 16대 대통령선거가 겨우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언론이 유권자들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 문제점

우리 나라 유권자들이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불공정 보도, 즉 보도의 편파성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의 자질, 정책이나 이슈 등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피상적이고도 흥미 위주의 보도에 대한 불만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보도가 대체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었으며, 아울러 흥미 위주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상적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언론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선거보도의 문제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선거의 과열, 불법을 조장

선거에 있어서 우리 언론은 매우 조급하다. 언론은 선거일로부터 수개월 전, 때로는 1년여 전부터 “○○선거를 뛰는 사람들”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출마 예상자들의 경력과 입장, 강점 등을 보도하여 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촉발시키고 후보들간의 대결 양상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언론이 선거를 과열시키고, 불법 선거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언론은 지난 연말부터 소위 7룡, 9룡 운운하면서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도하였고, 이들간의 TV토론을 경쟁적으로 벌였다. 이와 같이 언론이 후보들간의 경쟁심과 조바심을 불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는 ‘선거(경선) 과열’, ‘선거(경선) 혼탁’ 등으로 선거관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여 그 모든 책임을 후보들에게 떠넘긴다.

2. 가십과 스케치 기사의 강조

선거 기간에 우리 언론, 특히 TV방송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기사는 가십이나 스케치 기사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부분이 후보들의 재담, 각 참모들과 정당 대변인들의 상대방 비방 등 자극적인 내용이나 아무 쓸모도 없는 말장난들이어서 선거보도를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텔레비전 선거보도의 69.2%가 후보들의 선거운동 장면이나 선거 유세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스케치 기사이며, 스트레이트 뉴스가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TV 선거 기사의 94.9%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케치 기사와 스트레이트 뉴

유권자들은 보도의 편파성과 피상적이고
흥미위주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만

스인 셈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사는 5.1%에 지나지 않아 텔레비전 뉴스는 매우 피상적인 선거 정보만을 전달해 준 셈이다.¹⁾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나라 TV방송사 선거 뉴스 보도의 96%가 피상적인 정보들이었다.²⁾

3. 전략적 대결 보도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언론이 전략적 대결 중심의 보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1997년의 15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2002년의 16대 대선 역시 각 정당의 예비선거 때부터 다자 구도가 펼쳐졌다. 이에 따라 우리 TV방송은 선거판을 주로 후보들간의 대결의 구도로 상정하고 후보들의 캠페인 전략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우리 언론은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게임을 즐기도록 만든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우리 언론은 소위 3자 대결, 7자 대결 등등의 가상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느 후보가 지난번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에 관한 추이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전략적 대결 스키마를 갖고 있는 우리 언론은 선거 자체를 흥미로운 게임이나 전쟁으로 인식하며,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목표를 오직 승리로 묘사한다. 따라서 언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선거에서의 승

리만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인 것으로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대결 스키마는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또한 선거에 대해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4. 편파보도

우리 나라 50년의 선거사를 뒤돌아보면 언론의 편파보도 시비로부터 한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시비의 내용이 바뀌었다. 적어도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 해도 언론의 편파보도와 관련된 시비는 전적으로 여당편향성을 둘러싼 것들이었다. 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편파보도의 시비는 소위 조중동의 친한나라당 편향보도와 한겨레, 대한매일, 그리고 TV방송사들의 친여당 편향성이라는 양극화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를 둘러싸고서 일부에서는 아예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미디어 지지"(media endorsement)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5. 경마식 보도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언론의 선거캠페인 보도 역시 '경마식(horse-race)' 보도 방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의 TV뉴스를 분석해 보면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후보자 선거 유세'와 관련된 기사인데 전체 기사의

1) 권혁남,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서울 : 나남, 1997.

2) 권혁남,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선거 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43~45호, 1999, pp.5~44.

41.6%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각 정당의 총재나 선대위원장 등 수뇌부의 지역 순방 유세가 20.6%,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전략과 관련된 캠페인 기사가 11.2%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후보자 등록, 전국구 후보 명단' 등이 7.3%이며, 정책이나 이슈와 관련된 기사는 겨우 4.9%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의 절대 다수인 85.2%가 소위 경마식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마식 보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전체 텔레비전 선거 보도의 66.0%를 차지하였다.⁴⁾

6. 이슈 보도에 인식

우리 나라 언론은 한결같이 후보들의 선거 유세나 득표 활동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선거 유세마저도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 이슈보다는 유세장 분위기나 유세장 폭력을 중심으로 기사화하는 경향이 많아 각 후보들의 국가 또는 지역을 위한 정책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그 정책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실천 불가능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후보들의 캠페인 활동을 중심으로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슈나 후보들의 개별적인 공약이 실릴 수 있는 해설이나 배경

기사에 대한 지면 할애가 매우 부족하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TV방송사들의 이슈 보도는 겨우 4.9%이었다.⁵⁾ 이렇게 부족한 해설, 배경 기사마저도 각 언론사의 독자적인 시각이나 자체 평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각 정당이나 후보가 전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기사화하기 때문에 언론은 필경사, 앵무새, 확정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7. 정당 수뇌부 중심의 선거 보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초점이 되는 사람은 후보가 아니라 정당의 지도자들과는 점이다. 지난 16대 총선 보도에 있어서도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연일 이인제 위원장-이회창 총재-김종필 총재 등의 일정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지난 1996년의 15대 총선의 TV뉴스를 분석한 결과 선거 뉴스는 불과 약 10명 내외의 정당 지도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 10명의 정당 수뇌부들의 기사는 전체 선거 기사의 약 30%를 독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소속을 포함한 5개 정당의 1,389명의 후보들은 58.9%의 기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만 하였다.⁶⁾

8. 부정주의 보도

선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선거에 대한 냉소

3) 권혁남, 앞의 책, 1997.

4) 권혁남, 앞의 논문, 1999.

5) 권혁남, 앞의 책, 1997.

6) 권혁남, 앞의 책, 1997.

선거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 정치 혐오감 등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 선거보도 내용이 많아

주의,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부정 선거, 흑색선전, 선거 무관심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다. 권혁남⁷⁾은 TV선거 보도의 부정적인 내용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에 의하면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지방 선거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지방 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는 전체의 33.2%이었고,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13.8%,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0.6%의 비율을 보였다.

언론은 선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면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선거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 그리고 투표 기권 욕구를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9.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들이나 언론 모두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역감정의 조장이나 부추김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가끔씩 언론은 선거를 지역간의 대립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를 한마디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지역주의이다. 지역 갈등, 지역 대립, 지역 대결, 지역감정, 지역 패권주의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애향심·지역적 단결 등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분열·대립·갈등, 집단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 의미가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지역주의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선거가 바로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표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전략이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때로는 애향심으로 표현되는 지역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발전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문제이다. 즉, 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무조건적 배타성과 내 고장 인물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더 큰 문제는 지방언론이다. 지방지들은 대체로 지역 정서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기거나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0.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확성

‘한편의 코미디’, ‘세계 선거여론조사 사상 최악의 우둔한 결과’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방송사들이 야심적으로 준비한 투표자 여론조사가 참담하게 실패하자 로이터 등 외신이 타전한 우리나라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평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개표 결과 253개 선거구 중 무려

7) 권혁남,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TV방송의 무관심과 부정적 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2호(겨울), 1998.

39군데에서 당락이 바뀌었고, 비록 당선자를 맞추기는 하였지만 많은 선거구에서 표본오차의 범위를 벗어났다. 결국 3,500명 조사원의 노력과 16억원의 막대한 조사 경비는 방송 전파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었다.

이 같은 참담한 실패는 불행히도 4년 후인 2000년 16대 총선에서 또다시 똑같이 반복된다. 3대 방송사들이 약 50억원을 들여 실시한 16대 총선 여론조사는 제1당조차 맞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227개 선거구 중 20여 곳에서 당락이 뒤바뀌고 말았다. 이에 따라 방송사 여론조사만을 믿었던 중앙일간지들은 가판과 지방판에서 모두 오보를 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국의 신문, 방송, 통신들도 맥없이 같은 오보를 내고 말아 두 번 연속 세계적으로 망신을 사고 만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여론조사가 본격화된 것이 이제 겨우 10여 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선거여론조사의 연속적인 참패는 매우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심각한 반성도 없이 15대와 16대 총선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고 '오보를 널망정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 것이 낫다'는 경쟁 철학을 버리지 않는 한 여론조사의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언론사들은 오직 관세 분석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해 언론사들은 정당 또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슈 중심의 여론조사보다는 오직 경마식 저널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어느 후보가 얼마나 앞서 있고, 후보들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 선거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를 앞두고 거의 동시에 실시되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들이 제각기 달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점 역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1. TV토론 보도의 문제

우리 나라 선거에서 TV토론은 선거캠페인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TV토론이 끝난 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TV토론을 주최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TV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언론사들은 TV토론을 경쟁적으로 주최하면서도 막상 TV토론이 끝나면 TV토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진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TV토론이 끝나면 토론을 주최한 언론사는 토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랑하고, 시청률이 얼마였고, 여론조사 결과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변화가 나타나 자사가 주최한 TV토론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자랑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어느 후보가 토론을 잘하거나 못했으며, 이번 TV토론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 정도를 공개한다. 우리 언론은 TV토론을 보도할 때 오직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①TV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이겼나? ② 왜 이겼나? ③ 그리고 후보들의 토론 능력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

후보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Ⅲ. 새로운 선거보도 방안

앞으로 우리 언론의 선거보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안들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1. 무엇보다도 후보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뽑는 사람인 유권자들을 철저

히 배제하고, 오직 관전자로서만 취급하고, 뽑히는 사람인 후보들만을 스포트라이트시키는 선거보도 방식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보도는 유권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 또는 공중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다. 시민저널리즘이란 간단히 말해 일반 공중의 관점에서 선거보도를 하고, 선거보도 과정에 일반 공중을 참여시키는 저널리즘을 말한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현안과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선거보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은 새로운 선거보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 각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을 무조건 보도할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요소	비중이 커지는 요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의제	시민들이 제시하는 의제
후보자 경쟁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선거운동 전략	후보자의 제안 또는 해결방안
이벤트 중심적 보도	이슈를 비교하는 이슈 중심의 보도
에피소드를 다루는 보도	여러 핵심 요인에 대한 반복적 보도
개별적인 이슈	상호 연관된 이슈
언론담당자	사실 점검팀
후보자의 인기	후보자의 적격성
후보자의 개인적 행태	당면 이슈와 연관된 후보자의 행태

정책과 공약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여 보도해야 한다.

우리 언론은 후보들의 인물과 사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 언론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철저히 비교 검토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정밀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비교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문에 대해 언론은 항시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자체적인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또는 정책검증위원단을 구성하여 가동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후보들이 제기하는 정책이나 이슈를 강조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도록 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제기한 이슈나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을 취재하여 보도토록 한다.

선거에서 논의되는 이슈나 정책들은 주로 후보와 언론, 그리고 공중들에 의해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후보들이 선거에서 중요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언론은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언론이 스스로 중요 의제를 개발하여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제에 비하면 양적으로 소수이며, 공중들이 제기하는 의제는 그야말로 극소수이다. 이와 같이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제(candidate

agenda)나 미디어 의제(media agenda)에 비해 공중 의제(public agenda)가 언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선거과정에서 공중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은 공중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이들 공중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반응을 비교 보도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이름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훨씬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4. 해설, 배경기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TV방송의 대부분의 선거기사는 가십이나 스케치기사로 집중되어 있다. 기껏해야 후보들간의 말장난이나 비방으로 가득찬 흥미 위주의 가십기사나 선거 유세장 분위기, 선거운동원들간의 충돌, 유권자들의 반응이 고작인 스케치기사를 과감히 줄이고 이슈와 정책 중심의 해설, 배경기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

5. 모든 후보들에 대한 산술적인 균형보다는 뉴스 밸류를 더 중요시하여 경쟁력이 있는 몇몇 주요 후보들을 차별적으로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소 후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언론은 후보들에 대한 보도량에 있어서 산술적인 균형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몇몇 주요 후보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를 두고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 대체로 우

우리 언론은 산술적인 균형보도에 충실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절대적으로
뉴스밸류에 따른 보도가 원칙

리 언론은 후자보다는 전자인 모든 후보들에 대한 산술적인 균형성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 6월에 끝난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신문과 방송사들은 뉴스와 TV토론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였다.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지면이 제약되어 있는 언론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들에게 단지 그들이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귀중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나는 것이다.

사실 모든 후보들에 대한 산술적인 균형보도에 우리 나라 언론만큼 충실한 나라도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뉴스 밸류에 따른 보도가 원칙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차별적인 보도에 대해 군소 후보들은 후보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아닌 편파적 보도라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거는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를 위한 제도이며, 언론 역시 정치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군소 후보들에게도 최소한의 시간과 지면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6. 지역감정 보도는 철저하게 자제해야 한다. 방송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정치인들의 지

역감정 조장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언론이 직접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편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지만,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그대로 인용보도해서도 안된다.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내뱉는 지역감정 발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보도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영남 정권재창출', '지역감정 책임론', '지역감정 괴수론' 등의 시비가 홍수를 이루더니 급기야는 "TK와 PK가 협력해야 영남정권을 만들 수 있다." (3월 5일 민주국민당 김윤환 후보의 대구 발언), "신당이 실패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한다" (3월 5일 김광일 후보의 부산 발언)는 발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 같은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발언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정치인들은 더욱 더 지역감정에 매달렸고, 언론은 이를 다시 보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감정 사태가 악화되어가자 급기야 2000년 3월 9일 방송3사 사장들이 긴급 회동하여 앞으로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자극 발언 보도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방송3사의 조치는 언론계 내부에서 즉각적인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지역감정 보도의 자제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발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지역감정 보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제한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첫째, 무엇보다도 알 권리는 지고 지식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권과 명예보호는 물론이고 사회안녕 질서 또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알 권리가 유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인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선거에서 언론은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흔한 말로 지역감정 문제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 언론은 정당 대변인이나 후보들의 지역감정 자극발언을 무책임하게 인용 보도하는 것조차 자제해야 한다. 사실 우리 언론은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 매달려 욕설에 가까운 지역감정 발언을 전혀 걸러내지 않은 채,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언론은 좀 더 책임 있는 보도를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감정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주의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 참여율의 저하는 자칫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시대 모두의 아픔인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치권과 함께 언론이 앞장서야만 한다.

7.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는 정확해야 하며, 선거여론조사의 실패를 거듭하는 조사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에서 참담한 실패를 하였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사들은 2000년 16대 총선에

서 지난 실패를 값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 또 한 번의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지난 15대 총선 여론조사에서 대실패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살아남아 16대 총선에서 또 다시 사고를 치도록 놓아두는 우리 사회도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선거 예측을 잘못된 조사 회사는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다. 예를 들어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제법 잘 나가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잡지는 선거 예측을 잘못된 죄로 문을 닫고 말았다. 16대 총선여론조사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방송사들은 일제히 사과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조사 회사들은 유권자들의 정직하지 못한 응답과 방송사들의 성급한 자료 해석만을 들먹이며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참담한 실패가 또 다시 일어난다면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한 조사 회사들에 대한 불신임, 불매운동을 벌여 이들 회사들을 조사업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퇴출시키는 등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불신임, 불매운동은 일정 기간 동안 이들 조사 회사들에게 조사 용역을 맡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에서 이들이 실시한 조사를 인용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조사 회사들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8. 선거여론조사가 후보 지지도 조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새로운 선

후보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첫 번째나 두 번째 머릿기사로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거 이슈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언론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90% 이상이 후보의 지지도와 선거관세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다. 이러한 경마식 저널리즘을 지양하고 정책과 이슈 중심의 선거캠페인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의견에 경청해야 한다. 선거의 주인공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나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다.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를 발굴하는 한편으로 후보들과 언론이 제시한 의제들을 나열하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것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9.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는 뉴스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머릿기사로 보도해서는 안되고, 후보지지도 수치가 절대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현재 BBC는 단순히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나 프로그램의 머릿기사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언론의 여론조사가 전적으로 후보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고, 또 이를 대서특필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첫 번째 머릿기사는 물론이고 최소 두 번째 머릿기사까지는 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 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투표 경향

을 알려주는 절대적 참고 자료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추측된다' 라는 표현은 관계없지만 '...을 잘 말해준다' 또는 '잘 보여준다'와 같은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현행 통합선거법 제108조 4항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한 공개는 여론조사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 시간의 제약으로 설문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설문 전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10. TV토론에 대한 사후 보도는 후보들의 토론 승패를 가리거나 후보들의 발언 내용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보도해서는 안되고 대신에 후보들의 발언 내용의 변화나 사실 여부를 검증해서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언론의 TV토론 사후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언론은 TV토론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도를 하여야 한다.

첫째, 토론이 있기 전 후보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사전 분석해 놓았다가, 토론의 결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진술한 것은 없는지, 특히 통계치나 수치를 동원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치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질문을 지적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나 대답을 사후에 청취하여 공개토록 해야 한다. 만약 방송이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으면 TV토론은 후보들이 자유롭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TV토론에서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으로 후보들의 '발언 방식 통계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는 후보들의 미흡한 진술, 혹은 과대한 진술의 횟수, 각 후보가 직답을 회피한 횟수, 시간 끌기, 작위적인 제스처, 정치인답지 못한 행위(인신 공격)의 횟수 등을 포함한다.

넷째, 토론이 끝난 후 여론조사를 한다면 단순히 "어느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만 묻지 말고 "이번 TV토론에서 무엇을 새로 배웠는가?", "○○ 후보에 대해 새로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11. 선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 문제점과 견해 차이를 파악 또는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켜 나간다. 그러나 이런 정치를 운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잡하고 야만적일 때가 많다. 이런 문제는 운용하는 주체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정치과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정치과정에서 빚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루되,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방송사들의 지난 1998년 지방선거보도를 내용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방송사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선거의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⁸⁾ 이 같은 언론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떨어뜨리고 선거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 그리고 투표기권욕구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12. 언론의 선거보도 경향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언론인의 윤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개인으로서의 언론인과 제도로서의 언론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

8) 권혁남, 앞의 논문, 1998.

선거보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언론계에 “정치부 기자는 없고 정치기자만 있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사라져야 한다. 특히나 취재원과의 밀착보도는 기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소위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 계보기자 형성 등 적지 않은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99년 정국을 시끄럽게 하였던 ‘언론대책문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문일현 기자와 평화방송의 이도준 기자가 보여주었던 행태는 좋은 예이다. 기자의 존재를 망각하고 언론인의 양심을 팔아 사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화려한 변신을 이루기 위한 기사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자 개인과 취재원과의 밀착도 문제지만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언론사의 특정 후보 줄서기 사건에서 보았듯이 언론사 경영진 - 편집 책임자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대나 줄서기 등도 동시에 불식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권혁남, 『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_____,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선거 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43~45호, 1999, pp.5~44.
 _____,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TV방송의 무관심과 부

정적 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3-42호(겨울), 1998.
 _____,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서울: 니남, 1997.
 Berghel, H., “Digital politics 2000”, *Communication of the ACM*, Nov. V3 No 43, 2000.
 Denton, R. E. Jr., “Dangers of ‘Teledemocracy’ : How the medium of television undermines American democracy”, in Robert E. Denton, Jr., *Political Communication Ethics- An Oxymoron?*(London : Praeger), 2000, pp. 91~124.
 Goddard, P., “Political Broadcasting in Britain : System, Ethos and Change”, in John Bartle and Dylan Griffiths(eds.), *Political Communications Transformed-From Morrison to Mandelson* (London : Palgrave Publishers Ltd.), 2001, pp. 111~130.
 Herrnson, P. S., “The congressional elections”, in G. M. Pomper et al.(eds.), *The election of 2000 : Reports and interpretations* (NY : Chatham House Publisjers), 2001, pp. 155~176.
 Norris, Pippa, *A Virtuous Circle*(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Norris, N. et al., *On Message : Communicating the campaign*(London : Sage Publications), 1999.

〈제2주제〉

선거보도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선거 때마다 편파보도 성행하여 선거보도심의 필요성 대두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도, 적대관계도 아닌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언론은 군사정권과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영속화에 기여했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언론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군사정권의 32년간이라는 장기집권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언론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언론이 차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이 아직도 권력이동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소유구조가 창업자 및 그 일가에 집중되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유구조에서는 편집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사주가 신문제작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실세와 지연-학연-혈연이 닿는 인사들이 경영진에 포진된다. 정치권력이 경영·편집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도·논평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1997년 실시된 15대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편파보도, 왜곡보도가 자행되는 가운데 치러졌다. 당시 보도내용이 심의대상이었던 방송은 집권당을 두둔한 편이었지만 그 같은 장치가 없던 신문의 경우 일부 매체는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했다. 여론조사 결과 특정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보도하지

김 영 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시사평론가

- 경희대 법률학과 졸업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서울경제신문 차장
- 세계일보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위원장

언론의 눈치를 보던 정치권은
불공정 선거보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선거기사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

않고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과장하여 보도했다. 특정인의 득표율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사례도 많았다.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특정인이 선두에 달린다. 양강구도로 압축되었다니 하여 여론조작을 예사로 알았던 것이다. 또 특정인에게 유리하면 과장보도하고 불리하면 축소 보도하는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 언론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던졌다. 그래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연대단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언론의 눈치를 보아오던 정치권도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래서 2000년 2월 국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활자매체의 선거기사도 심의대상으로 삼기로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선거방송과 마찬가지로 신문, 잡지 등 활자매체의 보도내용도 선거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은 이미 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제2회 지방선거(1998년)에 걸쳐 선거보도를 심의해 왔다.

16대 총선거부터 활자매체 선거기사도 심의대상에 올라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은 위헌소지를 지녔다는 지적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소집 첫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심의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심의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피해구제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보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심의위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규정은 선거활동을 감시하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과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요지의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사과문 게재요구와 관련한 민법조항에 대해 “사과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국회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 신설된 처벌규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심의위는 사과문 게재명령은 헌재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정보도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결국 이 처벌규정은 운영과정에서 사실상 유효성을 상실한 셈이었다.

이 문제는 언론이 법개정 과정에서 공론화했어야 했다. 그런데 언론은 법개정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법공포 이후에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심의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흥분하여 일부 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는 등 대부분 신문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다. 그런데 한국언론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당사자의 문제조차 일과성-일회성 보도에 그치는 고질적인 습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후에도 습관적인 망각상태에 빠져 이 처벌조항이 지닌 위헌성의 심각성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년 이상 언론은 대통령 주자로 누가 떠오르고 있다며 정권의 향방에 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신문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 보도를 감시하기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마쳤고 16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치일정이나 정치상황을 미루어 보아 법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기사심의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는 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및 공표금지 위반

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심의하기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000여 종의 정기간행물 중에서 구독이 가능한 매체를 심의했다.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지방에서 발행하는 지방일간신문,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지방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주간신문 등 284개의 인쇄매체와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모두 285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기사를 자체 심의했던 것이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76개, 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208개, 통신 1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가 21개로 종합지 10개, 경제지 4개, 스포츠지 4개, 전문지 1개였으며 통신 1개였다.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은 55개였으며 이 중에서 경기가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주 7개, 대구-대전-전북이 각각 5개 등이었다.

선거기사심의는 자체심의, 그리고 피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심의로 나누어진다. 16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활동기간 중에 93건의 위반사례를 결정했다. 그중 경고는 61.7%인 58건이었고 나머지는 주의가 35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6.3%인 7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5.1%인 14건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7.5%인 7건 ▲상업광고제한위반이 1.1%인 1건이었다.

중앙일간지는 1건을 제외한 11건이 여론조사요건 미비 및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7건 중에 6건에 대해

일부 지방지와 주간지의 경우,
광고성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하는 사례도 있어

서는 경고를 결정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를 결정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마식 보도라는 보도관행에 따른 단순한 사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성-형평성 위반사례 중에는 특정후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편파-왜곡보도가 많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 같은 사례는 주간지와 지방지에 많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또 특정후보 및 특정정당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라도 기사를 비교적 작게 취급하였고 의도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지방지·주간지는 노골적 편파보도로 형평성 및 공정성 위반 많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 중에서 경고를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을 보면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기사를 전면에 걸쳐 보도한 경우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경우 ▲편파적 기사와 함께 특정후보의 개인사진이나 특정정당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만 게재한 경우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경우 ▲특정후보를 두둔하면서 경쟁후보를 비판한 경우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의도를 드러낸 경우 ▲비리의혹을 오히려 억울한 것처럼 묘사하여

지역정서를 자극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지방지의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남일보의 편파보도였다. 전남일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주를 당선시키기 위해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했다. 사주가 경영권-편집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주에 대한 편파보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그런데 경쟁후보가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라는 점을 악용한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왜곡함으로써 사주의 당선운동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총선기간 중에 있었던 지면사유화의 대표적 사례였다. 전남일보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따라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무려 6건의 경고를 받았다.

일부 지방지와 주간지의 경우 광고성 기사를 그것도 전면에 걸쳐 게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내용은 선거 홍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기사일수록 경쟁후보에게 상응하는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 편파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과거 선거에서 이런 유형의 기사는 금품거래의 대상이었다. 청탁자가 거액의 촌지를 주고 의도대로 지면을 제작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신문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것이다. 또는 편파보도의 대가로 광고를 게재해주기도 했다. 청탁자가 이런 신문을 선거 홍보물처럼 지역구에 대량 살포했음은 물론이다. 16대 총선 기간 중에도 이런 유형의 기사가 제작되는 과정에 촌지를 비롯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내용의 편파성·왜곡성을 미루어 보아 그 같은

개연성을 지닌 기사가 많았다.

상업적 거래 말고도 촌지수수료를 의심케 하는 기사가 많았다. 특정후보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특정후보의 경력과 학력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비치기도 했다. 지역감정은 해당지역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지역에서 발행하는 한라일보는 서울에서 출마한 제주 출신의 동정을 주요 기사로,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급했다. 이 같은 편집의도는 뻔하다.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에게 고향 사람이니 표를 주라는 뜻일 것이다.

경마식 보도에 충실, 출구조사 단정적 보도로 무더기 오보사태

16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모두 144건의 위반사례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선거방송심의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건수이었다. 부문별로는 지상파방송 부문이 103건, 종합유선방송 부문이 40건,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자) 1건이었다. 지상파방송 부문 중에서는 텔레비전이 45건, 라디오가 58건이었고, 종합유선방송 부문 중에서는 방송채널사업자가 23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7건이었다. 제재종류별로는 법정제재가 4건, 경고 29건, 경고 및 관계자 경고 2건, 주의 109건이었다.

제재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규정 미준수가 48회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오차한계 등 보도요건 미비가

39회이고 공정성, 정확성이 의심스런 여론조사 공표가 5회,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그 다음은 ▲공정성 위반 44회 ▲후보자출연방송제한 위반 40회 ▲형평성 위반 27회 등으로 많았다. 그 밖에도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8회 ▲객관성 위반 8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사용 5회 등이 있었다(단일 안건에 대하여 제재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제재건수와 차이가 있음).

16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제재내용을 역대 선거의 제재내용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는 선거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재건수가 양적으로 늘어났다고 불공정 보도가 가장 많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방송(2000년) 제재건수는 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에 비해 제재의 강도가 낮은 '주의'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제재 강도가 높은 법정 제재의 비중은 낮아졌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반정도가 경미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언론의 보도행태 중에서 경마식(horse race) 보도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선거기사의 경우 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자체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마식 선거보도가 지닌 모든 문제점이 압축된 보도가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드러났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몇 건의 당락이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었다. 개표결과와 출구조사 사이에 의석수가 크게는 23석이나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누구라는 식인 확정적인 보도내용이 많았다. 그것도 개표 이전부터 너무나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신문은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방일간지의
공정성·형평성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4월 14일자 초판에 방송사의 출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선거결과를 예측보도했다. 신문은 그 후 방송의 출구조사가 엉터리라고 비판했지만 그것을 인용보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예측조사, 제1당과 제2당이 틀리고 당락도 크게는 23석이나 뒤바뀌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KBS(1TV), MBC(TV), SBS(TV)에 대해 출구조사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S는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 출구조사 예측보도를 하면서 '민주당 제1당 확실시'라는 화면과 함께 "당선예상 의석수는 투표자 조사결과 1, 2위 투표율 차이가 조사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당선 확실자 수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8명의 당선예상자가 낙선함으로써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발생했다.

MBC는 투표마감과 동시에 꺾림과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차한계 이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정당별 의석 수를 예측하여 민주당을 제1당으로 방송했다. "제1당은 민주당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비례대표까지 합한 의석입니다. 제1당에 민주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와 꺾림의 출구조사를 토대로 한 예상의석 결과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7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를 합해서 120석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23개 지역구에

서 당락이 바뀌었다.

SBS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한계 이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민주당 1당 유력',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 '야당인 한나라당의 참패' 등의 표현과 함께 정당별로 획득이 예상되는 의석 수를 방송했다. 이렇게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내용을 당선예상자의 명단까지 발표함으로써 개표결과에 따른 최종당선자와 당락이 뒤바뀐 지역구가 8군데나 있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활자매체의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월 14일~7월 13일 150일간 설치되어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이 기간 중에 414개 정기간행물을 자체 심의하여 경고 12건, 주의 34건을 결정했다. 또 후보자의 시정요구 1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모두 56건을 처리했다. 자체심의 위반유형을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1.7%인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공표 요건 미비가 23.9%인 11건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4.3%인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지방일간지가 27건으로 ▲중앙일간지의 9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나머지는 ▲지방주간신문 7건 ▲월간지 2건 ▲시사주간신문 1건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경우 지방일간지가 23건으로 중앙일간지의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지방지의 경우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성 보도가 여전히 성행했다는 뜻이다. 제재 조치 중에 경고 12건을 분석해 보면 그 중 3건을 중앙지가 차지했다. 조선일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경고를 받았으며, 세계일보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경고는 지방일간지 3건, 지방주간지 5건 등으로 모두 형평성 및 공정성 위반에 해당했다. 특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경쟁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주로 보도했다. 제목도 선정적이어서 특정인을 드러내고 미화했다. 또 특정인의 인터뷰는 게재하고 경쟁후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편파보도를 일삼기도 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예정자가 요구한 시정 요구 10건을 심의한 결과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1건 ▲주의 2건 ▲기각 2건 ▲취하 4건으로 처리되었다. 취하 4건은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및 반론보도가 게재되어 취하된 것이었다. 매체별로는 ▲주간지방신문 5건 ▲지방일간지 4건 ▲중앙일간지 1건이었다. 후보자가 신청한 반론보도청구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이는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자가 방송프로에 등장한 간접적인 선거운동도 많아

제3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활동기간 중에 모두 58건을 제재 결정했다. 방송사업자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26건(텔레비전 13건, 라디오 13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9건이었다. 이를 제재종류별로 보면 ▲법정제재 2건 ▲경고 및 책임자 경고 6건 ▲경고 및 책임자 주의 1건 ▲경고 및 관계자 경고 10건 ▲경고 및 관계자 주의 3건 ▲주

의 10건이었다.

역대 선거방송의 제재경향을 사업자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부문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72건 ▲15대 대통령 선거 79건 ▲제2회 지방선거 63건 ▲16대 국회의원 선거 103건 등을 기록했다. 그런데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26건을 나타냄으로써 제재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보도행태도 다르다는 점에서 역대 선거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제재건수가 양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는 크게 증가한 편이었다.

제재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여론조사 공표 요건 미비가 21건 ▲공정성 및 정확성이 의심스런 여론조사 공표가 1건 등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한 규정 미준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아 역대 선거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나타냈다. ▲공정성 위반도 역시 22건으로 여론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후보자 출연방송 제한위반 13건 ▲광고방송 제한 2건 등의 순이었다.

법정제재는 지상파 라디오에서 2건이 발생했다. 청주BBS의 '황신모의 시사포커스'가 충북도내 사이버 비방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특정정당의 의견을 인터뷰하고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특정정당의 선거관세 분석내용을 방송했다. 심의위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청주CBS의 '지방시대 915'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기간 등

6·13 지자체 선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선거보도 제재 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

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오도의 우려가 있는 수치를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 받았다.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업무수행이나 업적평가 등을 통해서 언론에 등장할 기회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다. 이 점을 이용해서 현직자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파매체의 경우 시사프로 이외에도 오락프로에 등장시켜 업무를 설명하거나 업적을 소개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에 정치신인은 언론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현직자에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이 정치 신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에 치중하여 여론조사 요건 미비 위반 많아

활자매체나 전파매체가 다같이 월드컵 열기에 매몰되어 지방선거를 너무 홀대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선거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취급하지도 않았지만 물량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또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적합한 인물을 뽑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보다는 정당을 선택하라고 암시하는 보도가 많았다. 양당 대통령 후보의 지원유세를 부각 시킴으로써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만들었다. 또 비례대표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많은 유권자들이 새 제도를 숙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당 지도부의 비난전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정치혐오감을 부추김으로써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일 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제33조는 선거별 선거기간을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7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17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약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한국언론의 보도행태에 관한 지적이 필요하다. 한국언론이 선거보도에 임하는 자세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역대선거에 나타난 보도내용의 특징은 흥미 유발적이고 승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었다. 누가 앞섰다가 처지고 누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따위였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도해 왔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든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보도하는 사실만 봐도 한국언론이 얼마나 여론조사를 중요한 보도대상으로 삼는지 알 수 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가 지지율에서 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심한 경우 10% 이상의 차이도 적지 않았다. 이런 여론조사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

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여론조사 보도 경쟁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역대선거에서 법정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금지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여론조사 보도가 많았다. 각 정당의 자체분석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누가 앞섰다', '누가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따위였다. 실제 이 문제가 선거보도심의에서 선거법 저촉사항으로 많이 지적되어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은 기사가 의외로 많았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다 갖추려면 기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3회 지방선거방송심의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영했다. 조사방법은 주로 전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인 지지 위해 여론조사 노골적 악용

한국언론의 보도관행과 보도자세로 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이 없다면 많은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어 공정선거를 저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 최소한의 조사요건도 갖추지 않은 여론조사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언론풍토에서는 그 같은 유추가 어렵지 않다. 이런 유형의 보도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수치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유권자

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런 여론조사로 인해 될 사람 밀어주자는 악대차(bandwagon) 현상까지 일어나면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일부 매체는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노골적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설문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여 의도된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경쟁자간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인데도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경쟁자간의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특정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보도하여 편파보도라는 시비를 많이 낳았다. 이런 편파적인 보도행위는 불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선거기간내의 여론조사 결과공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주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다. 그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정치적 의견을 묻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 의도의 불순성을 의심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꺼리며 때로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집권정당을 지지한다고 거짓 답변을 하기도 한다. 16대 국회 의원 선거일에 방송사들이 실시하여 보도한 출구조사가 개표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던 것도 이와 유관하다. 이런 국민적 잠재의식도 고려한다면 무분별한 여론조사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정서에 의존한
특정 정당 기관지화 현상이 예상되므로
선거기사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국언론은 선거보도를 정당간, 또는 후보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기보다 경마식 보도에 치중하다보니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승부위주의 언론보도는 유권자가 공정한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폐단 이외에도 정책대결을 실증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언론이 정책대결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들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강정책은 경제-사회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사회정책이 지닌 난해성-전문성으로 인해 취급하기를 꺼린다. 결국 정당들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단선적인 사안을 쟁점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영·호남 매체, 지역정서에 의존한 특정 정당 기관지화 현상 심각

한국정당은 지지기반을 지역연고에 두고 있고 유권자도 지역연고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지지정당의 극명한 동서분열 현상이 이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사례가 현저히 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매체의 경우 그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인의 계산된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는 보도행태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인의 발언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보도자세의 변화는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감정을 직설적으로 조장하는 보도량의

감소는 지역 편향적 보도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남-호남의 경우 준립 근거를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보도행태에 변화가 없었다. 호남매체의 민주당 기관지화, 영남매체의 한나라당 기관지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역연고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연고정당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를 중점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지지정당의 연고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오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같은 보도행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기사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선거기사는 한나라당이 보도의 중심이었고 타당후보와 관련한 기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의정보고회나 유세 따위의 사진도 한나라당 후보만 중점적으로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자세에 따라 지면구성에서 특정정당의 기관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타당후보가 열위의 입장에 있어 물리적으로 균형보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편향보도의 노골성이 편집의도를 충분히 드러낼 정도였다.

이 점에서는 호남매체의 민주당 기관지화 현상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정서를 고려한다면 타당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렇다고 보도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타당후보의 존재조차 무시할 정도였다면 편파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극소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했고, 관심의 대상이어서 이들에 관한 보도가 비교적 공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을 공약하여 지역입장에서 그들의 정치성향은 쟁점의 대상이 아니었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는 선거법의 사각지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선거법을 개정할 시점에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 언론환경이 급변하여 인터넷 매체가 뉴미디어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 매체는 돌풍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로 부상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경선과정에서 페이지뷰가 500만건을 돌파하는 이변을 보였다. 선거법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도 편집·취재·집필·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기사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편파보도·왜곡보도가 성행해도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활자매체·전파매체의 선거기사는 선거법에 따라 심의대상이 된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는 엄연히 언론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기사를 활발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것은 언론매체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가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인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활자매체를 다루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방송매체를 다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현실적으로 사회변천이나 분분발달을 일일이 쫓아가며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맞춰 법을 신속적으로 해석할 필요

하다. 선거법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를 언론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인 인터넷 매체가 '기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신문은 문자로 서비스하는 동시에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매체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을 신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융합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는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또 방송법은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그 종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의 '기타'를 인터넷 방송에 적용하여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면 방송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모순이 생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구이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는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의 선거방송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보도심의 미비점과 모순점 정비 위해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선거기사(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되는 시적 기구이다. 따라서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될 때마다 해당 규칙을 제정, 공포하는데는 현실적인 문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심의를 비롯하여
 각 매체의 선거보도심의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가 대두된다. 선거때마다 새 규정을 제정하면 전례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서인지 또는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으나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00년 3월부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방 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문제의 적법성에 관해 논의했다.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으로 합리적 내용은 수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대처한다는 선에서 타협안이 채택됐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은 방송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한 부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라 사무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가 방송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하부조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선거기사(방송)심의위원회가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거기사(방송)심의위원회를 선거일 120일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사정권의 잔재로 말미암아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주요관직은 물론이고 민간분야까지 영향을 미쳐 대통령의 지연·학연과 연결되는 거대한

인맥이 형성되고 그 세력이 지배권력으로 군림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거개시 2~3년전부터 거론된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니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후보자를 뽑는 경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장치도 없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점이다.

어떤 형태의 정부개입도 반대한다는 논리로 선거기사심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사심의의 목적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데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선거결과에서 실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거 선거에서 공영방송은 집권당을 두둔하고 일부 신문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편파보도를 일삼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보도행태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심의기능은 필요하다.

각종 선거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대사이다. 이 점에서 보면 편파보도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위헌소지를 없애고 미비점도 정비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제3의 심의기구를 두든지, 또는 3개 매체의 심의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판단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

<제3주제>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I. 선거보도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

12월 19일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둘러싼 논란과 마찰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특정 언론사와 특정 정당 후보 사이의 충돌, 특정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정치부 기자 및 데스크의 고민도 깊어간다. 한국적 정치, 한국적 언론의 현실 속에서 사실의 전달 이외에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언론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선거 결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만 선거관련 보도는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1)명백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기사가 많고, 2)특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언론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의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킨다.

그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는 측에서 담당 기자 및 데스크 등 언론사에 항의를 한다. 특별한 사실의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대화로써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종종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언론에 대

이 용 식

문화일보 정치부장

- 서울대 공대 졸업,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 관훈클럽 편집위원
- 저서 : 『김영삼 권력의 탄생』,
『미국기자들 어떻게 취재한다』

선거보도 담당 데스크나 취재기자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대로 보도할 것인가, 정치적 형평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한 인식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물론 소송으로 가고, 선거보도의 경우 소송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형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사실의 오류일 경우 어떤 식으로든 빨리 상황이 종료된다.

선거보도의 경우, 피보도 당사자와 언론사간의 견해차이가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형평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특정후보에 불리한 보도라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이 같은 논란은 발생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과거 발언들, 즉 언론관, 노동관 등에 대한 보도 및 노후보의 반발이나 최근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보도 및 한나라당의 불만 등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II. 사실 보도와 형평성 및 정치적 고려의 충돌

따라서 선거 보도에 있어서 담당 기자나 데스크가 가장 자주 직면하는 고민은 사실대로 보도할 것인가, 정치적 형평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절대적 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형평을 고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늘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도 이른바 '공방' 기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어느 일방의 주장, 또는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실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어떤 식으

로든 반영하고, 대등한 형태로 편집하게 된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엄격한 사실 위주의 보도, 객관적 가치 판단에 기초한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선거 담당기자나 데스크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언론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확인 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보다 분명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어려운 데다, 일정 부분 확인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측에서 필사적으로 해명하기 때문에 해명에 대한 재반박까지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인력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정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치권에서 오는 유형무형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어떤 사실을 취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자들이 알게 된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 기사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측에서 때로는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유력한 후보자들의 경우 완전히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론사 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Ⅲ.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적 장치의 도입

복잡한 정치 현실과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선거보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각 언론사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2)선거보도 자체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선이라는 두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일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선 제도적 장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도입, 활용하고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활용해도 될 것이며, 선거보도의 경우 더욱 강화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것이지만 독립적 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체 감시단이나 심의팀을 운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치로는 후보자들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언론사들은 반론권 수용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그러나 선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이유있는 반론의 경우, 선거 보도에 한해 확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대외적 장치들이라면 대내적 장치도 필요하다. 언론사 내부 분위기의 중립성 유지, 보도 목적으로 습득된 정보의 보도 목적 외 사용, 언론사나 특정 개인의 줄서기

등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 유출 등으로 일부 언론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를 위해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고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일종의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면正道(正道)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선거보도 자체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다. 변화무쌍한 정치상황 속에서 어떤 절대적 잣대도 없이 사실상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Ⅳ. 선거보도 준칙의 유용성

문화일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자체 선거보도 준칙 20개항을 발표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준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선거기사의 취재·작성 편집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간과했던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상식의 환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준칙은 20개 항목 및 이에 대한 세부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느냐가 핵심

[선거보도 기본방향] 1)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2)엄정 증립을 견지한다. 3)월 1회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심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4)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이슈를 발굴. 보도한다. 5)인터넷 시대에 따른 변화를 적극 소개한다.

[후보자 집중조명] 6)도덕성·국가관과 병역·세금·재산 등을 검증한다. 7)해당공직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한다. 8)공약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9)말바꾸기, 전과 등 과거문제도 추적한다.

[공명선거 저해 행태 감시] 10)지역감정 조장 행위는 단호히 비판한다. 11)돈선거 의혹을 끝까지 추적한다. 12)근거 없는 폭로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1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정책이나 관권선거를 감시한다. 14)선거 이후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정치개혁과 국가발전 지향] 15)선거 정치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16)개혁에 기여하는 후보와 운동방식을 비중있게 소개한다. 17)신진 소수세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한다. 18)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문화일보 자체 점검] 19)금품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0) 외부 모니터 제도를 도입, 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준칙이 모두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보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라는 주제와 관련, 앞서 제기한 인식들을 토대로 선거보도 과정에서 정치부 데스크로서 부딪히는 문제점과 나름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해결책을 언론의 입장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V.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언론계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는 되풀이되어 왔다. 역시 6·13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언론계에 심각한 반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남기기에 앞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언론계 외부에서도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비판의 요지는 대개 정책 공약 위주의 보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민심의 밑바닥을 제대로 읽지 못해 예측에 실패했다. 특정 후보 또는 정파에 대한 편향성이 있었다는 등이다.

이는 선거보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이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개혁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며,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보도의 개선 문제가 절실하다.

특히 12월 대선을 3개월 여 앞둔 현 시점에서 선거보도는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구도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선거보도라는 관점에서 더욱 일탈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선거보도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지금부터 선거보도의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10가지로 나눠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1. 정책 공약 위주의 선거보도는 가능한가?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 위주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 원인은 선거전이 정책 공약 대결 위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면 모든 후보나 정당이 발표한다. 한마디로 '정책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독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당 후보자들간의 정치적 공방(대안을 가진 정책 공방이 아닌)에 대해서 독자들은 비판하면서도 열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책 얘기는 아주 침예한 것이 아니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독자들의 기호를 외면할 수 없는 언론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세 번째는 정치 공방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나 공직자의 정치중립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근거가 희박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는 상당한 의미를 가졌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언론의 책임은 없는가?

반드시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만 책임을 돌

릴 수는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을 분석해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고, 그것의 숨은 의미를 잘 찾아내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기자들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치열하게 분석하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깊이 파고들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독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선을 잘 만들지만 한다면 독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도의 초점을 바꾼다면 당연히 인력의 재배치, 지면과 뉴스 가치판단의 재조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느 한 언론기관이 하기는 어렵고 여러 언론계 전반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풍토가 생긴다면 가능할 것이다.

2. 양비론, 공방 기사에서 탈피할 수는 없는가?

정치 공방이든, 정책 공방이든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하게 공방 기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비교적 많은 자료와 준비를 토대로 한 어떤 이슈가 폭로 발표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 한마디를 붙여 공방기사로 만들고 만다. 물론 제작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일정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을 소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최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견을 분석해 미세한 차이와 그 의미를 찾아내서 보도해야

대한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리적 형평성' 보다는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같이 부닥치는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공방기사로 다루더라도 양측 주장, 특히 쟁점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3. 엄정 중립은 이뤄지고 있는가?

한국 언론은 아직 선거보도에서 엄정 중립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기도 하는 미국 언론의 경우도 일반 기사에서는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독자들이나 국민들은 어느 언론이 누구 편을 들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실제로 비공식적으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엄정 중립을 절대적으로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 또 실제로 무엇이 중립인지에 대한 판단도 언론사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부 내부에서, 또 편집국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또 외부 영향이 개입될 소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형평성의 문제는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물리적 형평을 끝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모든 후보자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지, 또 법률적 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

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3~4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의 인터뷰나 토론이 있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하기는 했다. 그렇다면 누구나 출마 의사만 밝히면 동일하게 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후보자간 토론의 경우, 모든 후보자를 한 자리에 모을 것인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선두 2~3명만 모을 것인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식과 관행'에 따라 그때그때 각 언론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 물론 상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는 언론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현장 중심, 유권자 중심 보도는 되고 있는가?

현재의 선거 보도는 거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만들어 내는 어젠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명이나 연설 공약을 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정당 중심, 후보자 중심 보도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선거의 현장. 흔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후보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그 같은 기준에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낮았을 때는 이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을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나름대로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언론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조금 사소한 것 같지만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언론 용어가 상당히 많다. 표발, 텃밭, 표밭같이, 표몰이, 표훔기, 공략 등의 표현이 이 같은 후보자 중심 보도 행태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5. 선거보도의 과학화는 가능한가?

흔히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지지도 중심의 기사 판단과 보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또 지지율에 대한 보도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지율 보도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보도할 경우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히 누구누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거나, 몇강(強) 몇약(弱) 구도라는 식의 표현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많은 기사가 이 같은 식으로 작성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잣대에 의해 기사의 가치 판단이나 기사량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과학화는 지지율 자체를 넘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그리 엄밀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수도룩하다.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한 사람을 뽑는 대통

령 선거를 제외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경우 언론의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크게 틀려 문제가 된 경우도 여러 번 있다.

과학화를 위해서는 정기적 여론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언론사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여론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한 번의 숫자를 보는 것 보다 그 경향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경쟁적이지 않은 매체끼리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신문과 방송 또는 주간신문 등이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론조사만을 기준으로 양자대결, 3자 대결 구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지면 구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냐의 문제도 있다.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그러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 후보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는가?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선거공보나 후보자들의 홍보물이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을 소개하지만 이것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병역 세금 재산 전과 등의 문제에서부터 국가관, 과거의

지시율 보도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보도할 경우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말바꾸기 여부, 공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한 언론기관이 모든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더욱 그렇다.

다만 모든 언론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출마자 전원은 아니더라도 유력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흐른다면 출마자들도 조심할 것이고, 선거구 주민들의 자체 감시와 언론사에 대한 제보 등으로 선거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도 있다.

7. 부정선거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금품 살포나 유권자 매수, 흑색선전 등은 유능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유권자를 타락시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력히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품 수수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선관위 정부 당국 등과 협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자체적으로 제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흑색선전 발언이나 정체불명의 흑색 유인물이 살포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비판적으로 보도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로 흑색선전 유포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묵살하기도 어렵다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흔히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식의 생각으로 일단 보도하고 본다. 또 많은 경우 그러한 소문들이 다소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도할 경우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얼굴 없는 공격, 정치철학이나 공적 능력과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공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수법만을 놓고도 엄정한 비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흥미롭고 독자의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8. 소수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인사의 진입이 필수적이다. 또 정치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여성이 불리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정치능력이 사장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또 소수정당의 경우, 일반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진 소수 여성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는 거대 정당의 공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다만 이들에 대한 '외

면'을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인가?

9.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 감시 가능한가?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게 많은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우선, 취재인력의 부족 즉 취재상황의 열악 때문이다. 둘째로는 당선된 사람에 대한 배려 또는 예우, 편들기 차원과 관련된 경우도 없지 않다. 언론들도 부지불식간에 '당선 되면 그만'이라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당선되면 그때부터 또다른 시작'이라는 자세로 선거기간 중의 공약들에 대한 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인력의 취약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선거 당시 공약을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한 할 것으로 본다.

10. 선거 취재과정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문제들

이 문제는 취재 보도의 문제라기 보다 윤리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다루기 어렵고 미묘한 문제이지만 취재현장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품 향응 등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진영을 취재하는 경우 부득이 교통편을 함께 이용하거나, 기사의 작성 및 송고 등을 위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숙식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취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계 전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들겠다. 최근에 만난 한 유력 대통령 후보는 지방에서 1박하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서울을 왕복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기자들과 함께 1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 숙박비 항공료 정도는 언론사가 부담하지만 그래도 부대 비용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언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VI. 대책과 전망

선거 보도 역시 다른 보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수 없다. 보편적 기준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가 시작되면 이런 저런 상황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발생하고, 또 유사한 상황이 짧게는 3~4개월, 길게 잡으면 1년 이상 계속된다는 점에서 상황에 함몰되기 쉽다.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언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선거공약의 이행 감시도 가능할 듯

즉 당연한 원칙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경마식 보도로 흐른다는가,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을 사실상 소개하는 보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재 기자, 데스크, 각 언론사, 언론계 차원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단순히 선거기사 문제를 넘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언론 감시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선거

보도를 감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 전문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들 단체들도 좀더 전문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보도가 한차원 발전하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될 것 같다. 이른바 3김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한국 정치 자체가 40년만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언론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종합토론

사회자 · 주 동 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 세 분의 주제발표문은 선거보도에 대한 각계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선거보도의 문제점, 선거보도심의를 하셨던 분이 평가하는 선거보도 그리고 현업 언론인의 선거관련 취재·보도시의 고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발제 내용 가운데 의문이 있거나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된 질문이나 견해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관훈(경남신문 사회부장) : 얼마전 오마이뉴스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이와 관련한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상의 일반 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온라인 상으로 특정후보지지 선언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발표자) : 현실적으로 대선전까지 선거법 개정은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정간물법상 언론매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프라인상의 언론과 분리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독립된 인터넷 언론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입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안병도(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오마이뉴스는 선거법상의 언론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며,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기존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여 기존 언론과 동일하게 법규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자 : 하지만 인터넷 매체의 발전 수준이나 속도를 감안할 때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 언론중재위에서도 각 일간지에서 운

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나 독립된 인터넷 언론의 기사가 중재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발전 수준이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어야

임상택(선거기사심의위원) :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심의를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사전규제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흐름이 중요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큰 흐름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후규제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의 내용에 대한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내용등급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심의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터넷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사전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독립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방송위나 중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통신부에서만 규제가 가능한데 이 또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얼마전 주간지를 창간하였는데 이는 언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식(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선거법의 규제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간물법이나 방송법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는 경우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방안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의 기사내용이 게재된 신문·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경우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선거보도심의를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발표자) : 방송법상 현재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그 종류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방송,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를 언론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기에 근거하여 인터넷 매체를 '기타의 간행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을 심의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사회자 : 방송위의 일상적인 방송심의활동에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포

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왜 안하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성한표(선거기사심의위원) : 언론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한 구체적인 선거법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영식(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선거법상 공정정보의무 규정이 이와 관련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은 현재 신문과 방송 그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의 공정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성한표(선거기사심의위원) : 특정후보지지 문제는 공정정보의무 조항과 다소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볼 때, 구체적인 언론사 후보지지 금지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는 언론사 자체 판단에 관한 것이지 공정정보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보거나 공정정보도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조영식(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간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이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선거법의 1/10이 넘는 규정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한표(선거기사심의위원) :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계 내부에서 특정후보지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후보지지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보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특정 후보 지지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후보 지지를 선거운동이나 공정정보도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법의 확대해석이라 봅니다.

언론사의 특정 정당·후보지지 문제와 공정보도 문제는 별개

이용식(발표자) : 언론이 특정후보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공정보도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언론사는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여타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 즉 주 5일 근무제나 대북정책 등 사안별 지지나 반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 표명은 머지 않아 가능하리라 보며, 이와 별개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지 선언이 불공정보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광욱(경기 중재위원) : 언론의 후보지지는 후보의 이슈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당/보수당, 공화당/민주당 등으로 나뉘어져, 정책이 확연히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에 대해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후보지지가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처럼 간주될 수는 없으며, 사회 풍토와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다원성이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공정하게 보도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 지지표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신문, 방송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후보자지지 표명은 사회풍토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

권혁남(발표자) :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은 특정후보 혹은 정당의 지지 여부에 대해 매우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더 타임즈>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 온 반면 <가디언>은 노동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르 피가로>는 우파신문으로, <리베라시옹>은 좌파지지 신문으로 구분됩니다. 유럽의 정치는 이와 같이 좌파/우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당정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문도 계층·계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후보지지는 유럽 언론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좌파/우파의 개념이 불명확하기에 경쟁적 대안의 목소리 즉, 다양한 시각을 표명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의 언론이 논조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의 언론은 철저히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별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편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가 밝힌 특정후보자 지지 이유는 철저히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시 뉴욕타임즈는 엘 고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지만 비판적 기사와 지지 기사

를 동시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언론의 특정 후보 지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편파 보도 시비가 계속 지적되어 왔기에 암암리에 특정 후보를 몰래 지지해 왔던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디어 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후보지지를 허용하게 되면,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므로 후보자들이 특정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편집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칼럼은 물론이고 스트레이트기사에서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신문의 경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사주가 후보자로 나온 전남의 한 일간지가 사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후보자지지 표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양철훈(서울방송 정치부 차장) : 여러 참석자들이 아직 우리 현실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이 선거법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몇몇 신문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정보도의무를 위해서는 보도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보도심의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보도와 관련한 심의결정례가 대부분이고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와 관련하여 경고 내지 주의 결정한 예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유력 일간지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압력 때문에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김영호(발표자) : 형평성이나 공정성 위반 사례도 여론조사보도와 관련된 심의사례 못지

않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떠오르지 않지만 방송에 비해 신문기사의 불공정 보도가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옥(경기중재위원) : 중재신청사건 가운데 불공정 보도와 관련한 사안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한 지역에서 후보자 진력을 비난하는 보도를 하여 중재신청된 사안이 있었고 여론조사보도와 관련, 어떤 후보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문사가 보도하는 등 후보자와 신문사간의 결탁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성 여부는 기자들의 양심의 문제이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없어

임병국(중재심의실장) : 선거기사심의는 선거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세 후보가 있는데 두 후보의 사진은 게재하고 나머지 한 후보의 사진은 게재하지 않은 경우나 기사내용에 차별을 두는 경우가 심의 대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심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관훈(경남신문 사회부장) : 세 후보가 있는데 두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이나 나머지 한 사람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후보라고 상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세 사람의 사진을 모두 게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까?

임병국(중재심의실장) :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우는 모두 게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후보의 경우까지 모두 사진을 게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혁남(발표자) :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개진했습니다만, 어떤 법조인이 학회 세미나에서 밝힌 "방송과는 달리 사적 성격이 강한 신문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는 상당히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중립성을 강요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취지입니다. 선거법상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의 법적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영식(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 언론사의 후보지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에 앞서 선거보도의 기본적인 잣대로 언급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성'의 기준이 마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듯 많은 분들이 사고하고 계신 듯 한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법적으로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선거보도가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기자의 양심의 문제로 소급되는 것이지, 제3자가 이를 공정하다 혹은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법적 판단에 맡길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공정성'이란 개념 자체가 '형평성'과도 연관되어 정의하기 까다롭고 그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택(선거기사심의위원) : 언론보도에 있어

서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저는 언론보도의 '정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문사의 편집방향을 이유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다.

사회자 :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대상자들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보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한표(선거기사심의위원) : 선거보도의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잘 유지하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일선 취재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양심에 따라 보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보도와 관련된 저널리즘의 기준들은 언론교과서에서 흔히 선언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말로 하기도 쉽지만, 현실속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지켜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전적으로 언론보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이용식(발표자) : 공정성 등 추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정성·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취재보도과정에 대한 메카

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공정성, 형평성을 고민하지만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선거 때면 정치권이 오히려 언론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등 현장의 고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권혁남 교수는 지난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 저조를 지적하면서 이는 신문의 보도태도에 기인한다는 논지를 피력했습니다. 즉 정치적 무관심을 언론이 부추겼다는 것인데 투표율이 낮은 것을 전부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도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일종의 사적기업이므로 영리성을 추구하고 수용자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책중심의 보도를 했다하더라도 지난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과연 높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언론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표율과 보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투표율이 낮아 대의성에 문제가 된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한 지자체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여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지, 혹 이러한 경품 제공 등이 민의의 왜곡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론조사는 선거보도의 과학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보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이는 조사결과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여론조사의 폐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영호 전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발표자) : 여론조사의 부작용,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수치로 제시되는 탓에 과학성이라는 포장을 한 채 수용자에게 전달되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여러 조사기관에서 하고 그 조사 결과의 편차가 굉장히 크며 이를 어떠한 검증이나 분석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그대로 보도한다는 점입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 'DJ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이 있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65%가 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총리로 지명된 두 사람이 국회에서 인준을 못받은 시점에서, 민심이 이반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출구조사를 보더라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가 하나같이 당락이 뒤바뀐다면 문제이며, 이를 믿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승부위주의 여론조사는 오히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책대결을 실종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성'의 문제를 떠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보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97년 대선시 모 중앙일간지가 여론조사보도를 악용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한 예가 대표적인 왜곡보도입니다. 한편 여론조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여론조사로 오히려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국민

의 대표성을 훼손시키는 여론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인 것은 분명

권혁남(발표자) : 지자체 선거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전적으로 언론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큰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미디어 부정주의 이론이 이런 것입니다. 즉 언론이 정치와 선거과정을 너무 부정적이고 표피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국민과 유권자들이 정치와 선거로부터 등을 돌리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켜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으며 분석자료들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언론학자인 마이클 로빈슨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TV뉴스를 분석한 결과 뉴스 내용과 정치적 관심도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미디어 부정주의이론을 검증한 바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분명한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 저조현상은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고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온 점, 월드컵 열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부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제공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투표율이 하락하여 이동식 투표함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며 인터넷 투표가 제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언론의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상업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의 공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언론이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다시말해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황색저널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건전한 언론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방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지만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지는 않아

김재덕(서울 중재위원) : 선거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여론조사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조사 시점이나 이슈에 따라 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언론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질문을 삽입하거나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과 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사나 여론조사회사는 투철한 직업적 윤리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선거기사심의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급증한 탓도 있겠지만 아직도 현업 언론종사자의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한 기본적 요건이나 기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듯합니다.

신성범(한국방송 정치부 차장) : 여론조사와 관련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언론사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설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줄이려 애쓰고 있으며,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질문의 순서나 내용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일부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 폄하하기도 하지만 방송사는 산술적 균형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가치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산술적 균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의원들이 고향지르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TV화면은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치내용보다는 정치행태가 화면을 구성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습니다.

양철훈(서울방송 정치부 차장) :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조사시기나 조사내용 등 그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언론사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언론사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는 떠도는 민심을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선거결과 예측조사 등 몇몇 여론조사결과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중심이 아니라 유권

자 중심의 보도를 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처럼 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여론조사가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일간지나 방송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지의 경우는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지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정적 선거보도로 인해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투표율 저하 등을 가져온다는 미디어부정주의 이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선거보도가 지역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의 높은 경비를 감안하여 언론사간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최종철(영남일보 정치부 차장) : 지방지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방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여론조사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지방언론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이는 각 언론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공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소 신문의 경우 그 정도가 보다 심각해지리라 전망됩니다. 한편 지역민들의 지방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구의

원, 기초·광역의원, 단체장 후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앙정치에 시선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유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선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식(발표자) :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높은 경비를 감안하여 언론사간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미국 언론의 경우도 공동조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간 공동조사를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론조사보도 준칙이나 권고사항 등을 언론유관단체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여론조사가 어느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는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처음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보도하였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사도 신중히 보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식(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언론보도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90년대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이러한 방법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부재자 신고의 확대, 유권자들 가운데 등록을 받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재보궐선거는 일

요일에 하는 방안, 투표소 300m 밖에서 출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개정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조차도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접했습니다.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유권자와 언론시장에 맞기는 것이 타당

윤동영(연합뉴스 정치부 차장) : 연합뉴스가 선거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받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통신사의 특성상 제휴하고 있는 고객사마다 보도성향이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어쩌면 정체성 없이 기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연유로 각 정당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자체적인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제공할 수 없어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통신사가 어떤 편향성을 갖고 제공하지는 않는가 라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공정성'과 관련 선거기사심의위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듯합니다. 병역비리수사나 고교 현대사 교과서 문제 등은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선거 기사심의위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언론시장의 다양성으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고 한 지적이 기억납니다. 사실 독자들은 기자

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분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유권자와 언론시장에 맞기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준영(부산일보 정치부 차장) : 권혁남 교수는 선거보도에 있어 모든 후보들에 대한 산술적인 균형보다는 뉴스가치를 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술적 균형을 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일보는 8·8 보궐선거시 7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모든 후보들 사진을 날짜별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소수정당이나 군소 후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인 균형보도에 따른 부작용이 다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논외의 얘기지만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중앙지/지방지라 칭하는데 이는 수직적, 서열적 개념이 갖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지/지역지 등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권혁남(발표자) : 선거보도와 관련, 산술적인 균형을 취할 것인가, 뉴스가치를 따를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가지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몇몇 비중있는 후보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TV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기준 선정 문제 등 매체의 특성상 신문보다 방송의 경우가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97년 대선

당시 TV토론의 참여범위는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인 후보로 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MBC의 경우 지지율 5%로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TV토론 참여의 기준을 낮춘다거나 산술적인 균형을 취한다면 정치신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지만 후보의 난립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산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산술적인 균형을 편집방침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도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등 내부기준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앙지/지방지 개념보다는 전국지/지역지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하다고 평가됩니다.

육심무(충청일보 정치부장) : 다른 참석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론조사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의 경우 여론조사결과와 선거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는 여론조사결과 오차범위를 넘어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와도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였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선거보도의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얼마 전 16대 대통령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양삼승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삼승(선거기사심의위원장) : 언론현업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

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견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성, 형평성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력하신 견해를 토대로 앞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지혜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이끌어가겠습니다.

위원장 :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어서까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혁남 교수께서는 이제 선거보도의 양상은 후보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해 주셨고, 선거기사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에서 활동하신 김영호 전 부위원장께서는 선거보도심의사례를 통해 선거보도를 진단하셨습니다. 이용식 정치부장은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선거보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발표하신 고견이 분명히 우리나라 선거분화를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오늘의 이 자리가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세미나 주제가 선거보도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③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언론-

한영학

일본 上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I. 머리말

근래 들어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약요소를 내포한 각종 규제법안으로 인해 언론계가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상충을 예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인권옹호법안과 조만간 국회제출이 예상되는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기본법안 등 이른바 언론규제 세 법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정가는 물론 정부와 주요 언론은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는데, 법안의 향방에 따라서 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최근의 정보환경을 반영하고 있고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해 그 누구도 법제화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법제화 작업이 그 궁극적인 목표를 결코 표현 및 언론규제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 내면적인 정신활동을 행하는 부문에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주요 언론은 법안의 성립 저지에 적극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경우, 일견 보도기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언론의 원활한 취재·보도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즉 보도윤리의 필수적인 요소인 취재원의 비닉권(秘匿權)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상정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정치가 등이 언론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일상적으로 개입하여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견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서는 인권옹호법안과 함께 언론규제가 가장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소재로 하여 그 법제화 작업의 경과 및 법안 내용을 간단히 소개·검토하고, 언론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조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언론과의 관계를 논점별로 짚어보고자 한다.

II.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마련 경위와 그 내용

현재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88)은 그야말로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컴퓨터 처리된 개인정보만이 법적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매뉴얼 정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반면, 은행, 백화점, 병원 등 각종 민간 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 누설 등 남용·약용문제도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화 작업을 개시, 2001년 3월말 정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언론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언론계 내외의 지탄과 자기정보 통제권 등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심의가 보류되어 왔으나 2002년 정기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었다.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인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¹⁾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2002년 3월), 이 또한 본격적 심리가 늦춰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행법의 개정안의 추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1. 법제화작업의 경위와 경과

일본 정부는 고도 정보통신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마련과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위해 1994년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후에 IT전략본부로 개칭됨)를 내각에 설치한 바 있는데, 추진본부에 의한 일련의 토의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등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를 근거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논의가 가시화되게 되었다. 이에 1999년 동 추진본부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상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검토부가 설치되어(7월), 이 검토부는 '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상에 대하여'라는 중간보고를 공표했다(11월). 그 후 중간보고에 의거하여 2000년 1월에 발족된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법제화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1999년 8월, 국회에서 주민 기본대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3년 후(2002년 8월)부터 주민 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주기넷'²⁾)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당시 주기넷 가동에 앞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개인정보 누출·남용 등)이 제기되어 3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부대결의(부칙 제1조)가 따랐다. 즉 주기넷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부대결의는 민간부문도 포함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사실상 약속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 기본대장 코드는 민간부문에 의한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강화가 보다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법제화 논의로 확대

1) 자기정보에 대한 공개·정정·이용정지 등을 청구권으로서 인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서는, 台宏士, "個人情報保護法案の行方—成立に意欲を示す與黨, カギを握る修正案", 『月刊民放』32・4(2002. 4), p.35 참조.

2) 종래에 자치단체별로 수집 보유해온 주민의 개인정보 관리체제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4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민 전원에게 11자리의 주민표 코드를 매겨 전국 네트워크의 컴퓨터로 중앙정부 및 전국의 각 지방단체를 일원적으로 집약·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른바 '국민 총 등번호제'로 불리며, 10개의 정부 부처에서 93건의 국가사무에 이들 정보가 이용되게 된다. 전국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구상은 일찍이 1960년대 말에 있었으나 노동조합 및 언론 등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한편 2003년 8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유료로 주민기본 카드가 발행된다.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공적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보호하는 법제가 구상된 데에는,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종래 분야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이나 프라이버시 마크제도 등 자율규제에 의지해온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부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더하여, 주깃넷의 잠재적 위험을 앞두고 본래 공적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논의가 민간부문에까지 전이된 국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유력한 국제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95년 EU가 데이터보호 지령에서 민간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견고하게 갖추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각국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의 유출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제시한 사실이다.³⁾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EU 등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선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6월,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검토부의 중간보고를 심의·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안(大綱案=중간정리)'을 공표하고, 이어 동 10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제에 관한 대강(大綱)'을 내놓았다. 그 후 2001년 3월, 정부는 대강의 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각의(閣議)결정하고 국회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부안은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난에 부딪쳐 본격적인 심의가 보류된 채, 2002년 통상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와 여권내 일부에서

도 회의론이 대두되어 다음 회기로 넘기고 말았다. 여권이 수적 강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심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2002년 5월, 방위청이 정보공개 청구자의 리스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직적으로 작성·회람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주로 민간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안은 본말전도로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본격적인 수정 없이는 간단히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상기 중간보고, 중간정리, 대강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작업전개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을 구상(다만, 민간부문은 분야에 따라서는 개별법의 정립을 상정)하는 중간보고의 틀을 답습한 중간정리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①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②내용의 정확성 확보, ③적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④안전확보조치의 실시, ⑤투명성의 확보 등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고 공적 부문은 기존 법령의 개선 등의 조치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기본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는 1980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3) 石村耕治, “住基ネットとは何か—國民總背番號制と國民登録證制でフライバシーを公有化”, 『法學セミナー』, 571(2002. 7), p.36 참조.

(8원칙)⁴⁾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를 통한 자율규제의 실험적 성격이 농후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⁵⁾

대강에서 구상한 기본법제는 중간정리에서 제시된 기본 5원칙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취득·관리, 개인 데이터의 공표, 본인정보의 공개·정정·이용정지, 고충처리 등 9개 항목의 다각적인 의무를 부여하는(의무규정) 등, 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다. 한편 대강은 의무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에 주의·개선·중지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협회 및 민간방송연맹 등 언론계의 강한 요구에 힘입어 보도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등 일정한 배려를 보이고 있으나, 노력규정으로 불리는 기본원칙의 적용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아 취재·보도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기본법적 부분(총칙,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등)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적 부분(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잡칙, 벌칙)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강'을 유지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적 성격이 농후하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안은 개인정보의 유용성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대조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으로 정의된다(제2조 제1항).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매뉴얼로 처리된 정보도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로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중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것, 특수법인 중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것,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이용방법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의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정령(政令)에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동 제3항).

법안 제2장(제3~제8조)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①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②적절한 취득, ③정확성의 확보, ④안정성의 확보, ⑤투명성의 확보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력의무). 이 같은 기본원칙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적용

4) ①수집제한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데이터내용원칙(Data Quality Principle), ③목적명확화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이용제한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안전보호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공개원칙(Openness Principle), ⑦개인참가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책임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5) 그 외 문제점 및 논점에 관해서는, 田島泰彦, 『人權か 表現の自由か』, 日本評論社, 2001, p.37-40; 三宅弘, "個人情報保護基本法の課題—メディアの對應も含めて", 『月刊民放』30・9(2000, 9), pp.29-31 등 참조.

6) 大綱에 대한 논점정리 및 각계의 평가에 대해서는, 田島康彦, pp.47-52; 北澤義博他, "座談會・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大綱をめぐる", 『ジュリスト』1190(2000,12,1) pp.2-29 등 참조.

된다 하겠다. 문면상 기본원칙은 노력의부에 그치나, 그동안 가장 귀추가 주목되어온 언론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제9조~제11조)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독립행정법인·특수법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제12조~제19조)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책정·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및 국민 또는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확보에 관해서 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업자와 본인 사이에 발생한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5장(제20조~제54조)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기본원칙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원칙 ①은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제3자 제공의 제한, ②는 적정한 취득, ③은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의 확보, ④는 안전관리조치, 종업원의 감독, ⑤는 취득에 있어서 이용목적의 통지 등,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등, 공개, 정정, 이용정지와 각각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법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합적인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 사업자 자신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제36조),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본인 등으로부터 대상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고충해결을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언·

조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7조). 더욱이 주무장관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제37조),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제38조),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가 가능하며, 권고에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에 관한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39조 제1, 2항). 개인의 중대한 권리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무장관은 권고를 거치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9조 제3항).

잡칙(제55조~제60조)의 하나인 적용제외규정(제55조)은,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혹은 단체 또는 이들 단체에 속하는 자가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여기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여기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5장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Ⅲ.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언론과의 관계에 관한 검토

법안은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던 당초의 구상에서 벗어나 주로

민간 사업자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즉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규정의 적용을 현실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다소 약하게, 일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율하는 기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언론 등 특별한 배려가 요청되는 정신활동분야에 관해서는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규율의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조항에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지적한 것은 개인정보가 취재·보도와외 조정개념으로 탐구·제시되어 온 프라이버시(극히 한정된 개념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영역)⁷⁾의 의미내용을 넘어선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지만, 법안의 전체적 내용은 유용성보다는 보호를 위한 규율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이 법안에서 상정하는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언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언론의 의무규정 적용제외의 한계

상기한 바와 같이 언론은 학문, 종교, 정치분야와 함께 각종 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제55조). 표현의 자유는 자기실현과 자기통치, 진리발견 등을 도모하는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다른 자유(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 등)를 제약하는 경우보다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중의 기준론'을 지지하는 학설이 지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제반 인권 중에서도 특히 강한 보장을 받는 것('우월적 지위')으로 해석된다.⁸⁾

개인정보보호규제도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하는 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의 하나인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건전한 여론형성 등 이른바 공적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재·보도과정에서 일정한 개인정보의 취급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다른 민간사업자와 일률적으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령 언론에 상기한 각종 의무규정의 준수와 주무장관에 의한 명령, 처벌 등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언론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제와의 충돌을 피해 자기방어적 언론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손상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공개·정정·이용정지·고충처리, 의무위반시 주무관청에 의한 명령권 행사와 각종 처벌등을 규정한 의무규정의 언론에 대한 적용배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이 전면적으로 의무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의무규정으로부터 배제되기 위해서는, 제55조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보도기관'일 것과 '보도를 위한 목적'일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독자 정보, 수신계약자 정보 등 영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정보 등은 의무규정에 구속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논점은 ①보도기관의 범위, ②보도목적이 의미하는 내용, ③이들을 판단하는 자 등을 들

7)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포함관계에 대해서는 田島泰彦, "メディア規制の動向と個人情報保護立法—ジャーナリズム視點からの批判的検討", 『月刊民放』30,1(2000,1), p.12 참조.

8) 田島泰彦·石崎正博·服部孝章, 『現代メディアと法』,三省堂, 1998, pp.24-29 참조.

수 있는데, 법안은 어느 것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보도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안은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를 명시한 위에 기타 보도기관으로 일반화하고 있는데, 법안이 상정하는 기타 보도기관이 어디까지를 포괄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점이 그동안 잡지, 자유기고 언론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영위하는 작가 등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잡지, 자유기고 언론인 등도 보도기관에 내포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실효성이 담보될지는 의문이다.

둘째, 어디까지가 보도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이는 방송사 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뉴스, 정보 프로그램 등 보도목적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야는 의무규정이 적용될 우려가 없겠으나, 최근 비중이 높아져 가는 오락정보 프로그램은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호하다. 하지만 순수한 오락 등 그 주요 부분이 보도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사전에 공개요청 등이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개인정보가 정정 혹은 그 이용이 정지되거나 공권력(주무장관)의 개입도 상정할 수 있다. 심지어는 방영이 사전금지되거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표현에 대한 사전금지가 남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실제로 보도기관의 범위 및 보도목적 등이 문제가 된 경우, 이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

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판단권자를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주무장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방송의 경우는 방송행정정책·감독기관이 총무성인 점을 감안하면 총무성장관이 주무장관이 되겠으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는 이들에 대한 규제법률이나 감독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개입할지 명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보도기관과 보도목적의 인정함에 있어서 제3자 조사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장관의 과도한 재량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장관에 대하여 언론 등에 관한 배려의무를 부과하고(제40조)⁹⁾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담보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언급을 결여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2. 언론의 기본원칙 적용과 그 효과

언론은 보도기관으로서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인정되면 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법안 제2장의 기본원칙(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적정한 취득, 정확성의 확보, 안정성의 확보, 투명성의 확보)은 언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기본원칙은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 상기의 의무규정과 같은 처벌은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의 속성상 각종 노력의무가 부여되는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내포되는 취재·보도활동에 위축을 가져와 보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주요 언론은 물론 신문협회, 민간방

9) 주무장관은 전 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해 보고의 징수, 조언,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교(信敎)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송연맹 등 각종 언론단체와 언론학자들은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보도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규율로부터 전면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기본원칙의 적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명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법안은 개인정보취급에 있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언론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가운데 정치가의 독직사건 등에 대해서 취재·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¹⁰⁾ 또한 법안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적정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제5조), 언론은 내부고발 등을 통한 정보입수가 어렵게 되며, 법적 분쟁으로 발전해 갈 경우 취재원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취재원이 취재를 회피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다른 기본원칙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서있다고 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언론을 제약하는데 비중이 실린 측면이 강하다. 보다 많은 비판에 노출될 것이 요청되는 공인을 사인과 구별 없이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가 등의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원칙자체의 법적 성격은 노력의무로 강제적 처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은 취재제도의 위법성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본원칙의 위반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사전금지청구 등의 경우에서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인격권의 발현으로서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¹¹⁾ 그래서 기본원칙의 위반을 근거로 취재기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요소(부분별하게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을 것)에 있는 점에 착안하면,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인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원칙의 위반을 위법성의 해석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원리인 면책법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

IV. 결어 : 과제와 전망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이념을 정리한 기본법과 문제분야별로 개별법을 정립시키려던 법제화작업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일반법적 성격으로 되어 있는 동시에,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충돌로부터 조화로운 조정이 요청되는 언론부문도 기본적으로는 타 민간부문과 동일한 규제(기본원칙)하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로부터 의무

10) 山内敏弘, “個人情報保護法案・人權擁護法案の憲法上の問題點”, 『法と民主主義』, 369 (2002.6), p.3 참조.

11) 藤原靜雄, “個人情報保護の基本原則”, 『法學教室』, 250 (2001.7), p.17 참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 권력이 보도기관의 내용(보도의 범주결정)과 형식(보도기관의 인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기본원칙은 보도기관에도 적용되므로 언론이 개인정보주체나 관계자로부터 취재거부, 취재과정에 대한 공개·사전삭제요구·게재(방송)전의 공개·정정요구 등의 압박이 예상된다. 언론에 있어서도 영업정보 등 언론보도의 본질적인 역할과 관련성이 열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 민간부문과 동일한 규제가 요청된다 하더라도, 취재·보도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한, 언론의 위촉효과는 물론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소송에도 미묘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법안의 결함에 대해 언론계, 학계를 중심으로 각종 의견서 및 어필 등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가운데, 언론계 외부에서도 법안의 변경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제시되기도 했다.¹²⁾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독자적으로 기본원칙 중 유일하게 '투명성의 원칙'을 언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안(試案)을 제안하였다(2002년 5월). 그러나 이는 여전히 다른 기본원칙이 적용될 위험이 온존하는 이상 원활한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고 있어 언론계 내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법제화작업 초기단계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 법제화를 촉구하는 논조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위협을 느껴 언론은 예외라는 논조로 급선회하는 우를 범해온 언론이, 요미우리의 구상과 같은 단편적인 대응이 나오는 등 최종 법안의 방향성을 놓고도 공조관계에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폐안 내지 근본적인 수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조력하에서 언론계의 공동보조가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법안의 성립이 보류된 채, 그리고 주기넷의 가동에 대해 프라이버시침해 등에 관한 우려로부터 그 연기나 동결을 주장하는 각계의 반응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넷은 시행에 들어갔다(2002년 8월 5일). 이처럼 급무는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문제인 만큼, 민간부문을 주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언론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재정립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인 현행법의 개정안은 결함요소를 제거하여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이 민간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대조적으로, 방위청의 정보공개청구자 리스트문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벌칙규정을 결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개인정보주체가 자기정보통제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2) 전국소비자단체 연락회는 기본원칙 중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적정한 취급', '부명성의 확보'를 언론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2002년 1월), 실제로 법안책정에 참여한 미야케 히로시(宮坂 浩史) 변호사는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적정한 취급'을 언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2002년 2월).



위법적 취재관행과 탐사저널리즘

—거악(巨惡)을 제거하기 위해 용인되는 소악(小惡)인가?—

이 용 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목적이 훌륭하면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류의 오랜 논란거리인 이런 의문은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언론윤리』, p.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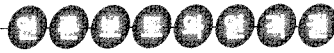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개를 돌리면 분당 쪽으로 하늘 높이 솟은 파크 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이 보인다. 파크 뷰의 웅장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 뒤에 도사린 특혜분양과 용도변경 비리의 실체는 아직까지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지배집단이 고루 얽혀있다는 파크 뷰 사건의 전모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도리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모 변호사와 KBS의 최모 PD는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 또 두 사람을

공무원(검사)자격사칭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모 전 성남시장은 분당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상태다(문화일보, 2002년 7월 23일).

지난 5월 10일 KBS의 탐사저널리즘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소속된 최모 PD는 파크 뷰 특혜분양과 분당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관련 비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 김모 시장과 통화하여 권력층 개입에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녹음하게 된다. 이어서 5월 18일 방송된 <추적 60분>을 통해 김모 시장의 육성이 공개되자(5월 22일 이모 변호사가 최모 PD로부터 녹음기록을 넘겨받아 기자회견) 김모 시장은 위에 언급한 혐의로 성남의 시민운동가인 이모 변호사(성

남시민 모임 대표,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 공대위 집행원장)와 최모 PD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선부른 평가를 유보하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적절한 대안적 취재방식을 마련하지 못한 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사칭 등 위법적 취재관행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고 보인다. 최모 PD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은폐될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법적인 취재관행을 되풀이한 것인가? 과연 신분 사칭과 신분은폐와 같은 위법적 취재관행의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하고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비리 규명이 더 긴급한 것인가? 어쨌든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취재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점과 그 취재의 자유도 법적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탐사저널리즘의 위법적 취재관행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위법적 취재관행은 이제 묵과되지 않는 범죄인가?

최근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재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은폐적인 혹은 기만적인 취재는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를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는데, 위법적 취재관행에 대한 형사상 처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인용(認容) 등의 증가 경향(이승선, pp.295-296)을 보면 이제 언론계의 집단적인 관습처럼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법적인 취재방식이 과거와 달리 묵과되지 않고 법적으로 제재되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 요강 제2조 취재준칙 조항을 보면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취재원을 접촉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비윤리적·불법적 취재방법으로 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도청 및 비밀촬영 등을 거론

언론은 공중의 알 권리를 내세워 신분사칭 등 위법적 취재관행을 정당화

하고 있다. 그리고 KBS 방송강령에도 제35항에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윤리강령이나 취재준칙 등에서 규정한 이러한 비윤리적인 취재관행은 동시에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적인 행위이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적인 취재관행을 단순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법적 취재 관행이 대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탈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의 위법적 취재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첫째, 미디어간의 치열한 속보경쟁, 특종경쟁, 판매경쟁의 가열로 위법적 취재관행을 규제할 윤리규범이나 법규정의 적용이 무력화되고 경쟁논리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둘째, 언론인의 윤리강령이 가지는 직업적 규범의 구속력(자율규제)이 약해지고 타율적인 법적 규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셋째, 국민들의 법의식과 권리의식이 증진되어 위법적 취재방식은 그전처럼 감수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위법적 취재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이승선, pp.304-306). 특히 언론의 위법적 취재에 대한 사법부의 관점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 이제 그것은 과거와 같이 쉽게 묵인되기 어려운 관행이 되었다.

탐사저널리즘과 신분사칭의 유희

탐사저널리즘은 근본적으로 추문폭로를 무기로 정치·경제·종교권력 등을 감시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탐사저널리즘에 입각한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는 MBC의 <PD수첩>과 KBS의 <추적 60분> 등이 있다. 두 프로그램은 탐사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가 혼합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PD저널리즘이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역이라 할 수 있는 종교, 군 등의 은폐된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이 안고 있는 법·윤리적 문제가운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대표적인 위법적 취재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신분사칭이나 신분위장이다. 신분사칭이나 신분위장은 기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위법적

취재 관행이다. 기자들은 신분을 사칭이나 위장해야만 취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신분을 사칭 혹은 위장하여 취재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은닉된 진실이 드러나서 공익에 기여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면 법적으로도 면책되거나 묵인해주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분사칭, 위법적 취재관행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1993년 김모 의원의 상시대 재단비리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의 김모 기자가 모 금융사의 자금부장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수사관으로 신분 사칭하여 그를 취재하였다. 당시 검찰의 분위기는 위법적 취재관행은 사법처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는데 언론사의 로비로 면책되었다고 한다(김창룡, pp.754-755).

1994년 중앙일보 예모 기자는 상문고 재단 비리취재를 위해 기존의 위법적 취재 관행을 답습하여 검찰을 사

칭하여 상문고 서무과장 자택에 들어가서 일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 건에는 검찰이 강경하게 법적 적용을 하여 공무원사칭, 주거침입, 무단서류 절취 등으로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위법적 취재방식이 언론사의 취재관행이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예모 기자는 선고유예된 바 있다. 이 재판은 취재가 실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 사실을 언론계에 주지시키는 전례가 되었다(김창룡, pp.756-757). 그 이후에도 신분사칭의 위법적 취재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98년에는 한국일보 유모 기자가 서울 강남 지역의 고액 과외 수사를 취재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무마된 바 있다(이승선, p.317).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약이나 매춘행위 취재를 위해 고객으로 신분 위장하거나 사이버종교나 병원관련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환자로 신분 위장하는 등 신분 위장과 신분사칭에 의한 위법적 취재관행은 다양하다고



하겠다. 특히 사인에 대한 위법적 취재 중 두드러진 특징은 신분위장, 신분사칭 특히 검찰이나 경찰직원을 사칭하여 일반인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고, 신분을 사칭하는 위법적인 취재가 주로 사인에 한정되고 공인을 대상으로 신분을 사칭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이승선, pp.317-318).

그런데 신분위장이나 사칭과 같은 은폐적 취재(undercover reporting) 관행은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점에서 비록 공익을 위한 취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공익을 위한 취재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법적 차원에서는 언론의 자유(취재의 자유)와 취재 대상자 권익의 충돌로 구도화되며 궁극적으로는 이익형량에 의해 위법성과 정당성이 가늠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교형량에 의해 언론의 공익성이 피해자의 권익을 능가한다고 해도 기자의 기만적 취재로

인해 취재 대상자가 입는 피해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결국 그것은 결과에 의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사후 정당화는 윤리적 사고의 기본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인다(이창근, p.49). 은폐적 취재는 다른 사람을

**위법적 취재방식이 과거와 달리
쉽게 묵인되지 않고
사법부의 관점도 변화하고있어**

속인다는 점에서는 정당한 행위는 아니지만 단지 특수한 조건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 취재관행은 엄격한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법적 취재관행이 저널리즘에 남기는 역효과와는 물론 크다.

탐정식 뉴스취재 기법과 같은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취재

할 수 없는 기사를 가끔 견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술책을 자주 이용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그만큼 떨어짐과 동시에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한국언론연구원 편역, p.181).

**위법적 취재관행은
공익을 위한 탐사보도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그동안 우리 언론계는 신분사칭 등의 위법적 취재관행의 뿌리가 깊어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으며 공익을 우선한다는 명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일탈적인 취재방식도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고 보인다. 언론은 특히 공중의 알 권리를 내세워 이러한 취재관행을 정당화해왔다. 실제로 우리 언론인(신문기자)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와 보도의 준칙을 잘 준수하지 않고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취재준칙 제1항은 취재를 위해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①편지나 사진과 같은 개인의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회사에 위장 취입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식한 기사는 응답자의 약 53%로, 절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②기업이나 정부의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나 ③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은 겨우 30% 남짓이었다. 다수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성병욱, pp.12-13).

그렇다면 은폐적 취재 혹은 위법적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인가? 이 배타적인 문제에 대해 위 사건에 관련된 이모 변호사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다음의 글을 남겼다.

거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

이라는 이유로 작은 잘못이 언제나 용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악의 존재 사실로 인하여 거약이 용인되어서도 안됩니다.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하며, 거약과 소악을 모두 피할 것이 아니라 소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수된 정보인 것을 알고 공개한 것이 도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요성과 공개의 필요성은 채집과정의 불법성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수년간 추적해 온 용도변경비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녹음내용의 공개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를 약속하였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왔습니다. 또 저의 무고함을 밝히고 근경을 타개하려고, 부패청산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언론인과 언론사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이모 변호사, 백궁 공대위 집행위원장, 2002년 6월).

전적으로 위법적 취재관행만을 주제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모 변호사가 남긴 글은 거약과 소악의 관계로 은폐적 취재와 공익성(위법적 취재방식을 통한 사회적 비리 규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모 변호사는 물론 최모 PD도 취재방식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적 60분>제작팀도 그것이 언론계의 취재관행이지만 실정법 위반은 변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시사프로그램(탐사프로그램) PD에게 이러한 위법적 취재방식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였지만 취재내용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로 인정할 수 있어 정상참작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며 그래서 보석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초점은 최모 PD가 폭로한 녹음기록에 담긴 진실의 무게라고 할 수 있다. 그 녹음기록에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과정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백궁·정



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 뷰
특혜 분양 비리는 '수서사건'
의 재판이라 할 정도로 총체
적인 비리라는 견해가 있었
는데 최모 PD의 전화 녹취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규명되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의
감시권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취재방식은
불가피하게 실정법과 충돌하
곤 한다. 특히 시사고발 프로
그램의 경우 실정법의 범위
에서 과연 얼마나 취재가 가
능한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각 방송사마다 윤리강령과
취재준칙이 있지만 밀실수사,
행정 비밀주의 등을 극복하
려면 위법적 취재방식이 불
가피한 것은 언론계의 보편
적인 정서라 하겠다.¹⁾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정보공개법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 위법적 혹은 은폐적 취
재관행을 동원하지 않고 과
연 탐사저널리즘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까. 그
런 점에서 최모 PD사건은 우
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던
져 준다.

따라서 위법적 취재방식은
제한적으로 용인되어야 한
다.²⁾ 특히 탐사보도에서는 중

요 공인이나 기관, 특히 우리
사회의 '성역'이라 불리는 집
단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접근
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위법적 취재관행이 엄격한 기
준을 만족시킨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감시 그리고 공
익성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는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
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법적
취재관행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더라도 최근의 법적 환경이
나 취재 대상자들의 대응자세
로 볼 때, 쉽게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주)

1) 위법적 취재관행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언론이 올바른 정
치정보 제공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이 향
유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언론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취재행위가
공표행위(보도)에 불가분 연결되어
있으므로 취재의 자유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취재방식에
제재를 가하면 기자들이 소송 등을
우려해서 탐사보도를 꺼리는 위축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서 본다면 언론은 접근권을 구현해
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적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이창근, pp.97-100,
1998).

2) 첫째, 취재 내용이 공익적이어
야 한다. 둘째, 은폐적 취재방식이
아니면 핵심적 정보를 제대로 입수
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취재대상
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넷
째, 신문을 사칭할 때 취재대상자에
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
섯째, 은폐적 취재로 획득된 정보로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피해가 취재
대상, 개인가 입는 피해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도 과정에서 은
폐적 취재를 했음을 밝혀야 한다(이
창근, pp.49-51, 1998a).

참고문헌

김창룡,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일
고찰", 김진홍 편, 『한국저
널리즘의 쟁점』, 법문사,
2001.
성병욱,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
2002 편협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2002년 5월 17-18
일.
이승선, "위법적 취재보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성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4-1
호, 2000.
이창근, "은폐적 취재의 필요조건",
『저널리즘 비평』, 통권 25
호, 한국언론학회, 1998a.
_____, "은폐적 취재행위의 위법
성과 헌법적 구제에 대하
여", 『한국방송학보』, 가을
호, 1998b.
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콘라드 핑크
서, 『언론윤리』, 한국언론
연구원, 1995.

언론의 "마녀사냥"

최 선 열

서울중재위원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흔히 뉴스를 서둘러 기술하는 역사라고 말한다. 언론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 중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미국의 저널리즘 교과서에는 뉴스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 있고 그들의 언론학 교육과정에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 또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근대사나 현대사 연구에서 뉴스가 중요한 사료로 쓰여지는 것도 바로 그러한 직업 정신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역사의 기록으로서 우리 나라 신문과 방송의 뉴스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과연 기자들은 그들의 '역사적' 소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나라 신문과 방송의 뉴스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기사들 중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되고 편파적인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뉴스의 역사적, 자료적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언론의 피해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나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 동안 우리 언론이 처했던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여 언론의 책임과 윤리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가까이 모셨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언론의 '마녀사냥'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나의 이해와 기대는 무너지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최초의 여성 총리 인준 실패"로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한 능력있는 여성이 총리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이며, 교수로 평생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부도덕하다는 최악의 평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내몰린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은 사람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야만성을 언론이 선동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누군가 이 사건을 중세의 마녀사냥에 비유하였는데 나도 그런 비유에 크게 공감하였다.

문제는 전적으로 사실의 확인 작업 없이 소문과 의혹만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고 여론몰이를 하는 우리 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에 있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의 장상 전 총장에 관한 기사를 다 수집하여 분석해 보았던 나는 사실 몇몇 신문이 초기부터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혹의 꼬리를 부는 기사들을 계속 터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한 일간지에서 "돈 없으면 이대 오지 말라"는 헤드라인을 내건 터무니없는 기사를 보고 보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사의 내

용은 전혀 진실과 다른 것이었다. 장 전 총장 자신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대에 온 분이었는데 어떻게 총장의 위치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관련 기자들과 데스크에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매우 오만한 태도로 범정으로 가자고 대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취재원이 있다고 했으나 끝내 취재원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궁색하게도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고 더 이상 확인작업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기자들에게 역사를 기술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긴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이 지면에서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진실을 다 밝힐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의 소형아파트 값도 안 되는 북가좌동 개천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어느 날 뉴스를 통해 불법 개조된 호화 빌라로 둔갑하는가 하면, 뜻 있는 교수들이 시골에 교회를 짓고 은퇴 후 봉사하겠다고 사 둔 값없는 땅이 언론에 의해 갑자기 수십 배가 부풀려져 50억 유원지 땅으로 호가되고 그 땅을 함께 산 마음 착한 교수들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불리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안타깝게도 부도덕성을 비난받은 내용들은 기자들이 조금만 더 착실하게 취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더라면 의혹이나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근거없는 말들이나 제보 수준인 의혹을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면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왔던 사람을 부도덕한 투기꾼, 범법자, 거짓말쟁이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언론재판이 중세의 마녀사냥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결국 엉터리 취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왜곡, 확대, 재생산되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여론이 나빠지게 되자 우리 사회는 한 여성인재를 처참하게 쓰러뜨렸다. 그 분은 지금까지 언론이 만들어낸 너무나 세속적인 허상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세상물정을 몰랐던, 일 중독으로 자기관리에 소홀했던 사람이었다. 그분이 언론과 정치라는 험악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의 법칙만 알았다더라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인권의식의 기본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고 길으로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인터넷 신문도 사이버 언론도 아닌 기성 언론이 한 인간을 그토록 매도하고 여론몰이로 도덕적 재판을 하고, 그 틈에 정치인들이 서로의 손익을 계산하며 함께 놀아나는 사회라면 우리의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소위 냄비언론, 패거리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키운 인재들을 이렇게 몸쓸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인재빈곤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인 나는 이 엄청난 피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당사자인 장상 전 총장이 직접 중재위에 제소해야 했으나 청문회 전후 상황이 워낙 힘들게 돌아가서 끝내 기일안에 제소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일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였고 중재위원으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영국 PCC, 지난 한해동안 3,000건 이상의 불만신청 사건 처리, 평결은 41건에 불과

영국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가 발표한 2001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3,033건의 불만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언론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불만이 전체 사건 가운데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관련 불만신청 사건은 전체 사건 중 25%였으며, 전국지보다 지역 신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신청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PCC가 목표로 하는 40일 보다 다소 짧은 32일이 소요되었으며, 40일 이내에 처리된 신청건수는 87%로 2000년의 84%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불만을 제기한 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90%가 일반인으로 일시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경우이며 단지 3%만이 공적 인물이었다.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신청인이 언론과 화해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PCC는 단지 41건의 불만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평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평결에 이른 41건 가운데 19건만이 불만신청이 수용되었고 나머지 22건은 기각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지 및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사건이 가장 많은 56%였으며, 전체 사건의 1/4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한 불만신청이었다. 나머지는 스코틀랜드 지역 신문과 북아일랜드 지역 신문이 각각 7%를 차지했고 잡지를 상대로 한 불만신청사건 비율은 4%였다.

한편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불만신청건수의 13% 이상이 민족차별, 특히 이슬람민족과 이민자들의 보도에 대한 불만신청으로 9·11 테러사건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세계에 충격을 던져 주었던 2001년 9·11테러 사건은 PCC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흥미로운 진단도 제시되었다.

(Press Gazette, 2002. 6. 21. :)

<http://www.pcc.org.uk/press/index.asp> □

새로운 PCC 위원장에 크리스토퍼 메이어 경

영국 신문·잡지 출판 산업계를 대표하는 언론재정위원회(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 : PRESSBOF)는 2002년 7월 12일, 미국 에너지 전문기업 엔론(Enron)사 파문에 연루되어 사임한 Wakeham경의 후임자로 Christopher Meyer경이 새로운 PCC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Christopher Meyer경이 성공적인 언론의 자율규제 정착에 헌신할 뜻을 강력하게 비쳤다고 밝혔다. Christopher Meyer경은 현재 주미 대사로 재직 중인 탓에 외교부의 승인 없이는 내년 봄까지는 현직을 유지해야만 한다.

언론재정위원회는 무려 50여 명의 PCC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58세의 Christopher Meyer경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언론의 자율규제 신봉자이며, 외교부와 복지부 대변인, 그리고 총리실 공보수석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PCC에 비판적인 일부 편집인조차 최선의 선택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Daily Telegraph지의 Charles Moore씨는 PCC 위원장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위원장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PCC가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언급하였다.

(Press Gazette, 2002, 7, 19. :

<http://www.pcc.org.uk/press/index.asp>) □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는 표현을 되풀이 사용한 것은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일탈

-일본 도쿄지방법판소 판결-

장의 마권매장 건설계획을 둘러싼 『週刊朝日』의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전 도쿄마주협회 회장이 발행사인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1억3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판소 민사 제35부는 2002년 5월 13일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는 표현을 되풀이 사용한 것은 공정한 논평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 朝日신문사측에 22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週刊朝日是 2000년 9월 29일호에서 “원고가 중앙경마회의 熱海(아다미)장외마권매장 건설 계획과 관련, 거액의 현금을 받은 의혹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수의 업자로부터 거액의 석연치 않은 금전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된 금전 수수(授受)의 분쟁을 ‘홍정을 위한 뒷돈’으로 적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측은 의외의 판결로 받아드릴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5월 21일자) □

영국 언론, 취재원 보호 위기에 직면

파이낸셜 타임스, 더 인디펜던트, 더 가디언,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영국의 주요 언론 기관 5개사가 취재원이 흘려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에 도전을 받고 있다.

언론의 취재원 보호원칙에 대한 위협이 되는 이번 사건은 벨기에 양조업체인 인터브루가 이들 5개 언론사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됐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남아프리카의 한 양조업체가 벨기에 양조업체인 인터브루(Interbrew)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인터브루사측은 이 문서들은 허구의 단가와 입찰과 관련한 정보 그리고 판사가 “치명적인 정보”라 묘사한 것처럼 제조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론사들의 보도직후 인터브루사는 언론사들의 손에 들어간 문건을 돌려받고자 한 것이다.

이 문건은 남아프리카양조사의 인터브루 인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말 5개 언론사에 보내졌으며 이후 이에 근거한 기사들로 인해 인터브루의 주가는 하락하고 남아프리카양조사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후 인터브루는 이 문건을 보면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며 문건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1년 1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언론사들에게 문건을 제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장은 인터브루사가 주장하는 혼합제조물의 요소들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누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밀 입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재원의 비공개가 언제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는 없으며, 취재원의 동기가 부적절한 것일 수 있으며, 만일 기밀문서의 유출 목적이 재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유출 동기가 정치적이든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한편 이들 5개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적인 상원에 상고하려 했으나 이날 기각당했다. 기각결정의 주심을 받은 올프 대법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상원의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한 영국 내 사법절차는 끝났으나 언론사들은 유럽인권 법원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인 유럽인권 협약 제10조를 걸어 제소, 사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Press Gazette, 2002. 5. 24.) □

일본 각지의 보도책임자회, 개인정보보호법안·인권옹호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잇따라 발표

일본에서는 요즘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인 정보보호법안과 인권옹호법안의 일부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의 보도책임자회 등이 연일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성명은 "취재·보도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우려가 강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성명서는 국회의원들과 자민당 등

에 제출되고 있다.

신문협회보 조사에 의하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반대성명을 발표한 신문협회 가맹사가 참가한 보도책임자회 등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신문협회 가맹사와 구성사수, 지사·지국은 생략).

〈5월 11일〉 이와데(岩手)현 내 신문·방송 6개사의 사장 연명(岩手일보사 등 6개사)

〈5월 14일〉 오비히로(帶廣)보도간담회(十勝매일신문사 등 11개사).

德島十社會(德島신문사 등 10개사).

〈5월 17일〉 야마가타(山形)현 보도책임자회(山形신문사, 米澤신문사, 莊内일보사 등 16개사).

효고(兵庫)현 편집부회(神戸신문사, 선텔레비전 등 13개사).

사가(佐賀)현 보도책임자회의(佐賀신문사 등 11개사).

(『新聞協會報』, 2002년 5월 21일자) □

루마니아 의회, 신문의 반론게재를 의무화한 법안 가결

일본 共同통신에 의하면 루마니아의회는 2002년 6월 6일 신문에 대해, 기사에 대한 반론게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구 공산당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여당이 가결을 강행했다.

이 법에 의하면, 신문사는 기사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개인이나 단체의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달러(약 360만원) 상당의 벌금이 과해진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사 봉쇄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오보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2년 6월 18일자) □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전자게시판 관리자에 배상명령

-일본 東京지방법판소 판결-

인터넷 전자게시판 '2채널'에 오른 명예훼손적 글의 삭제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물병원과 그 경영자가 '2채널'의 관리자에게 5백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東京지방법판소 민사제24부는 2002년 6월 26일 "모욕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비방, 중상하는 글이 오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 4백만엔의 배상과 함께 명예훼손적 글의 삭제를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악덕동물병원 고발"등의 제목으로 게시판이 만들어져 동년 9월까지 원고의 동물병원을 '야비한 병원', 원고를 '둘팔이 의사' 등으로 평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었다.

원고인 병원경영자는 같은해 6월 21일자로 통지서를 보내 이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관리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오른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조리상(條理上)의 의무를 진다"

고 지적, "각 발언의 공공성, 공익 목적성, 진실성 등이 명백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삭제할 의무가 없다"는 관리자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한 재판부는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프로바이더책임법'에 비추어 보아도 책임을 면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7월 2일자) □

'TV東京', 절도를 계획한 자를 매수하여 범행장면을 촬영·방송한 기자 등 관계자 4명 징계처분

'TV東京' 보도국 뉴스취재부의 경시청 담당기자가 절도그룹내의 정보제공자의 제의에 응해 35만엔을 주고 범행현장을 촬영하였다. 이와 관련, 동방송국은 2002년 7월 3일 "사내의 보도윤리강령에 반하는 취재활동을 했으며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담당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징계처분했다.

처분내용은, 경시청 담당기자 2개월간 감봉, 사건당시의 담당데스크였던 뉴스취재부장 1개월간 보직 박탈과 3개월간 감봉, 보도국장 1개월간 감봉, 보도스포츠 본부장 견책 등이다.

'TV東京'에 의하면, 경시청 담당기자는 5월 상순 절도그룹 내의 한 남성으로부터 범행계획을 입수했다. 이때 이 남성은 절도그룹으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금을 요구했다.

담당기자는 데스크와 상의한 후 사건 전후에 이 남성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기자와 데스크의 개인부담으로 35만엔을 불입했다. 담당기자는 경찰에 범행계획을 통보했으나 피해자에

게는 전하지 않았다.

절도그룹은 5명으로, 5월 25일 새벽 1시 40분경 시내에 있는 건축자재판매회사에 침입했으나 3명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명 중 정보를 제공했던 남성은 운전수역으로 관여가 깊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TV東京’는 범행부터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VTR에 수록, 2일 후인 5월 27일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워치>와 <뉴스아이>에서 “스쿠프 : 범행·체포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약 7분간 방송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7월 9일자) □

TV프로그램을 편집한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일본 민간방송사 반발

和歌山시에서 일어난 독물카레·보험금사기 사건의 공판에서 和歌山지법은 2002년 3월 22일, 和歌山지검이 증거로 신청한 민간방송의 TV프로그램을 녹화, 편집한 비디오테이프의 일부를 진술증거로 채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朝日방송, 毎日방송, 關西TV방송, 讀賣TV방송, TV大阪, TV和歌山 등 6개 민간방송사들은 같은 날 보도책임자 연명으로 “보도프로그램의 일부가 보도목적 이외에 이용되는 것이며 국민의 방송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국민의 알 권리, 보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중대한 사태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①보도, 취재의 자유도 적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

을 경우가 있다. ②이미 방송된 방송내용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용하는 일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경찰에 의한 의도적인 편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3월 26일자) □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완전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혹보도는 정당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탈세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전埼玉縣(사이다마현) 의원이 내외타임스와 동사 회장을 상대로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東京고등재판소 제16민사부는 2002년 5월 23일 “의원이나 입후보자의 경우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완전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혹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보도도 위법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현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埼玉縣 上毛시 직원이 징세를 위한 강제적 수단의 집행을 주저하게 한 의혹이 짙다”고 판시하고 내외타임스측에 66만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인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전 현의회 의원인 이 남성은 부친으로부터 7억8천만엔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부친이 체납한 납세채무의 일부 약 4천3백만엔은 상속 후에 시효가 종료되어 있었다.

이 남성은 1996년 6월 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내외타임스는 1999년 3월 11일자 지면에 “현의회 의원이 4천4백만엔의 세금을

체납(탈세)하고 '시효'라는 이유로 범망을 피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1심인 埼玉지방법판소는 "기사는 범죄인 탈세를 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었으며 의견이나 평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新聞協會報』, 2002년 6월 4일자) □

범죄사건 혐의자를 익명 보도했더라도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다면 잘못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도쿄시 메구로(目黒)에서 토막시체가 발견된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서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중국 국적의 남성이 산케이신문사를 상대로 3천2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 제17민사부는 2001년 11월 14일 "진실성의 입증이 없다"는 등으로 2백만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 '산케이'의 항소를 기각했다.

'산케이'는 2000년 2월 23일자 조간에 『부大院生을 조사 중국국적 빌린 돈 3백3십만엔의 변제 절박』이란 제목으로 "중국 국적 남성의 토막시체가 발견된 사건에 와세다대학원에 재적 중인 중국 국적의 남성이 관련된 혐의가 짙어 경시청 '메구로'수사본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사측은 익명기사이고, 남성이 피항소인이라는 식별이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항소인을 아는 불특정 다수인은 보도대상이 피항소인이라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新聞協會報』, 2001년 11월 20일자) □

경찰의 발표 이상의 내용을 입증자료없이 보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가와사끼(川崎)사내의 하숙경영자 4인이 경찰의 언론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고 가나가와신문사를 상대로 88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 제21민사부는 2001년 10월 25일 "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요코하마 지방재판소)판결을 변경하여 가나가와신문사에 88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경찰은 1996년 2월 가마구라시(鎌倉市)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혐의로 같은 해 11월 24일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고 수색압류를 했다.

가나가와신문은 11월 26일자에 경찰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이 절도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절도사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언론사에 발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나가와신문'의 취재시,公安과장이 원고에게 절도사건 혐의가 있다는 회답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가나가와신문'이 경찰의 발표 내용 이상의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신문사는 상고하지 않았으며 국가와 현에 대한 배상청구에서 패한 원고는 2001년 11월 7일 가나가와현만을 상대로 상고했다.

(『新聞協會報』, 2001년 11월 20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스·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강원중재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최 복 만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2년
5월 2일 21:30)

내 용 : ▷앵커 :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
한 철원 양돈농장에서 도축돼 출하된 돼지고기
가 춘천과 서울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
에서 도축출하된 물량은 181마리로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춘천과 서울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하나육가공에 반입

된 1759kg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시
까지 일체 출고보류 조치를 하고, 돼지고기가
보관된 창고는 봉인을 실시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1999년 11월경부터 춘천시
퇴계동에서 '하나육가공'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1차 가공하는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
근에 철원지역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와 관
련하여 피신청인은 2002. 5. 2. 저녁 9시 「뉴스
데스크」에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한 철원 양돈
농장에서 도축돼 출하된 돼지고기가 춘천과 서
울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청인이 운
영하는 '하나육가공'의 상호와 창고내부를 방
송하였다.

신청인은 철원 소재 '태봉양돈조합'에서
적법한 절차, 즉 관련 공무원과 수의사가 콜
레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통반출
증에 의거하여 납품받은 돼지를 가공·판매
하였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터뷰나 반
문없이 회사 공장 사무실과 상호를 보도함으로
써 거래처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가 하면 정상
적으로 유통된 제품마저 반품을 받는 등 막대

한 경제적 손실과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손해를 경험하였다.

신청인은 관련 공무원의 적법한 '도축검사 신청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돼지를 출하하였으므로 콜레라 등 질병에 감염된 돼지를 출하한 사실이 결코 없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더 이상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폐업신고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신용과 명예를 모두 훼손당했기에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2002년 5월 2일 9시 「강원뉴스」에 '돼지콜레라 발생 대책'이라는 제목하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철원 양돈농장에서 도축 돼 출하된 돼지고기가 춘천과 서울에 유통되었다며 '하나육가공' 업체를 화면으로 내보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하나육가공' 측은 철원 소재 '태봉양돈조합'에서 적법한 절차, 즉 관련 공무원과 수의사가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통반출증에 의거하여 납품받은 돼지를 가공·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하나육가공' 측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의 판매에 그 어떤 책임도 없으며, 보도내용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합의사항

- 내 용 : 한편 돼지 콜레라와 관련해 출고 보류되었던 춘천 하나육가공의 돈육은 돼지 콜레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춘천MBC 2002년 5월 22일 9시 「뉴스데스크 강원지역 뉴스」 중간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구

제역 관련기사에 이어서 보도하되 화면은 '하나육가공' 업체의 간판을 사용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중재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2년 5월 22일 21:30)

내 용 :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여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지 돼지가격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농협본부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산지 큰 돼지 가격은 21만8천원으로 지난달 평균 20만4천원에 비해 7%인 만4천원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돼지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계절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난데다 도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출하·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돼지콜레라와 관련해 출고 보류되었던 춘천 하나육가공의 돈육은 돼지콜레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목포시립도서관이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광주중재1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목포시립도서관 (관장 신 창 렬)

피신청인 : 목포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수일 : 2002. 5. 10.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목포신문 : 『민간위탁 혈세가 샌다』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15일자 1면)

내 용 : 지난해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에 민간 위탁된 목포시립도서관이 시민의 혈세와 자체 수익금을 직원 개인 주머니 챙기기에 사용해 불의를 빚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에 의해 고용된 신창열 도서관장의 지난해 연봉이 4천700만원이나 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는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개최, 김정 이사는 “관장의 급여가 처음 계약 당시 월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월 400만원 풀인 4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가 너무 많은 것은 관공비나 여타 경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신창열 도서관장은 “계약당시 위탁 공고안에 5급(사무원) 대우를 해주게 돼 있었으며 계약을 맺어 4천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 관장의 월급을 130~150만원 수준으로 결정했으나 박광준 지회장이 관장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 월 379만원에 이면계약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민간위탁 시보조금이 멋대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탁에 대해 관장의 월급이 문제되자 목포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립도서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고시실 수입금 처리 부적절, 장기 근속 수당, 직원 보수, 도서구입시 예산 절감 소홀, 예술품 관리 소홀, 전

자도서관 운영 부진 등 주의·시정 총 18건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 감사에서도 신 관장의 월급 추가분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해 시정 자체 감사에 신뢰를 떨어뜨렸다. (중략)

민간위탁을 받은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홈페이지 개설과 컴퓨터 구입을 전자도서관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1천100여 만원, 직원개인에게 도서관 홍보활동비 160만원과 같은 명목인 도서관 알리기운동으로 380만원을 각각 지출해 눈총을 받았다.

한편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시지원금 4억4천400만원과 정부보조금 3억148만원, 연구실 이용수입 1천921만원, 복사료 수입 124만원, 식당·매점·자판기 수입 2억3천550만원, 시청각실 수입 등 기타 290만원 등 총 7억3천419만원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목포신문 2002년 4월 15일자 1면 『민간위탁 혈세가 샌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민간위탁 시립도서관 특별감사, 자체수입 1억원 직원들 주머니로, 전자도서관 구축명분 낭비” 부제와 박광준 지회장이 관장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 월 379만원에 이면계약을 해준 것, 관장의 월급이 문제되자 목포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 실시, 지난해 총 7억3천4백만원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목포시립도서관을 목포시에서 운영한 1998년 집행예산이 737백만원이었으나 3년 후 2001년 민간위탁 예산은 444백만원으로 293백만원이나 절감된 예산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목포시립도서관을 새마을 목포시

지회에서 운영키로 민간위탁 받았다. 또한 위탁계획에는 직원 16명으로 되어 있으나 13명으로 3명 축소하여 인건비를 60백만원 정도 절약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 도서관 민간위탁 계획에 5급 1명, 6급 1명, 7급 5명 등 16명으로 되어 있고 2000년 9월 14일 목포시 공고2000-526호 목포시립도서관 민간위탁공고문에 의하면 위탁되는 도서관장의 직급이 5급상당으로 되어 있고, 목포시새마을지회장을 5급상당 30호봉으로 발령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목포시립도서관 직원보수규정에 의거 4,700여 만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민간위탁협약서 제16조에 “갑(목포시)은 을(목포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정가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수입(자판기, 매점, 식당운영 등)은 수용비, 도서구입비, CCTV설치비, 홈페이지 설치, 독서경진대회 등으로 1억여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예산 734백만원 중 707만원 지출하고 27백만원은 잔액으로 남겨 도서관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도서관 직원들이 개인 주머니를 채운 것처럼 잘못 보도하여 도서관 직원의 명예훼손은 물론 도서관 이미지에도 나쁜 인식을 주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지난 4월 15일자 1면 『민간위탁 혈세가 샌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간위탁 시립도서관 특별감사』, 『자체수입 1억원 직원들 주머니로』, 『전자도서관 구축명분 낭비』 등의 부제목을 사용, 목포시립도서관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민간위탁하여 혈세는

새지 않고 특별감사가 아닌 정기감사였고, 자체수입 1억원은 도서구입비, 홈페이지 설치비, CCTV설치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전자도서관 구축명분 낭비』 부분에 대해 시립도서관측은 전자도서관 구축이 아닌 홈페이지 설치비로 1천여 만원을 사용했다며 시립도서관이 결코 방만한 운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4. 15.자 1면 『민간위탁 혈세가 샌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간위탁 시립도서관 특별감사』, 『자체 수입 1억원 직원들 주머니로』, 『전자도서관 구축명분 낭비』 등의 부제목을 사용, 목포시립도서관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자체 수입 1억원은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 홈페이지 설치비, CCTV 설치비 등 항목에 따라 지출되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전자도서관 구축명분 낭비』 부분에 대해 시립도서관측은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설치비로 1천여 만원을 적정히 사용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포신문 2002년 5월 27일자 1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포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사적인 일에 요양원 환자들을 동원해 강제노역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전북중재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1. 유 완 희
2. 박 경 자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주MBC-TV : 「MBC 저녁뉴스」 프로그램 (2002년 4월 11일 18:40)

내 용 : ▷앵 커 : 전주 갈멜산 요양원이 부식비와 쌀을 빼돌리는 등의 운영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 운영자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환자들에게 강제노역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 기 자 : 요양원에서 30분 거리인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야산. 환자들이 묘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소유의 이 묘지 한켠에서는 부원장 부부가 환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중략)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본래 설립목적은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1983년 3월에 전주시 대성동 소재 갈멜산 정신요양원을 설립하여 신청인 유완희는 이사직으로, 신청인 박경자는 총무로 재직하면서 불우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사업에 헌신봉사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정신요양시설 원외직업재활침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환우들을 동원하여 신청인의 부(유동수) 묘소 내의 잔디 보강과 잔돌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정해진 보수와 식사, 간식, 담배 등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4월 11일 저녁 7시 뉴스에서 신청인에게 일언반구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노역을 시킨다고 보도하였다.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여 부친 묘의 환우작업 영상 방영과 아나운서의 강제노역 사실 왜곡보도는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불법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문중의 종친과 수많은 지역 인사들로부터 괴롭히고 몰지각한 사람이라는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고, 부친의 묘소가 불명예스럽게 영상으로 방영보도됨으로써 문중이 받는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전주문화방송은 지난 4월 11일 전주 갈멜산 정신요양원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 요양원 부원장 부부가 부친 묘소의 잔디 보강과 잔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데 요양원 환자를 강제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 갈멜산 정신요양원의 부원장 부부는 전주시의 환우직업재활침체에 의거하여 환자들의 동의 하에 보수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작업을 실시한 것이지 환자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11일 전주 갈멜산 정신요양원의 비리 보도와 관련해 이 요양원의 부원장 부부는 부친 묘지정리 작업은 환우재활을 위한 작업으로 환자들의 동의 하에 보수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작업을 실시한 것이지 환자들을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전주MBC-TV 18:40 「MBC 저녁뉴스」에 2002. 5. 31.까지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청색바탕에 흰색 글씨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MBC-TV : 「MBC 저녁뉴스」 프로그램 (2002년 5월 20일 18: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들이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급조된 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경기중재14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시흥시장애인연합회 (회장 김민수)
 피신청인 : 새시흥신문
 중재부 : 경기중재부
 접수일 : 2002. 5. 1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새시흥신문 : 『소래산 산사음악회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7일자 1면)

내 용 :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에 대한 불법산림훼손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급조된 장애인 단체를 동원,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려 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장애인 단체들이 이를 중지할 것을 주최측인 천년고찰 효일사 복원추진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사)경기도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회장 전병희)는 지난 23일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호협회, 농아인협회, 신체복지회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로 예정된 장애인을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가 대부분 장애인들이 소속한 단체가 아닌 급조된 장애인 단체의 명의로 개최하려는 것은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기만이며 효일사 복원추진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사라며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대시위를 통한 실행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이 2002년 4월 27일 보도한 『소래산 산사음악회 중단하라』는 기사 내용 중에 시흥시에 소재한 장애인연합회는 기사내용대로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2002년 8월 11일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사)농아인협회, (사)시각연합회, (사)교통장애협회 등 4개 단체가 단체장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시흥시장애인연합회를 급조된 단체라고 기사화되어 시흥시 관내의 장애인들

이 새시흥신문의 기사내용을 보고 장애인연합회가 급조된 단체라 인식함으로써 차후 장애인연합회의 업무집행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기사내용 중에 시흥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2002년 8월 11일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사)농아인협회, (사)시각연합회 등 3개 단체가 합의 하에 연합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
- 내용 : 지난 2002년 4월 27일자 1면 『소래산 산사음악회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시흥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급조된 단체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시흥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2001년 8월 11일 (사)신체장애인복지회, (사)농아인협회, (사)시각연합회 등 3개 단체가 합의 하에 연합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정정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새시흥신문 2002년 5월 25일 1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20포인트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시흥신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2

년 5월 2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증권회사 지점장이었던 신청인이 주가조작을 목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경남중재5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정 찬 희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재부 : 경남중재부
 접수일 : 2002. 5.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1)『삼현철강 주가조작 대표이사 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2일자 1면)

내 용 : 코스닥 등록업체인 창원 삼현철강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와 증권 기업체 대표, 그리고 증권사 현직 지점장 등이 연루된 '작전세력'이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삼현철강이 2001년 1월 9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후 상한가에 주문을 내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주가를 띄운 후 등록 이틀만에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2)『등록후 주가 띄워 이틀만에 매도』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2일자 3면)

현직 증권사 지점장이 '주포(주모자)'로 나선 삼현철강의 주가조작이 그동안 도내 증권가에서 떠돌던 소문에서 사실로 판명남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작전수법 = 공모가 2300원이었던 삼현철강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첫날인 2001년 1월 9일, 작전세력의 주포인 동원증권 부산 사하지점장인 노대현 씨는 공모자들로부터 받은 자금과 자신의 자금 등으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

노씨는 등록 첫날 삼현철강 주식 36만주(100억원 상당)에 대한 허수주문을 냈으며, 이 중 15만주를 상한가로 매수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4600원으로 띄웠다.

그런후 노씨와 공모자들은 다음날 코스닥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들을 4배의 차익을 남기고 깡그리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작전용 실탄(자금)에는 삼현철강 조수의 대표 20억원, A사 대표 안중성(등록전 15만주 취득)씨 12억원, T사 대표 조모(등록전 주식 10만주 보유)씨, 서광건설 손모 씨 10억원 등 대략 42억원과 노씨의 개인자금 등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씨는 동원증권 부산 사하지점 내 3개 계좌를 통해 총 201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거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점장 면직 및 영업점 폐쇄조치를 당하게 됐다. (중략)

△삼현철강과 대우증권 창원지점의 관계는 = 삼현철강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시점에 비상임 이사로 등재돼 있던 대우증권 창원지점 정모 지점장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현철강 주가조작의 주포인 노대현 씨가 이 지점에 근무했던 사실로 미뤄 정씨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모르

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비상임이사에 대한 책임부분도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경남도민일보 2002년 4월 22일 1면 『삼현철강 주가조작 대표이사 검찰고발』과 3면 『등록후 주가 띄워 이틀만에 매도』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삼현철강과 대우증권 창원지점의 관계는=삼현철강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시점에서 비상임이사로 등재돼 있던 대우증권 창원지점 정모 지점장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현철강 주가조작의 주포인 노대현 씨가 이 지점에 근무했던 사실로 미뤄 정씨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비상임이사에 대한 책임부분도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향이 마·창 지역인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30년 가까이 금융기관에서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각계각 지인 및 불특정 다수로부터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정을 통한 불공정 행위로 시세차익을 얻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되어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으며, 위 대우증권 고문 재계약 또는 향후 구직활동에 치명적임은 물론 가까운 시일내 치뤄야 할 자녀들의 혼사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4월 22일자 1면, 3면에 『삼현철강 주가조작』 제하의 기사에서 “대우증권 창원지점 정모 지점장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정모 지점장으로 알려진 정찬희 씨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22일자 1면과 3면에 보도한 『삼현철강 주가조작』 사건기사와 관련 “대우증권 창원지점 정모 지점장에게도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당시 대우증권 창원 지점장으로 보도된 정모 씨는 삼현철강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2. 5. 27.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활자 크기는 경남도민일보 2002. 4. 22.자 2면의 중간에 위치한 기사 제목(김대웅 광주고검장 오늘 소환)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편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광주중재2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메디컴 이십일 (대표이사 최 동 울)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무등일보 : 『다단계 판매 편법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26일자 15면)

내 용 : 전자제품이나 건강식품, 한방 치료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천명의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다단계판매조직이 광주·전남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서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같은 다단계 조직이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적발에 따른 처벌 이후에도 판매조직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적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시 동구 호남동 D빌딩 3층에 위치한 M광주지사의 경우 지난해 부터 ‘국내 최초의 병원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통망 구축’을 내걸고 가맹점 가입비로 회원당 150만원을 받고 수당지급 등 수법으로 무차별적 회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월말까지 가맹점 가약정을 채

결, 1천 300여 명 회원을 추천받아 20억9천만 원 상당의 가입원서를 교부받아 의료용역을 알선하여 지난 3월말께 이 회사 사장 박모(49) 씨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염모(54), 전모(49) 씨 등은 불구속 처리됐다.

그러나 방문판매와 관련, 회사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 상태로 버젓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도 최근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재판계류사건의 법률적 처벌 불가능'이란 법의 맹점 때문에 수사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중략)

한 수사 관계자는 "이들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엄연히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법망을 회피하고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서민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법률개정과 함께 신속한 재판처리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주식회사 메디컴은 한방(부속)병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무등일보 2002. 4. 26.자 사회면 『다단계 판매 편법 판친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신청인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편법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일삼고 있고, 사장 박모 씨가 구속되었으며, 회사가 도산·부도처리 되는 경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신청인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여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어서 조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①신청인 회사의 임직원 어느 누구도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없고, ②신청인 회사가 별도로 정부당국 등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으며, ③지난 3월말께 구속되었다는 박모(49) 씨는 신청인 회사의 과장에 불과한데다가 그에 대한 형사재판 역시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④신청인 회사는 부천에 이어 천안, 수원, 광주에 부속한방병원을 속속 개원하여 회원들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서 회원 중 어느 누구도 신청인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⑤신청인 회사의 재정 역시 건실하여 도산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고, ⑥신청인 회사가 엄연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신청인 회사는 이 보도로 기존 회원들이 중요하고, 신규로 가입하려던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포기하였으며, 부속한방병원의 명예마저 훼손하는 등 실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에 신청인 회사는 반론 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무등일보가 지난 4월 26일자 사회면에 『다단계 판매 편법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메디컴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편법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일삼고 있고, 사장 박모 씨가 구속되었으며, 회사가 도산·부도처리되는 경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신청인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여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어서 조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즉, 주식회사 메디컴의 임직원의 일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 누구도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 광주에서 구속되었다는 박모 씨는 회사의 사장이 아닌 직원이며, 회사의 사장은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의 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피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메디컴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회사가 도산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회사는 부천, 천안, 광주지역에 속속 부속한방병원을 개원하여 회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메디컴 대표이사 최동율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무등일보가 지난 4월 26일자 사회면에 『다단계 판매 편법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M광주지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편법적으로 다단계판매를 일삼고 있고, 사장 박모 씨가 구속되었으며, 회사가 도산·부도 처리되는 경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신청인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피하여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어서 조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습니다.

즉, 주식회사 메디컴이십일의 임직원의 일

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 중 누구도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특히 광주에서 구속되었다는 박모 씨는 회사의 사장이 아닌 지사장이며, 회사의 사장은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의 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피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메디컴이십일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회사가 도산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회사는 부천, 천안, 광주지역에 속속 부속한방병원을 개원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메디컴 이십일 대표이사 최동율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무등일보 2002년 5월 25일자 15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5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혼인관계가 위기에 이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18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권 영 순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2. 5.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2002년 5월 4일 00:10)

내 용 : ▷태영 : 무서워요...식은 땀이 등뒤에서 줄줄 나오도록 미쳐버려요. 진짜 아니 세상에 돈을 압류 시켜놓고 나보고 돈을 안 갖고 온다고 하니 나 환장할 일이라게. 진짜...

▷해설 : 최근 3년 동안 아내로부터 모든 재산과 월급마저 압류당한 태영 씨. 남도 아니고 부부사이에 압류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영순 : 아니 생활비 갖다주면 안싸울텐데 왜이러느냐고... 저번에도 거기서 생활비 안 갖다 쥐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서 두 번째 고소했잖아. 또 고소당할래? 너나 또 때려 가지고.

▷태영 : 미쳤냐?

▷해설 : 어느날 큰아들 조심스럽게 꺼내는 얘기

▷아들 : 엄마, 아저씨 어머세요.

▷영순 : 뭐!

▷아들 : 아저씨 좋은분 같아요

▷해설 :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나와 사이가 보통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는지 그와 재혼을 적극 권했다. 그는 끄적하게 나와 아이들에게 잘해줬지만 결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결국 내가 꺼낼수 밖에.

▷영순 : 결혼할 게 아니면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태영 : 그게...

▷영순 : 왜! 자신없어? 그럼 여기서 끝내.

▷태영 : 나에게 시간을 좀 줘요. 내가 우리 가족들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줘.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해설 : 몇번을 헤어졌다 다시 찾아오는 남편.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동생 : 당신이 뉘데 우리 오빠를 만나는 거야.

▷누나 : 아니 애가 둘씩이나 딸리고 나이도 많으면서 총각한테 시집을 가? 순 날강도 아니야.

▷해설 : 그런 시누이들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남편까지 함세해서 온갖 수치고 모욕을 줬다. 나는 오기가 생겼다.

▷남편 : 이 사람이 스토커예요.

▷해설 : 내 처지에 애인이나, 즐기기 위한 만남은 내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았다. 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그는 대답만 할 뿐. 나는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해설 : 남편은 날이 갈수록 자기맘대로였다 자기맘에 안드는 일이 있으면 외박, 그 기간이 길어지면 가출. 심지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이웃집에서 들을 정도였다. (중략)

▷해설 : 늦은 밤 태영 씨는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 3살된 영이를 보는 즐거움이다.

들어오자마자 마자 매번 하는 소리를 또한다. 머리속에 온통 남편을 들볶을 생각으로만 가득한 여자. 수도 없이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서로 돌아다니며 어린 영이를 남한테 맡기는 일이 허다한 아내.

▷남편 : 아무리 남의 애라도 이렇게는 안 봐준다 내가 봐도...

▷영순 :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애를 맡긴 거 아니야.

▷남편 : 다 부르터가지고 기저귀 안갈아 줘서 난리네. 아이구….

▷해설 :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아야 할 영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건 물론이고, 한참 자라는 초등학교 5학년 희야에게도 관심은 고사하고 저녁식사도 제시간에 못 맞춰 주는 아내. 아이들은 큰소리로 싸우는 부모때문에 위축이 되고 있어도 아내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중략)

▷해설 : 난 그때까지 결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빨리 결혼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사람 처럼 다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안의 장남인 나는 아이도 있고 나이도 나보다 더 많은 그녀를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남편 :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나라는 사람을 목표로 설정을 했으면 너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해설 : 그리고 그녀는 나한테서 결혼의 답을 받아 벌려고 매일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결혼의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표쓰고 떠나라고 화난 얼굴로 뺐다. 그러며 자기가 웃었고 타지 않으면 타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도 타지 않으면 화를 냈다. 오히려… (중략)

▷해설 : 그렇게 일년이 넘도록 결혼문제로 실갱이를 벌이던 어느날 시골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 : 어 니가 웬일이야. 별일없어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혼인신고가 되었다구(해설) 혼인신고가 된 마당에 우선 함께 살고 부모님 설득은 아이 낳은 다음으로 미뤘다. 그러나 집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손톱만큼이라도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밤새도록 싸움을 걸어왔고 난 잠 한숨 못자고 출근할

때가 허다했다. 그리고 나가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는지 집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남편 : 거의 5년 동안 거의 무사고였어요. 사고가 없었어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고가 한 10번 정도 나버렸어요. 스트레스받고 막 신경 쓰다 보니까.

▷해설 : 난 결국 버스회사에서 권고 사직서를 받고 요즘은 트럭운전을 한다. 여전히 밤늦도록 싸우고 새벽이면 출근하니 정말 피곤하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SBS-TV 5월 4일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압류당한 내인생' 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SBS 방송이 지난 5월 4일자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남편의 모든 재산과 월급을 압류했고, 아들이 “아저씨랑 재혼하세요”라는 말을 했으며, 신청인 입에서 먼저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왔고, 결혼의 승락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남편을 따라다니고, 부부싸움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서로 돌아다니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제멋대로이고 아내 때문에 권고 사직서를 받고 졸음 운전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남편에게 상처받을 말도 함부로 하였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으나 서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며, 적금을 들어서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였고, 월

급을 압류해서 카드를 썼고, 이삿날도 몰랐고, 최근 3년 동안 명절에 집에 간다고 해도 못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남편이 7년 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일부 통장만 압류했고, 모든 재산과 월급은 압류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고, 혼인신고는 남편이 먼저 권유했고 신청인이 남편과 싸움을 그때그때 기록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서로, 돌아다니느라 영아를 남한테 맡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한 적도 없었으며, 신청인은 결혼의 답을 얻기 위해 남편을 괴롭힌 사실이 없고, 그 때문에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또 신청인은 남편에게 상처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남편은 신청인에게 충분히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남편은 또한 카드값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신청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했다거나 최근 3년간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반론보도청구인 권 영 순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4일 방영된 「터닝포인트」 ‘압류당한 내인생’ 편과 관련,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내 권영순 씨는 본인이 스토키로 지칭되고 혼인신고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등 남편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며 자식양육에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도 프로그램

재연시 자식양육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말미에 2002년 6월까지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 하단에는 동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제목을 검은 바탕에 흰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2002년 6월 1일 01: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97년 대선직전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2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서 정 원)

피신청인 : ohmynews 2002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ohmynews 2002 : (1)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열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1일자 1면)

내 용 : 병무청 고위간부를 지낸 K씨가 서울지검에서 폭탄진술을 했다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의해 확인됐다. 내용은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K씨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오마이뉴스>는 K씨(현재 수감중)의 초기 진술 내용이 비록 후에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병역비리문제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그리고 검찰이 그의 초기진술과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본격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 문제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 (후략)

(2) 『"97년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수 차례 열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1일자 2~3면)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씨 큰아들 정연 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와 또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특보, J의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가 재조사때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K씨는 또 초기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끝에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있던 병역판정 부표를 파기했으며 병무청에 남아있는 병적기록부 원본도 변조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함께 했다가 검찰이 조서를 꾸미

려 하자 부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초기진술에서 지난 97년 7월 정연 씨의 병역의혹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병무청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이회창 후보의 K특보이며 "이어 신한국당의 J의원도 병무청으로 찾아왔다"면서 "병무청쪽에서는 나와 Y씨, 신한국당쪽에서는 K특보, J의원 등이 97년 7월말 국회에서 이정연 씨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기 직전에 5~6차례 그 뒤로 1~2차례에 걸쳐 힐튼, 하이얏트 호텔 등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K씨가 서울지검에 설치된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에 지난 1월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K씨는 수사에 초기에 자신이 97년의 대책회의와 관련해 체포된 것으로 오인해 대책회의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되면 내가 국회에 위증한 것이 되는데..."라면서 진술을 시작한 K씨는 재조사때부터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K씨가 국회에서 병무청의 정연씨 병적기록부 제출 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논란이 일고 있던 97년 7월말을 전후해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와 K특보(현 한나라당 의원) 신한국당 J의원(현 한나라당 의원)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관련 대책회의를 했다는 진술을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주간 오마이뉴스 5월 21일자 1면 및 2~3면 『단독공개-97년 대선 당시 묻혔던 의혹,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열었다』, 『병무청 고위간부 K씨 올 1월 검찰조사 때 폭탄진술 뒤 부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3호 2002년 5월 21일~5월 30일자 프론트 페이지와 2면 및 3면 『단독공개-97년 대선 당시 문혔던 의혹,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열었다』, 『병무청 고위간부 K씨 올 1월 검찰조사때 폭탄진술 뒤 부인』 제하의 기사에서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씨 큰 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특보, J의원 등이 수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가 재조사 때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정연씨는 불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한국당 관계자들이 병무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지의 허위보도로 이회창 후보와 그 가족 그리고 한나라당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주간 오마이뉴스2002 3호 2002년 5월 21일~ 5월 30일자 표지와 2면 및 3면 『단독공개 - 97년 대선 당시 문혔던 의혹,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열었다』, 『병무청 고위간부 K씨 올 1월 검찰조사 때 폭탄진술 뒤 부인』 제하의 기사에서 전 병무청 고위간부 K씨가 올 1월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

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씨 큰 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와 또 다른 병무청 간부 Y씨, 그리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인 K특보, J의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가 재조사 때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정연씨는 불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한국당 관계자들이 병무청 간부들과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를 가진 적도 없고 병역판정 부표를 과기하거나 병적기록부 원부도 변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오마이뉴스2002 6월 4일자 3면에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제목(97년 국감장에서 K씨 “병역기록표 조작되지 않았다”)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ohmynews2002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4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단순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3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성 호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2. 5. 28.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 법원. 거액 손배소 기각』 제하의 기사 (2002년 4월 30일자 38면)

내용 :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문책성' 판결이유까지 밝히며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29일 택시운전사 이모(43) 씨가 김모(34·여) 씨를 상대로 낸 1,985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속 10km로 차량을 우회전하다 정차 중인 이씨의 차 뒷범퍼를 극히 경미하게 접촉했는데도 이씨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손해배상금으로 법원공탁금 200만원과 보험금 140만원을 수령하고도 소송을 낸 것은 가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3월 김씨의 승용차가 정차 중인 자신의 택시 뒷범퍼를 긁고 지나치는 바람에 목뼈가 빠는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사고 차량의 택시를 운전했던 사람으로서 서울경제 2002년 4월 30

일자 사회면에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 법원 거액 손배소 기각』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보도에서 신청인이 피병에 거액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사고 당시 김모 씨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 중이었고 사고야기 후 도주하여 신청인이 약 1km-1.5km 정도 쫓아가서 잡았다.

현장에 차를 세울 때부터 증인이 있었고 2차로 도주하여 뺑소니 특가법으로 처벌됐다.

또한 신청인을 무고하여, 김씨가 무고에 대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주위에 사고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기사내용이 사실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냐는 등 줄지에 파렴치한이 되었고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청인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고 이해시키느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서울경제가 지난 2002년 4월 30일자 사회면에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 법원 거액 손배소 기각』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을 가벼운 교통사고로 거액을 뜯어 내려는 피병환자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당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김모 씨는 사고 후 한마디 사과도 없이 2차로 도주까지 하여 뺑소니 특가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피해자인 신청인을 무고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씨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보다는 신청인의 괘씸한 마음이 더 컸다.

그런데 법원은 교통사고와 무고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무고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반쪽 판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보도가 된 것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신청한다.

반론보도신청인 이 성 호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2년 4월 30일자 사회면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 법원 거액 손해소 기각』 제하의 기사에서 (반론보도)신청인이 교통사고로 가벼운 피해를 입고서도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피고측의 사고 후 뺑소니와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였고 가벼운 피해를 이유로 거액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이 성 호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에 2002년 6월 5일까지 오피니언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4일자 3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97년 대선당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특정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3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서 청 원)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이회창 창자론’ 수면위로』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3일자 3면)

내 용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97년 대선 직전에 가진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일부 기자에게 ‘창자론’을 뽑아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창자론’의 진상이 최근 발행된 월간지를 통해 일부 드러나 언론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략)

이 기자는 “이 총재는 이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한나라당 반장들과의 술자리에서도 한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당신과 ○○○기자는 ○○일보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며 “술자리에서의 이 총재는 ‘과격함’ 발언을 종종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7년 10월께 있었던 술자리에선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이총재의 질문에 해당 기자가 ‘고대 출신’이라고 말하자 이 총재는 ‘그 대학 나오기도 기자가 될 수 있냐’고 말해 불쾌했다고 후배기자가 털어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중앙일간지 정치부 기자는

“술자리 발언으로만 놓고 보면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 총재가 한 발언이 더 큰 문제”라며 “하지만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사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 후보의 발언을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문제삼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미디어오늘 5월 23일자 3면 『이회창 창자론' 수면위로』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기사에서 익명의 기자의 말을 인용, “97년 10월께 있었던 어느 술자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이회창 총재의 질문에 해당기자가 ‘고대 출신’이라고 말하자 이 총재가 ‘그 대학 나오고도 기자가 될 수 있냐’고 말해 불쾌했다고 후배기자가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이회창 당시 총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미디어오늘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전분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이 기사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마치 특정학교와 특정학교 출신 동분을 비하한 것처럼 알려짐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3면 『이회창 창자론' 수면위로』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의 기자의 말을 인용, “97년 10월께 있었던 술자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질문에 해당 기자가 ‘고대 출신’이라고 말하자 이 총재는 ‘그 대학 나오고도 기자가 될

수 있냐’고 말해 불쾌했다고 후배기자가 털어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회창 후보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고려대는 물론 어떤 학교에 대해서도 비하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실이 아닌 기사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분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3일자 3면 『이회창 창자론' 수면위로』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의 기자의 말을 인용, “97년 10월께 있었던 술자리에서 어느 대학출신이냐는 이회창 총재의 질문에 해당 기자가 고대 출신이라고 말하자 이 총재는 ‘그 대학 나오고도 기자가 될 수 있냐’고 말해 불쾌했다고 후배기자가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가 특정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미디어오늘’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분)의 활자크기는 본 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월간중앙 술자리 실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보도내용의 활자크기는 본 건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2002년 6월 20일 이전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반론보도분』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납품실적증명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경기중재1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삼덕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문수)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2. 5.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인일보 : 『실적증명서 변조 특정업체 수의 계약』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3일자 23면)

내 용 : 농업기반공사가 파주지역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 관공서의 실적증명서를 변조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기공으로 부터 계약을 의뢰받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당초 계약조건인 '무선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제작·납품실적'을 이 업체에 맞게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의혹을 사고있다.

22일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 따르면 농기공은 농업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사업발주를 의뢰해 삼덕전기(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삼덕전기측은 당시 서류제출 마감 하루 전인 11월 16일자로 김포시가 발급한 것으로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조합측에 제출했으나 확인

결과 김포시는 이 같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실적증명서에는 김포시가 같은 해 4월 방제시설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유·무선 원격측정장치와 무선시스템' 등을 제작, 납품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이 사업에는 이 같은 품목이 시공설비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6일 삼덕전기에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발급대상에는 12월 4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측도 당초 입찰조건에 '공공기관에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제작·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발주기관인 농기공과 협의도 없이 '유·무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변경해 특정업체 낙찰을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농기공 파주지사도 "삼덕전기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본사의 검토결과를 받고도 "무선통신기기의 납품 및 시공실적이 인정된다"며 서둘러 조합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급공사 계약에 허점을 드러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삼덕전기(주)로서 경인일보 2002년 5월 23일자 사회교육면 『실적증명서 변조 특정업체 수의계약』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① 농업기반공사가 파주지역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 관공서의 실적증명서를

변조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②당초 계약조건인 '무선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제작·납품실적'을 이 업체에 맞게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의혹을 사고 있다. ③지난해 11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사업발주를 의뢰해 삼덕전기(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④삼덕전기측은 당시 서류제출 마감 하루 전인 11월 16일자로 김포시가 발급한 것으로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조합측에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김포시는 이 같은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또 이 실적증명서에는 김포시가 같은 해 4월 방제시설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유·무선 원격측정장치와 무선 시스템' 등을 제작, 납품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이 사업에는 이 같은 품목이 시공설비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⑥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6일 삼덕전기에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발급대장에는 12월 4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⑦조합측도 당초 입찰조건에 '공공기관에 무선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제작·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발주기관인 농기공과 협의도 없이 '유·무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변경해 특정업체 낙찰을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보도내용 ①항 관련 사실은 김포시 문서발급 담당확인 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16일자로 납품실적증명서를 3부 발급(1부: 한국자동제어조합제출, 2부: 당사보관 중) 받았고 '02. 5. 22. 담당기자와 유선통화시 11월 16일자 납품실적증명서를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확인을 하라고 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 보

도하였다.

보도내용 ②항 관련사실은 당초 농기공 파주시부와 한국자동제어조합 계약조건('01. 11. 13)에 "과주지구 물관리 자동화사업 계약서에 의함"이라 명기되어 있으며 시방서에는 "유·무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으로 당사에 맞게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보도내용 ③항 관련 사실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목 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한 단체수의 계약물품(표준분류번호 31202202)운영규정,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농기공 파주시부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간 단체수의 계약체결하고 조합 배정기준에 의거 당사를 포함 5개 회사가 배정을 받았다.

보도내용 ④항 관련 사실은 납품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행부수와 발행처 보관용 1부를 접수토록 되어 있으며 당사에서 보관 중인 11월 16일자 납품실적증명서 또한 4부를 작성하여 3부를 발급받았고 1부를 김포시 담당부서(회계과경리계)에서 보관 중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담당기자는 사실여부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보도 하였다.

보도내용 ⑤항 관련 사실은 김포시 "방제시설감시제어시스템"의 특별시방서에 유선망이 단절시 무선시스템(CDMA, SMS BACK-UP SYSTEM)이 작동하여 무선으로 송수신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완료된 상태이다.

보도내용 ⑥항 관련 사실은 당사에서는 12월 4일자로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12월 4일자 발급대장에 기재된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내용은 (주)동광계전, (주)신명 2개사에 발급된 내용이며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일자에는 12월 5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포시 관계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12월 4일자로 발급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담당기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하였다.

보도내용 ⑦항 관련 사실은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한국첨단(주), (주)신화FA 2개사가 민원을 제기하여 농업기반공사 본사, 경기도 본부, 파주시사,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 시방서, 납품자격조건 등을 여러 차례 질의 응답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납품실적증명서에 이상이 없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이 사실여부의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어야 할 언론기관에서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차후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사회교육면에 『실적증명서 변조 특정업체 수의 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삼덕전기(주)가 납품실적 변조,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삼덕전기(주)는 계약조건에 합당한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파주시사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간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기준에 의해 5개사로 배정을 하여 삼덕전기(주)로 그 일부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5월 23일자(사회교육면) 『실적증명서 변조 특정업체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삼덕전기(주)가 납품실적 변조,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덕전기(주)는 실제로 김포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농업기반공사 파주시사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간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기준에 의거 5개사로 배정을 하여 삼덕전기(주)로 그 일부를 배정받았다고 반론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이 문 수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2년 6월 13일 22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계약의뢰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담합의혹)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13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무주군이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교량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대전중재1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무주군 (군수 김 세 웅)

피신청인 : 중앙경찰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수일 : 2001.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앙경찰신문 : 『무주군 통안리 계곡에 교량공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4일자 9면)

내 용 :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무주군 안성면 통안리계곡은 무주군의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그린환경 지역이다.

이 곳 주변에는 삼림욕장을 비롯 민박·가든·별장 등으로 계곡 주변을 둘러쌓고 있는 반면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이 곳에 철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계곡의 자연석을 밀어붙이고 시멘트로 물놀이터를 만들어 자연을 훼손, 영업을 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곳 통안리 계곡 입구에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총공사비 1억4천7백51만여 원을 들여 B=5.8m L=24.0m 중복식아치교 가설공사를 청록종합건설이 6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그러나 안성면 통안리 계곡 우측에는 민가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통안교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약 70~100m 위에 이미 가설된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부주군은 2002년 5월 24일자 중앙경찰신문 제52호 9면(지방/사회) 『무주군 통안리 계곡에 교량공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부주군 안성면 통안리 계곡은 무주군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사용되는 그린환경지역이다”와 “그러나 통안리 계곡 우측에는 민가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통안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약 70m~100m 위에 이미 가설된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마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 허위보도하고, 97년 민원에 의해 가설되고 있는 교량을 마치 선심성 공사인 양 잘못 보도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구독하지 않는 신문을 배포하는 등 마치 무주군 행정이 잘못 수행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무주군민에게 공직사회에 불신감을 팽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보도로, 무주군과 무주군 소속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심대한 정신적 자괴심을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2002년 5월 24일자 중앙경찰신문 제52호 9면(지방/사회)에 『무주군 통안리 계곡에 교량공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무주군 안성면 통안리계곡은 무주군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사용되는

그린환경지역이다”에서 무주군 안성면 상수도보호구역은 기사에서 다루어진 통안천이 아닌 덕곡천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시설 또한 덕곡천에 있어 공연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마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 사실이 아닌 그릇된 보도로 깨끗한 무주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통안리 계곡 우측에는 민가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통안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약 70m~100m위에 이미 가설된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에서 본 사업은 97년부터 교량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실무부서의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현재 가설되고 있는 교량이며, 주변 농경지(2ha) 경작과 이 교량 가설 후 인근마을(사탄마을)과의 연결 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산림을 이용하는 관광객 이용에 꼭 필요한 교량을 마치 선심성 공사로 허위 보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였고, 구독하지 않는 신문을 행정기관 및 주민에게 배포한 것은 무주군민에게 무주공무원과의 불신감을 팽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매체에서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로 무주군과 무주군 공무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 본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4일자 제52호 9면(지방/사회)에 『무주군 통안리 계곡에 교량공사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무주군 안성면 통안리 계곡은 무주군의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그린환경지역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보호지역은 통안천이 아닌 덕곡천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하여 바로잡습니다.

또한 안성면 통안리 계곡 우측에는 민가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통안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는 약 70m~100m 위에 이미 가설된 교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보도에 대해 무주군은 97년부터 교량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교량가설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현재 가설되고 있는 교량이며, 주변 농경지(2ha)경작과 본 교량 가설 후 인근마을과의 연결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관광객 이용에 필요한 교량으로 특정인을 위해 선심성 공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경찰신문 2002년 6월 21일자 9면(지방/사회)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고, 제목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상수도 보호구역 등...)과 같은 크기로 하되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경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21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참석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 보도)

사건번호 : 2002강원중재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강 양 희)
피신청인 : 시사주간 강원리뷰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2. 6.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시사주간 강원리뷰 : (1) 『동해시청 직장협 단체
행동 등 불법노동행위 계
속』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5일자 1면)

내 용 : 동해시청 직장협의회가 지
난 2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주집회 참석을
막았다는 이유로 지난 달 29일과 4일 동해경
찰서장(서장 진흥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
를 가져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동해시청 직협은 지난 달 27일 지방공무원
법 58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
지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원주집회 참석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
찰과의 마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해직협은 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xx놈들아, x같은 놈들아 비켜라” 등
욕설과 힘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
리게 했다. 또 1차, 2차 경찰제지를 뿌리치고
3차 중앙초등학교 앞에서의 집단행동은 공무

원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케 했다.

또한 집단의 힘을 빌어 경찰에게 집중공격
을 퍼붓는가 하면 강양희 동해시청 직장협의
회 회장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
찰차 밑으로 몸을 집어넣는 등 상식을 넘어서
는 행위를 보여줬다.

이날 직협의 집단행위는 직협 인터넷 사이
트에 영상물로 게시됐다.

영상물에는 “동해시청과 시민을 짓밟는 동
해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으며 시민들이
경찰을 불신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의 어떠한 강경대처도
없었으나 단지 자신들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경찰 운운한 것은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발이 돼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
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민단체 20여 명이 함께 가
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집회에 시민단체를 가담케
한 것은 동해시청 직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교묘히 가리려는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해시청직협 문제가 시민의 뜻인 것
처럼 꾸미려는 직협 집행부의 어설픈 발상이
라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의 제지로 원주집회 참가가 늦어
졌다는 이유로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4시까지 무려 6시간에 걸쳐 이들 80여 명
이 동해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동해경찰
서 현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원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동해경찰서장의 사과다”라며 시와 동사부소를
찾는 민원인을 팽개쳤다. 또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
타났다. (후략)

(2)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는 공권력 불

신 조장』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5일자 23면)

(전략) 직협이 집단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9일 항의방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협은 지난 4일 민주노총과 강원도 14개 시군 직협 등과 연계해 천곡동 북개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교통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제지선을 뚫고 동해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는 등 80년대 과격 시위를 방불케 했다. 특히 민주노총산하 단체의 과격시위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심한 욕설은 물론 경찰제지선을 뚫기 위한 격렬한 행위는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였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적인 태도였다는 것이다. 또 직협이 민주노총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 개혁, 업무능률 향상,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2000. 5. 24 창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지난 5월 6일자 시사주간 강원리뷰에 『동해시청직장협 단체행동 등 불법노동행위 계속』, “xx놈들, xxx박살내라 등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는 공권력 불신 조장”, “민원은 알 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급하다” 등의 무책임하고 편협적인 보도로 600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피신청인은 사실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동해경찰서의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동해시청 직협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처사는 사회적으로 강원리뷰 구독자와 시민들로부터 지방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고,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명예를 훼손하여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과 23면에 “동해시청 직장협 단체행동 등 불법노동행위 계속, xx놈들, xxx박살내라 등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는 공권력 불신조장”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본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1. 2002년 4월 27일(토) 근무시간 이후에 동해시청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약 80여 명이 동해시청 현관에서 버스로 ‘강원도 민주노총’ 명의로 정식신고가 난 원주집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동해경찰서에서 시청을 봉쇄하고 버스이동 및 일반직원 퇴근차량까지 봉쇄하였다.

2. 4월 29일 버스이동 및 퇴근차량 봉쇄 등에 대한 항의로 시민단체 및 직협대표가 동해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동해경찰서장의 입장에 동해시청 공무원이 하나둘 자발적으로 동해경찰서를 항의방문 한 것이다.

3.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 민원을 알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급하다”는 이런 사실이 없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4. 5월 4일 집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명의로 “인권탄압, 공권력 남용 동해경찰서구탄대회”로 정식 집회신고가 난 것이기에 동해시청

직협이 집회를 주최한 것은 아니며, 시민단체를 가담케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청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인 참여로 밝혀졌다.

또한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단체행동 등 불법노동행위 계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까지 의심” 등의 표현은 사실과 무관하며,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600여 공무원과 10만 동해시민에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올바르게 공정한 언론보도 실현을 위하여 모든 보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언론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5일자 1면과 23면에 『동해시청 직장협 단체행동 등 불법노동행위 계속, xx놈들, xxx박살내라 등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는 공권력 불신조장』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측의 다음과 같은 주장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동해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주장내용

1. 2002년 4월 27일(토) 근무시간 이후에 동해시청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약 80여명이 동해시청 현관에서 버스로 ‘강원도 민주노총’ 명의로 정식신고가 난 원주집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동해경찰서에서 시청을 봉쇄하고 버스이동 및 일반직원 퇴근차량까지 봉쇄하였다.

2. 4월 29일 버스이동 및 퇴근차량 봉쇄 등에 대한 항의로 시민단체 및 직협 대표가 동해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과

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동해경찰서장의 입장에 동해시청 공무원이 하나들 자발적으로 동해경찰서를 항의방문한 것이다.

3. 동해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폭언과 폭력으로 일관, 사실과 어긋난 영상물 배포, 민원은 알 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더 급하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없다.

4. 5월 4일 집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명의로 “인권탄압, 공권력 남용 동해경찰서 규탄대회”로 정식 집회신고가 난 것이기에 동해시청 직협이 집회를 주최한 것은 아니며, 시민단체를 가담케 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청 직협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보도를 한 점을 밝히고, 앞으로 올바르게 공정한 언론보도 실현을 위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 강원리뷰 2002년 7월 1일 1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 부제목(근무지 무단이탈...)과 같은 크기로 기재하고, 본문은 중재대상 본문기사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제목과 본문내용을 1면에 다섯줄 이상 게재하고 본문의 나머지는 ‘계속’ 되는 지면을 표시하여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주간 강원리뷰 : 『동해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21일자 1면,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양대 의료원의 2002년 임금단체 협상 타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5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양대의료원지부 (지부장 유영희)
피신청인 : 후생신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2. 6.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후생신보 : 『노조에 두손 든 '한양대 의료원'』
제하의 기사 (2002년 5월 27일자
5면)

내 용 : 지난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40여 개 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
데 파업이 당연시되던 한양대학교의료원노조
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주위를 놀라게 했
다.

이 노조는 전국보건의료노조를 이끌고 있는
차수련 위원장을 배출했고, 지난 수년간 연대
파업과 자체파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강성 노
조의 대명사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가 이번 파업에 불참한 것은 이날 새벽
4시경 노·사가 '2002 임금, 단체협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실로 오랜만에 파업의 불
뚝을 비껴간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한양대의료원 노·사는
임금을 총액대비 7.8% 인상하되 3월부터 소
급 적용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선 전임자 미

사용 연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면평가제
를 실시하며 인사문제는 노·사 간담회를 통
해 협의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해고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원내 폭언·
폭행금지 △주 5일 근무 법제화즉시 시행 △
산전 산후 법정휴가 준수 △의료비혜택(외래
본인부담액 30%, 20년 이상 근무 퇴직자 직원
과 동일혜택) △본인부담 연금 중 20% 의료
원 부담 △산별 중앙교섭정착 노력 및 산별교
섭요구시 참여 등의 부분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 같은 원칙에 오래전에 합의했
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극적 효
과를 배가시키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이번 합
의를 통해 노조는 평균 13%의 임금인상과 인
사 등 각종 행정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교두
보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원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노조에 '완전 항복'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재단에서 수백억을 차입
해 쓸 만큼 허약한 경제력으로 합의사항을 제
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 한양대의료원지부로서 후생신보의 2002년
5월 27일자 5면 『노조에 두손 든 '한양대의료
원』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2002년 임금, 단협 교섭기를 맞아
의료원측과 원만하고 성실히 교섭하여 파업까
지 가지 않고 대타결을 이룬 바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의 한양대의료원의 파행적
이고 노사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반목을 깨고
을 임금, 단협 교섭을 통해 대화로써 노사 상

호 합의를 도출해낸 매우 의미있는 타결이다. 노사는 이를 통해 이후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타결안에 대해 2,000명 직원 중 1,860명이 조합원인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근에 실시한 '2002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90.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후생신보는 노사 타결내용 및 과정에 대한 노조 및 의료원측 당사자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노조에 두손 든 '한양대의료원'』이라는 제목부터 편파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원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노조에 완전항복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를 주류를 이룬 가운데...” “노사는 이 같은 원칙에 오래전에 합의했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등의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 소수 직원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일반화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이는 피신청인이 원만한 노사 대타결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으며 이 기사가 나간 이후 한양대의료원의 현재 노사관계 역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이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하고 이번 기사를 통해 노사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신청인은 2002년 5월 27일자 신문에 난 보도 비중 이상의 지면 할애를 통해 후생신보의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2002년 5월 27일자 5면에 『노조에 두손 든 '한양대의료원'』 제하의 기사에

서 “노·사는 이 같은 원칙에 오래전에 합의했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련함을 보여줬다”와 “원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노조에 완전 항복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양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2002년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파업 전야인 5월 22일, 막바지까지 사학연금 등 몇가지 쟁점이 조율되지 않아 한때 교섭이 결렬돼 5월 23일 00시를 기하여 노동조합에서 파업지침을 내리는 등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후 오전 3시에 교섭이 재개되어 오전 4시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2,000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86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02년 임금,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5.6% 투표율에 90.7% 찬성율로 압도적으로 가결한 바 있으며 임단협 타결의 주체인 노사 양측이 올 임단협 교섭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로 인정,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사실 확인결과 본지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후생신보 2002년 6월 27일자 5면 내지 6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중간제목(23일 새벽...)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앞으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후생신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2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6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청인 : 김 충 석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7.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지자체 당선자 '취임전 추태' 속출』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27일자 19면)

내 용 :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지방행정 혼선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략)

김충석 여수시장 당선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다.

김 당선자는 최근 에이즈에 걸린 한 여성이 여수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인터뷰에서 “에이즈여성 사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식이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에 당선된 자로 경향신문 6월 27일자 19면 『지자체당선자 '취임전 추태' 속출』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김충석 여수시장 당선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다. 김 당선자는 최근 에이즈에 걸린 한 여성이 여수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인터뷰에서 ‘에이즈여성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식이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인즉,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와 신청인과의 여수시장 취임을 앞둔 김 당선자가 생각하는 ‘여수시의 청사진’이란 인터뷰의 일문일답 중 에이즈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시장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였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한 부분은 여수지역의 어떤 시민단체인지 명확한 거명도 없고 신청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거명하였는데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경향신문 6월 27일자 19면에 『지자체당선자
취임전 추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충석
여수시장 당선자는 자신의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다. 김 당선자는 최근 에
이즈에 걸린 한 여성이 여수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인터뷰에서 ‘에이즈
여성 사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들
로부터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식
이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사
실은 여수시장 당선자의 신분에 시민의 불
안과 안전을 위해 보다 신속한 방안 중 공공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인 구모 씨의 사진을 철
저한 관리 하에 은밀하게 공개하여 불안과 공
포에 떨고 있는 여수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인권도 중
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4~5천명의 여수시민들
의 건강과 안전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이 일부만을 기
재하여 『공식취임 전의 단체장 추태』라는 소
제목의 기사로 이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주었고 개인적인 명예와 여수시
의 명예도 실추시킨 편파보도입니다.

반론보도신청인 김 충 석

합의사항 이행결과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6월 27일자 19면 『지자체당선
자 ‘취임전 추태’ 속출』 제하의 기사 중 김충
석 여수시장 당선자가 “에이즈 여성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김 시장은 “환자의 인권을 무시
하고 무조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소 등
믿을 만한 장소에서 사진을 비치, 확인을 원
하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
문’ 지방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모든 지
방판에 게재되도록 하고, 2002년 7월 18일 이
전에 보도한다.
- 피신청인이 위 1, 2항을 정확히 이행하면,
신청인은 본 건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7월 17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청원군수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모 방송국 주최 ‘후보자토론회’ 출연이 제외되자 선관위 직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충북중재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민 희

피신청인 : 충청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2. 7. 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충청일보 : 『선관위 직원 폭행 군수후보 입건』
제하의 기사 (2002년 6월 21일자
19면)

내 용 : 청주동부경찰서는 20일 무소속 후보에게 방송출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이민희 씨(52·청원군수 무소속 출마)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모 방송국이 주최한 ‘청원군수 후보 토론회’에 자신의 출연이 제외되자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쯤 청원군 선관위를 찾아가 직원 전모 씨(4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6. 13 지방선거에 충청북도 청원군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방송사의 신청인 등 특정후보자에 대한 TV합동토론회 배제조치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행위로 군선관위는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태만이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항변하는 신청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후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형사고소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하였기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본지(충청일보)가 2002년 6월 21일자 사회

면에 『선관위 직원 폭행 군수후보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청원군수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한 이민희 씨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민희 씨의 구두민원제기에 대하여 욕설을 먼저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일로 본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2002년 6월 21일자 사회면에 『선관위 직원 폭행 군수후보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청원군수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했던 이민희 씨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구두민원제기에 대하여 서로 몸싸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일보 2002. 7. 15. 19면에 게재하되, 제목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선관위직원 폭행 ...)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본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를 양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7월 15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원고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발제문의 문장을
인용보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2. 5. 24.자 판결[2001가합17072 / 2001가합24452(병합)]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2년 5월 24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가 동아·조선·중앙일보 등 8개 언론사와 각 언론사 편집국장,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민주당 산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2001년 2월 27일 여야국회의원 연구모임인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피고 언론사들은 이 토론회에서 원고가 '6·25전쟁 및 칼(KAL)기 폭파 관련 사과 요구 논란'에 관하여 침략전쟁, 하이재킹(여객기 납치), 테러 등은 '사과'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으로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여객기테러"와 같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발언

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기사의 제목을 부적절하게 붙이거나, 발제문 중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사과보다 책임이 엄중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거나 곤란하다"는 원고의 견해를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할 일이 아니다. 사과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며 발언함에 있어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발언의 진의는 발제문 상의 문언에 의하여만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발제문의 의미는, 김정일은 6.25전쟁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칼(KAL)기 폭파사건에 관하여도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고 조사할 수 없으므로 후에 가능한 시기가 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과와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들의 기사가

원고의 발제문의 문장만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토론회에서 김정일의 6. 25전쟁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과 발제문 상의 문언도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 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라고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는 결국 김정일의 6. 25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17072 손해배상(언론)
2001가합24452(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황태연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이임성,
최재근, 윤문수, 고재규

피 고 : 별지 1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 2002. 5. 1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 피고 이현락, 피고 최규철, 피고 김창혁, 피고 윤승모는 연대하여 금 470,000,000원, 피고 이도성은 금 2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피고 안병훈, 피고 강친석, 피고 최준석은 연대하여 금 3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 한다), 피고 한남규, 피고 최철주, 피고 최훈은 연대하여 금 3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피고 문화

일보'라 한다), 피고 김호준, 피고 최희조는 연대하여 금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 피고 배기철, 피고 신상석, 피고 이태희는 연대하여 금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이하 '피고 매일경제신문사'라 한다), 피고 장대환, 피고 김진수, 피고 장덕수는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 한다), 피고 손병우, 피고 구월환은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 한다), 피고 이남기, 피고 주영진은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 자유민주연합, 피고 유운영은 연대하여 금 370,000,000원, 피고 한나라당, 피고 권철현, 피고 장관근은 연대하여 금 3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3.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62급 테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2회 게재하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62급 테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2회 게재하고, 피고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중앙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62급 테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4 기재 정

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2회 게재하고, 피고 문화일보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문화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고, 피고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국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6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고, 피고 매일경제신문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매일경제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7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고, 피고 세계일보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세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8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고, 피고 에스비에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날의 오전 8시 뉴스, 오후 8시 뉴스의 각 첫 번째에 별지9 기재 정정보도와 같은 정정방송을 각 하고, 피고 자유민주연합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할 때 별지10 기재와 같은 정정성명을 발표하고, 피고 한나라당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할 때 별지11 기재와 같은 정정설명을 발표하되, 위 각 피고들이 위 각 기간 안에 위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익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급 1,000,000원의 비율로 셈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2. 28. 민주당 산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직을 사임한 사람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2) 피고 동아일보사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이현락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편집인, 피고 최규철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이도성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편집부국장, 피고 김창혁, 피고 운승모는 각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이고,

(3) 피고 조선일보사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안병훈은 피고 조선일보사의 편집인, 피고 강천석은 피고 조선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최준석은 피고 조선일보사의 기자이고,

(4) 피고 중앙일보사는 일간지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한남규는 피고 중앙일보사의 편집인, 피고 최철주는 피고 중앙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최훈은 피고 중앙일보사의 기자이고,

(5) 피고 문화일보는 일간지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김호준은 피고 문화일보의 편집인, 피고 최희조는 피고 문화일보의 편집국장이고,

(6) 피고 한국일보사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배기철은 피고 한국일보사의 편집인, 피고 신상석은 피고 한국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이태희는 피고 한국일보사의 기자이고,

(7) 피고 매일경제신문사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을 발행하는 회사, 피고 장대환은 피고 매일경제신문사의 편집인, 피고 김진수는

피고 매일경제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장덕수는 피고 매일경제신문사의 기자이고.

(8) 피고 세계일보는 일간지 '세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손병우는 피고 세계일보의 편집인. 피고 구월환은 피고 세계일보의 편집국장이고.

(9) 피고 에스비에스는 'SBS 8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회사. 피고 이남기는 피고 에스비에스의 보도본부장. 피고 주영진은 피고 에스비에스의 기자이고.

(10) 피고 자유민주연합은 정당. 피고 유운영은 피고 자유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이고.

(11) 피고 한나라당은 정당. 피고 권철현은 피고 한나라당의 대변인. 피고 장관근은 피고 한나라당의 부대변인이다.

나. 원고의 발언 경위

(1) 원고는 민주당 산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2001. 2. 27.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국회의원 연구모임인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그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제를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발제에 앞서 발제문을 미리 배포하였는 바, 그 중 '6.25전쟁 및 칼(KAL)기 폭과 관련 사과 요구 논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 위원장 답방시 6.25 침략전쟁 및 KAL기 폭과 관련 '사과 요구' 논란

○ 침략전쟁, 하이재킹(여객기 납치), 테러 등은 '사과'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임

-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게다가 여객기테러 같은 국제범죄 문제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임(가령 동서독 국경총격사건)

○ "여객기테러"와 같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 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임

- 그야말로 국제법적 무지의 표현임

○ 위 문제는 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법적 추궁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됨

(3) 한편 원고가 실제로 발제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은 위 발제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 원고의 발언에 대한 기사 보도 및 성명 발표

(1) 피고 김창혁은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1'이라 한다)를, 피고 윤승모는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2'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를 2001. 2. 28.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 동아일보사는 2001. 2. 28.자 동아일보에 별지 12 기사목록의 사설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사설 3'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2) 피고 최준석은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4'라 한다)를, 소외 홍석준, 신정록은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5'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이를 2001. 2. 28.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1. 2. 28.자 조선일보에 별지 12 기사목록의 사설 6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사설 6'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3) 피고 최훈은 '6.25. KAL기 폭파 사과 김정일에 요구할 일 아니다'라는 제목의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7'이라 한다)와 '국민 정서 무시 여야 발각'이라는 제목의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8'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중앙일보는 이를 2001. 2. 28.자 중앙일보에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 중앙일보는 2001. 2. 28.자 조선일보에 별지 12 기사목록의 사설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사설 9'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4) 피고 문화일보는 2001. 2. 28.자 문화일보에 별지 12 기사목록의 사설 10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사설 10'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5) 소외 김성호는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11'이라 한다)를, 피고 이태희는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12'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한국일보는 이를 2001. 2. 28.자 한국일보에 게재하였다.

(6) 피고 장덕수는 별지 12 기사목록의 기사 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기사 13'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매일경제신문사는 이를 2001. 2. 28.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였다.

(7) 피고 세계일보는 2001. 3. 1.자 세계일보에 별지 12 기사목록의 사설 14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하 '사설 14'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8) 피고 에스비에스는 2001. 2. 27. 2회에 걸쳐 별지 12 기사목록의 방송 15, 16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영(이하 '방송 15, 16'이라 한다)하였다.

(9) 피고 자유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인 피고 유운영은 2001. 2. 27. 별지 12 기사목록의 성명 17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성명(이하 '성명 17'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10) 피고 한나라당의 수석부대변인인 피고 장광근은 2001. 2. 27. 별지 12 기사목록의 성명 18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성명 18'이라 한다)으로, 피고 한나라당의 부대변인인 피고 권철현은 2001. 2. 28. 별지 12 기사목록의 성명 19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성명 19'라 한다)으로, 위 피고 장광근은 2001. 3. 1. 별지 12 기사목록의 성명 20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성명 20'이라 한다)으로 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4호증의 기재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발언은 6. 25. 전쟁 및 칼(KAL)기 폭파 사건에 관하여 김정일을 면책하자거나 김정일로부터 사과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쟁범죄나 여객기 테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는 단순히 사과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 공소시효도 없고 소추국가의 제한도 없으며 사면도 불가능한 점에서 더욱 그 책임이 무거운 국제법을 적용하여 준엄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다만 김정일은 6. 25. 전쟁에 관하여는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유아(8세)여서 국제법상 전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고, 칼(KAL)기 폭파에 관하여는 그가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므로, 현재는 김정일

답방 성사를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덮어두었다가 때가 되면(남북 통일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국제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시점에서 김정일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김정일이 북한을 대표하여 사과를 할 필요가 없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고, 그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 기사 1, 4, 7 및 방송 15, 16은 해당 피고들이 각 기사의 제목을 부적절하게 붙이거나, 발제문 중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사과보다 책임이 엄중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거나 곤란하다'는 원고의 견해를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할 일이 아니다. 사과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2) 가) 기사 2, 11, 13 중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김정일은 6. 25. 전쟁에 관하여는 당시 나이와 주동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제법상 전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칼(KAL)기 폭파에 관하여는 김정일이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시점에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을 마치 '김정일은 아무 책임이 없으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나) 기사 2는 원고와 여권이 사전에 교감이 있어 정략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쓰여 있고 또한 '황교수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

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여 원고의 발언내용을 배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다) 기사 11, 13 중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본문 및 제목 부분에 대하여 '사과보다 책임이 엄중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현재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거나 곤란하다'는 원고의 견해를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3) 사실 3, 6, 9, 10, 14는 각 사실 중 전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김 위원장은 6. 25. 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김정일에 대한 6. 25. 칼(KAL)기 사과요구 안 된다'는 부분은 원고의 진의를 왜곡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4) 기사 5는 학계의 전문가들의 논평이라는 글로, 원고가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5) 기사 8은 '6. 25.전쟁과 칼(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소개하여, 원고의 발언취지는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사과 등의 책임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정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6) 기사 12는 원고의 입장이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제목을 사용하여 원고가 정략적인 의미에서 여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 발언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한나라당의 비판인

.....

‘김정일 답방에만 집착 반민족범죄 왜곡하나’라는 소제목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원고의 발언이 반민족적 행위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7) 성명 17 중 ‘김정일 위원장이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부분 및 성명 18 중 ‘과거의 민족범죄행위에 대해 책임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부분은 원고의 진의를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아가 성명 17 중 ‘북한의 김일성대학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인지 그 정체와 그 ‘망언의 저의’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하는 부분 및 성명 18, 19, 20 중 ‘망언’, ‘헛소리를 지껄이고’, ‘칼(KAL)기 폭파사건은 전 정권의 조작의혹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6. 25.는 북침이요, 칼(KAL)기 폭파사건은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북한에 나라를 바칠 자세 아닌가’, ‘학문장사꾼’, ‘대남비밀홍보요원들이나 할 소리가 아닌가’ 부분은 원고를 매도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 발언의 진의

원고는 위 각 기사, 방송 및 성명이 위와 같이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원고 발언의 진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발언의 진의 파악의 기준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2. 27.에 있었던 위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며 발언함에 있어 발제문을 거의 그대로 읽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

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발언의 진의는 발제문 상의 문언에 의하여만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발제문의 해석

발제문의 내용은 1. 나.(2)항과 같은 바, 그 내용이 매우 짧고 압축되어 있어 그 해석이 다의적일 수 있으나, 그 문언의 진의가 원고 주장과 같은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는 ‘침략전쟁, 하이재킹(여객기납치), 테러 등은 사과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임’, ‘게다가 여객기테러 같은 국제범죄 문체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임’, ‘여객기테러와 같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 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황당한 주장임’ 등의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침략전쟁과 테러에 대하여는 사과를 요구할 수 없거나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특히 위 중 마지막 문장은 사과와 죄책의 추궁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을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는 김정일의 답방을 앞두고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답방 전에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인가 여부가 정치권 및 사회 전반의 관심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그 내용 중 김정일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것이고 김정일의 국제법적 책임에 관한 것은 사과의 여부를 설명하는 근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갑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론회에서 김정일의 6. 25.전쟁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 25.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그 아버지 세대들이 책임자들이죠.'라고 발언한 사실, 발제문 상의 문언도 '김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 25.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라고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는 결국 김정일의 6. 25.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점, ④ 나아가 갑 6호증의 2의 기재 중 '황교수 파문뒤 전화회견'이라는 기사에서 원고는 '(6. 25. 전쟁)당시 김 위원장이 나이가 어려서 사과요구는 물론 차후에라도 전범소추는 불가능하다는 법적 개념을 얘기한 것이다',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김 현희의 자백은 불적 증거가 안된다. 김 위원장의 지시명령서나 암호문 해독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일 위원장과 그 지도부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 즉 법적 미결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발언의 진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오히려 발제문의 문언에 위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발제문의 의미는, 김정일은 ①6. 25.전쟁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②칼(KAL)기 폭파사건에 관하여도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고 조사할 수 없으므로 후에 가능한 시기가 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과의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각 기사, 방송 및 성명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발언 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각 기사, 방송 및 성명을 분류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사과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만이 포함되었는

지, 6. 25.전쟁에 관한 책임론만이 포함되었는지, 6. 25.전쟁 및 칼(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책임론 양자가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그 주장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가) 기사 1, 4, 7 및 방송 15, 16에 관하여

원고 발언의 진의가 원고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양자가 같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사 1, 4, 7 및 방송 15, 16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사 4, 7 및 방송 16 중에는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원고의 발제문의 문장만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 기사 1에는 '6. 25.전쟁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아시절 발발한 전쟁인 만큼 김 위원장은 전쟁에 책임이 없고, 따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방송 15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유아 시절 발발한 6. 25.전쟁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서울 답방에 앞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외에는 모두 발제문의 문구만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사 4, 7 및 방송 16이 왜곡이 아님은 분명하고, 기사 1 및 방송 15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김정일이 6. 25.전쟁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왜곡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사 2, 11, 13에 관하여

1) 먼저 기사 2, 11, 13 중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김정일은 6. 25.전쟁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도 김정일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 25.전쟁에 관하여 김정일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칼(KAL)기 폭파사건을 같이 언급한 사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김정일에게 차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기사부분은 원고 발제문과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견해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기사 2 중 원고의 발언이 정략적이라거나 시기적이나 국민정서 등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기사는 전제사실에 대한 의견, 논평 내지는 의견제기라 할 것인데 전제사실이 원고의 발언 취지와 부합하는 이상 그에 대한 의견이나 논평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기사 11, 13 중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본문 및 제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1,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사 11에는 '6. 25.전쟁 및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김정일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고, 기사 13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사과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기사 11, 13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의 발제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사 11에 대하여는 6.

25.전쟁 및 칼(KAL)기 폭파사건에 대하여 김정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원고의 발언 취지와 같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기사 13에 대하여는 양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발제문의 내용이므로,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 3, 6, 9, 10, 14에 관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1)항 및 (2)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기사 5에 관하여

갑 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 조선일보사 또는 그 소속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기사의 제목처럼 전문가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가지고 피고 조선일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조선일보사가 원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하였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 왜곡된 발언에 대한 반응이어서 피고 조선일보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 기사가 원고 발언 관련 기사가 각종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과 같은 날인 2001. 2. 27.에 게재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기사 8에 관하여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때...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현시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

(6) 기사 12에 관하여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제목이란 "여입장 대변"을 지칭하는 듯한데 이는 원고의 발언이 여권의 입

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나타낸 것인 사실(이에 대칭되는 제목인 “황교수 사건”은 민주당의 주장을 나타낸 것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비판인 ‘김정일 답방에만 집착 반민족범죄 왜곡하나’ 라는 소재목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인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야보다 더 강경한 것’이라는 소재목도 함께 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7) 성명 17, 18, 19, 20에 관하여

(가) 성명 17의 ‘김정일 위원장이 6. 25.전쟁과 칼(KAL)기 폭파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부분 및 성명 18의 ‘과거의 민족범죄행위에 대해 책임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1)항 및 (2)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성명 17의 ‘북한의 김일성대학교수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대변인’인지 그 정체와 그 ‘망언의 저의’를 국민앞에 밝힐 것을 촉구하는 부분 및 성명 18, 19, 20의 ‘망언’, ‘헛소리를 지껄이고’, ‘칼(KAL)기 폭파사건은 전 정권의 조작의혹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6. 25.는 북침이요, 칼(KAL)기 폭파사건은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북한에 나라를 바칠 자세 아닌가’, ‘학문장사꾼’, ‘대남비밀홍보요원들이나 할 소리가 아닌가’ 라는 부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북한에 나라를 바칠 자세 아닌가’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총체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제외한다). 이는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피고 자유민주연합, 유운영, 한나라당, 권철현, 장광근이 각 그 논평을 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언사를 사용한 것일 뿐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 유운영, 권철현, 장광근의 발언은 김정일의 답방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공공성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원고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논평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24.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 1〉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
2. 이 현 락
 3. 최 규 철
 4. 이 도 성
 5. 김 창 혁
 6. 윤 승 모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7.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8. 안 병 훈
 9. 강 천 석
 10. 최 준 석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1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홍 석 현, 송 필 호, 이 제 훈
 12. 한 남 규
 13. 최 철 주
 14. 최 훈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순화동 7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 재 두
 15. 주식회사 문화일보
대표이사 김 진 현, 이 영 일
 16. 김 호 준
 17. 최 희 조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 우
담당변호사 김 승 렬
 18.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김 영 열
 19. 배 기 철
 20. 신 상 석
 21. 이 태 회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인 철
 22.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장 대 환
 23. 장 대 환
 24. 김 진 수
 25. 장 덕 수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필동1가 30의 1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26. 주식회사 세계일보
대표이사 송 병 준
지 배 인 설 용 수
 27. 손 병 우
 28. 구 월 환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1
 29.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윤 세 영, 송 도 균
 30. 이 남 기
 31. 주 영 진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의 2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 성 규, 조 승 우
 32. 자유민주연합
대표자 총재 이 한 동,
총재권한대행 김 종 호
 33. 유 운 영
위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103의 4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훈
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성 민
 34. 한나라당

대표자 총재 이 회 창
35. 권 철 현
36. 장 광 근
위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의 7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홍 렬

이하 별지 생략



원고 아들의 병역문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그 가족의 병역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12.자 판결(2001가합48939)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2년 7월 12일 전 법무부장관 안동수 씨가 동아일보사와 중앙일보사, 연합뉴스 및 그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작성·게재되기 직전에 법무부장관직에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던 자로서, 원고 아들의 병역문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그 가족의 병역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원고의 아들인 안○○이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고, 그에 앞서 안○○의 병역면제청탁 명목

으로 병무청 직원과 신체등위판정 담당 군의관이 금품을 수수한 점, 그 금품제공자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및 그밖에 피고들의 취재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직접 간접으로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나 안○○에게 실제로 병역면제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사 등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의 아들인 안○○에게 병역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를 통하여 병역문제를 받았고, 실제로 원고 및 그의 처가 병역면제청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원
건 : 2001가합48939 손해배상(기)
고 : 안 동 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이 경 택),
변호사 엄 도 회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2. 최 규 철
3. 윤 승 모
4. 신 석 호
5. 이 명 건
피고 1 내지 5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피고 1 내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6.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 홍 석 현, 송 필 호,
이 재 훈
7. 최 철 주
8. 정 용 환
피고 6 내지 8
주소 서울 중구 순화동 7
피고 6 내지 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 종 현, 최 세 련,
김 창 준, 이 춘 원, 김 인 회,
문 광 명
9.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표이사 김 근
10. 권 혁 창
피고 9, 10.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피고 9, 1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 지 학, 김 선 호
11. 차 봉 현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변 론 종 결 : 2002. 6. 14. (피고 1 내지 10에
대하여)
2002. 6. 28. (피고 11에 대하여)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
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 주식회
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사라고 한
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피고 연합뉴스라
고 한다)는 각 금 100,000,000원, 피고 최규철, 윤
승모, 신석호, 이명건, 최철주, 정용환, 권혁창,
차봉현은 각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일 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각 제1면 우측하
단에 가로 30cm, 세로 7단의 크기로 각 '사과
및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5호 활자로 그
아래에 '안 전 법무장관 아들 불법으로 병역
면제 받은 사실 없어'라는 소제목을 각 20급 명
조체 굵은 활자로, 그 아래에 피고 아일보사는
별지 1 사과문 기재내용을, 피고 중앙일보사는
별지 2 사과문 기재내용을 각 10급 명조체 활자
(본문활자크기)로 각 1회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1. 5. 21.자로 법무부장관직에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23. 사임한 자이다.

(2) 피고 동아일보사는 일간신문 '동아일보'
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최규철은 피고 동
아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윤승모, 신석호,
이명건은 각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이고,

(3) 피고 중앙일보사는 일간신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최철주는 피고 중앙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정용환은 피고 중앙일보사의 기자이며,

(4) 피고 연합뉴스는 일간 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권혁창, 차봉현은 아래 기사 게재 당시 피고 연합뉴스의 기자로 있던 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1) 피고 윤승모, 신석호는 "안동수 전 법무 아들 병역비리 연루혐의, 대통령에 보고 목살 의혹"라는 제목 아래 별지 3 기사목록의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피고 윤승모, 이명건은 "안동수 씨 아들 군의관청탁 보충역 연루 병무청 직원 1심서 유죄판결 청와대 인선 전 몰랐나"라는 제목 아래 별지 3 기사목록의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피고 신석호, 이명건은 "안동수 전 법무 아들 검찰 병역비리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3 기사목록의 제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한다)를, 피고 윤승모는 "인사 시스템 치명적 결함 안씨 아들 병역비리 혐의 파문"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3 기사목록의 제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4 기사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는 피고 최규철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제1, 4 기사를 2001. 5. 26.자, 제2 기사를 같은 달 28.자, 제3 기사를 같은 달 29.자 동아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2) 피고 정용환은 "안 전 법무 아들 병역 문제 검찰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 아래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5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 바, 피고 중앙일보사는 피고 최철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

를 2001. 5. 29.자 중앙일보 31면에 게재하였다.

(3) 피고 권혁창, 차봉현은 별지 "안 전 법무, 병역비리연루 혐의"라는 제목 아래 별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6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 바, 피고 연합뉴스는 2001. 5. 25. 이를 인터넷상의 한미르(HanMir) 뉴스센터 및 에스비에스(SBS) 뉴스넷에 각 게재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기사는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전제한 다음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 면제는 부인 이모 씨(54)가 나서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제2 기사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안 전 장관 아들(26)의 징병 신체검사와 관련해 제3자가 병무청 직원을 통해 군의관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제3 기사는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95년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안 전 장관의 아들을 병역면제시킨 사실이 ... 공식 확인됐다"는 내용을, 제4 기사는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을, 제5 기사는 "충성 문건 파동으로 자진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안장관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 ", "안 전 장관의 변호사 사무장 서모 씨가 ... 병무청 직원 김씨에게 5백만원을 주

.....

었다. ... 검찰은 이 무렵 안 전 장관의 부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변호사 사무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부인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을. 제6 기사는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한 다음 "안 전 장관 아들의 병역 면제는 부인 이모(54) 씨가 나서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라는 내용을 각 적시하였는 바, 위 각 기사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원고의 아들이 병역면제처분을 받음에 있어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독자들에게 원고의 아들이 병무청 직원 등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방식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이러한 병역비리에 원고나 원고의 처, 아들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혐의를 거쳐 신문 등에 게재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물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피고 차봉현은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작성 게재되기 직전에 법무부장관직에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던 자로서, 원고 아들의 병역 문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그 가족의 병역문제 등과 같은 문제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들도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 안○○은 1995. 6. 26. 병역 신체검사에서 근시를 이유로 3급, 수핵탈출증(소위 디스크)을 이유로 7급, 비염을 이유로 2급 판정을 받았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9. 28. 재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현역은 물론 보충역(공익근무요원)복무도 부적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다.

(나) 서울지방병무청 제1정병검사장 외과담당 군의관으로서 신체검사 등급판정을 담당하던 소외 허성초는 1995. 9. 28. 같은 병무청 직원 소외 김종기로부터 원고의 아들 안병진에 대한 병역면제청탁을 받으면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안○○의 신체등위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급으로 판정하였는데, 위

김종기는 당시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민주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던 소의 서동현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수하여 위와 같이 위 허성초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0. 12.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의 유죄 인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다만 형이 감경되었다)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수사 진행 당시 원고의 처 소의 이귀자도 이와 관련하여 위 서동현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받았으나, 위 이귀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서동현이 1997.경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내사종결되었다.

(라) 피고 연합뉴스의 기자인 피고 권혁창, 차봉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취재하여 2001. 5. 2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사가 게재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2001. 5. 28. 오전 피고 정용환을 포함한 범조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 안○○의 병역면제사실과 그와 관련하여 소의 김종기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같은 날 오후 서울지방검찰청 범조기자실에 위 김종기의 형사판결문이 배포되었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1호증의 1, 2, 8호증,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원고의 아들 위 안○○이 병역면제를 받았고, 그와 같이 병역면제를 받음에 있어 병무청 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원고와 직무상 관련을 맺고 있던 위 서동현이 병무청 직원인 김종기에게 안○○의 병역면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그 금원 중 일부가 병역 신체검사에

서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교부되었으며, 그 후 위 안○○이 현역 및 보충역 의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 2, 4 기사에서 위 서동현을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으로 보도하고 이 사건 제 1, 5 기사에서 원고 아들의 병역 문제가 박노항 원사 사건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아들인 위 안○○에게는 병역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품수수를 통하여 병역면제를 받았고, 실제로 원고 및 그의 처가 위 병역면제청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그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실제로 원고 및 그의 처가 그와 같이 원고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0호증,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병무청이 위와 같이 당초 병역처분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7. 12. 위 안○○에 대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안○○이 서울행정법원 2000구 23798호로 제기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같은 법원은 2001. 7. 18. 담당 군의관이 안○○의 신체등위판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위 판정 당시 안○○의 질병 심신장애정도에 비추어 보아 병역면제사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당초의 병역처분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의 기사에 대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아들인 위 안○○이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고, 그에 앞서 안○○의 병역면제청탁 명목으로 병무청 직원과 신체등위판정 담당 군의관이 금품을 수수한 점, 그 금품제공자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들의 취재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직접 간접으로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나 안병진에게 실제로 병역면제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작성 및 게재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2.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 1 사과문

사과 및 정정보도문

안동수 전 법무장관 아들 불법으로 병역 면제받은 사실 없어

동아일보사는 2001. 5. 26. "안동수 전 법무 아들 병역비리 연루 혐의 대통령에게 보고 목살 의혹", 또는 "안동수 전 법무 아들 검찰 병역비리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의 아들이 병역비리 연루로 병역면제처분의 대상이 아닌데도 부정하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면서, " ... 안 전 장관의 아들이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 또는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95년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안 전 장관의 아들을 병역면제시킨 사실이 병역비리 수사팀과 돈을 받은 병무청 직원의 판결문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 ", "인사시스템 치명적 결함", "안씨 아들 병역비리 혐의 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아들은 불법으로 병역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1993. 1. 15.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심한 척추 수핵탈출증을 수술받았는데, 그 당시 이 수술을 받은 경우는 모두 병역면제가 되는 병역법 규정(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 254. 가. ①항)에 따라, 안 전 장관의 아들도 적법하게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아일보사는 안동수 전 법

무장관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며, 법원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 2 사과문

사과 및 정정보도문

안동수 전 법무장관 아들 불법으로 병역면제받은 사실 없어

중앙일보는 2001. 5. 29. "안 전 법무 아들 병역문제 검찰 알고 있었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충성문건 과동으로 자진 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안장관 아들이 불법으로 병역면제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아 장관을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아들은 불법으로 병역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1993. 1. 15.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심한 척추 수핵탈출증을 수술받았는데, 그 당시 이 수술을 받은 경우는 모두 병역면제가 되는 병역법 규정(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254. 가. ①항)에 따라, 안 전 장관의 아들도 적법하게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앙일보사는 안동수 전 법무장관에게 허위보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며, 법원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이하 별지 기사 생략〉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8. 30.자 판결(2001가합5233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2002년 8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외 3인이 조선일보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는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결국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에서 표현된 내용은 당시 언론사 세부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여론 중 한 쪽의 입장으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원고들은 일정한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위 등을 계속하여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면도 있는 점 및 나아가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가 2001년 7월 27일자 제5면에 『야,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하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과 방송 등 친여 매체와 공모 또는 배후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며 언론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한나라당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8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86.

287)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5233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대표자 공동대표 성 유 보,
이 경 숙, 이 범 수, 최 병 모
2.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의 12
삼공빌딩 3층
대표자 이사 성 유 보
3.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
부모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56
기독교연합회관 508호
대표자 이사 윤 지 희
4.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3-12
삼공빌딩 3층
대표자 김 동 민, 문 규 현,
오 종 렬, 홍 근 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1.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의 7
대표자 총재 이회창
2. 박관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의 7
한나라당 내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2. 7. 19.

판 결 선 고 : 2002. 8. 30.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들에게, 피고 한나라당, 박관
용은 연대하여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
보사는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27.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 8.경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40여 개의 시민
단체 등이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
안을 제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이고,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
합은 1984. 12.경 시민활동을 통하여 한국언론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989. 9.경 교육의 인간화 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는 2000. 9.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
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에 반대하
는 사람 및 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이다.

(2) 피고 한나라당은 정당이고, 피고 박관용
은 피고 한나라당의 당원이며, 피고 조선일보
사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 보도

(1)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피고 한나라당의 언론자유수호비상대
책특별위원회 및 언론말살국조준비특별위원
회 위원장이었던 피고 박관용은 2001. 7. 26.
피고 한나라당 당사에서 '검찰, 친여매체, 외
곽단체는 한 통속인가?' 라는 제하로 기자회견
(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
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낭독하였고, 피고 한나라당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에 위 보도자
료를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기사 보도

한편 피고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기자회견
을 토대로 2001. 7. 27.자 조선일보 제5면에 '야,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
다)를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판단기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인
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
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외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
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
는 정당의 기자회견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
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

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는 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경우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자를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회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각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 단체들은 현 정권과 방송 등 친여매체와 공모하여 또는 배후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방송들은 위 단체들이 시위를 할 때마다 이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여야 할 원고들의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피고 한나라당 및 피고 박관용과 이 사건 기사를 게재, 보도한 피고 조선일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의 적시와 논평이 혼재된 것인데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나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대통령은 2001. 1. 실시된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국세청은 2001. 2.경부터 국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또는 포탈된 세금을 추징하였고, 2001. 6.경에는 피고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6개 언론사 및 그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 이후 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다.

(2) 한편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조세청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7년간 하지 않던 세무조사를 갑자기 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예컨대 원고들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국세청의 위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지지하였고, 반면에 세금을 추징당하고 회사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 및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위와 같은 세금추징과 검찰고발에 언론탄압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였다.

(3)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2001. 7.경부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찬성하며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 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피고 한나라당 및 일부 언론들이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

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위 세무조사에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였는데, 2001. 7. 9.부터 같은달 30.까지 케이비에스(KBS), 엠비씨(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성명발표 및 시위 사실과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 등을 보도하였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시위를 벌인 단체 중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및 원고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여단체이다. 한편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이들 단체는 2001. 7.경 이미 지급 받은 당해년도분 보조금을 반납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2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나. 공익성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이 위와 같이 양분되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시점에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을 한 것이고, 각종 공공의 사안들에 미치는 시민운동의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로부터 마땅히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는 시민단체들의 비독립성에 관한 문제점 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 피고 한나라당이 평소에 이 사건 기자회견과 같은 당론을 취하고 있었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법인 자신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일반적 판단기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는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결국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함께 살핀다.

(가) 이 사건 기자회견의 제목 '검찰, 친여매체, 외곽단체는 한통속인가?' 부분

이는 본문을 전제사실로 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별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진실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이하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

하는 부분은 모두 같다).

(나) 이 사건 기자회견 중 '검찰과 친여매체, 그리고 외곽 단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언론장악문건대로, 검찰이 홀리고 방송이 불어주고 외곽단체가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건씩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국민여론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몰이 방식이 치졸해서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위에도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분

이 중 앞의 세 문장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하에서 적시되는 사실을 그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네 번째 문장 중 '여론몰이 방식이 치졸해서' 부분은 나머지 문장 부분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네 번째 문장 중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위에도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 중 '한나라당은 지난 7월 9일부터 검찰의 신문사주 본격 소환 홀리기 보도와 함께 이뤄졌던 외곽단체의 언론사 세무조사 옹호 시위의 보도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부분

이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기자회견 중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주장을 방송들이 1일 1건씩으로 메인뉴스를 비롯한 뉴스시간을 통해 이를 확대 보도를 하면서

한통속이 되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 했다' 부분(이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중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각각 1일 1건씩 확대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 부분과 전체적으로 같다)

이중 '한통속',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 했다'(혹은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 부분은 나머지 문장 부분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할 것이다(이중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 했다'(혹은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는 부분은 묵시적으로 언론사 세부조사 이후의 일련의 사태를 누군가 배후에서 지시 내지는 조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기자회견 중 '또한 일부시민단체나 노조 등이 언론개혁 관련 성명이나 시위, 주장을 통해 특정매체를 공격하고 방송들이 앞장서 매일 이를 보도함으로써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음도 입증됐다' 부분

이중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음도 입증됐다' 부분은 나머지 문장 부분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이 부분은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바) 이 사건 기자회견 중 '언론탄압 교본 즉 언론장악문건대로 검찰은 비판언론의 사주

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친여 방송매체들은 이를 확대 보도하고 외곽단체들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국민여론을 등에 업는 형식을 빌리는 등 언론문건의 내용과 완전 일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사) 이 사건 기자회견 중 '검찰 고발 후 매일 단체별로 돌아가며 하는 "언론개혁" 지지시위는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정의혹이 짙다. 매일 다른 단체가 시위를 하지만 모체는 같다고 판단된다. 7월 24일 시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운영위원)이며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다. 7월 18일 시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다. 11일 시위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산하이며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운영위원)이다. 방송은 이들 단체가 시위할 때마다 여과없이 보도하여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 부분(이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중 '국세청이 언론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 시위를 벌이는 것도...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 부분과 전체적으로 같다)

이중 '검찰 고발 후 매일 단체별로 돌아가며 하는 "언론개혁" 지지시위는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정의혹이 짙다' 는 부분은 위 (라)항과 같고, 마지막 문장 중 '...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 할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아) 이 사건 기자회견 중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대표중 14개 단체들이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원금액이 8억 6천만이고 그 외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언련(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이들 단체는 7월초 금년도 지원금을 반납했으나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이 부분은 이 사건 기사 중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 사전 정지작업 같다' 부분과 전체적으로 같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피고 조선포는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 주장하나, 이 부분도 묵시적으로 전제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자) 이 사건 기자회견 중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 친여매체, 일부 외곽단체들이 홍위병식으로 동원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부 여당의 비열한 비판 언론말살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부분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 친여매체, 일부 외곽단체들이 홍위병식으로 동원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한 음모' 부분은 앞서 본 구체적 사실들을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차) 이 사건 기사 중 '검찰과 친여(親與)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 부분

이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제목과 마지막 문장 중 일부씩을 발췌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의견 또는 논평이라 할 것이다.

(카) 이 사건 기사 중 '언론말살국조준비특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야당의원들의 국정심의를 위한 조사활동을 '탈법적' 행위로 모는 김종권(金重權) 민주당 대표의 상식 이하의 망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부분

이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가)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

결국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의 요지는, '① 배후의 지시 또는 조종에 따라 언론장악문건대로, 검찰은 신문사 사주(社主)의 비리를 캐는 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발표나 시위를 하며, 방송들은 매일 이를 보도함으로써 언론탄압을 하고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고, ② 원고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매일 다른 단체가 시위를 하지만 모체는 같다고 판단되는 바, 2001. 7. 24에 시위한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같은달 23에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같은달 10에 시위한 원고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운영위원)이며, 한편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대표 중 14개 단체들이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보조금 860,000,000원을 받았고 그 외 다른 부처로부터도 상당 부분 지원받고 있는데,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원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역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이들 단체는 2001. 7.초 당해년도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를 전제사실로 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① 부분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2001. 6.이후로 언론사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2001. 7.경부터 잇달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발표나 시위 등을 함과 아울러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1. 7. 9.부터 같은달 30.까지 케이비에스(KBS), 엠비씨(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사항을 보도하는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시위 및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①과 같이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를 캐는 데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고', 검찰, 시민단체, 방송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배후의 지시 또는 조종에 따라 언론장악분건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언론탄압을 하거나 특정신문을 죽이는 데에 공조'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의 판단기준의 관점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찰이 언론사에 대한 탈세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그 부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언론사주의 탈세를 규탄하는 취지의 성명발표나 시위 등을 함과 아울러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 방송 3사의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을 보도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검찰과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언론탄압을 위하여 공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바(정당법 제2조), 이러한 정당의 존립목적 및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치적 사항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봉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의혹 제기 이전에 전제사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인 점, 정당의 기자회견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혹제기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많은 점, 의혹 제기는 시의성이 있어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사실상 불가능하여지는 점,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에서 표현된 내용은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여론 중 한 쪽의 입장으로서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위 등을 계속하여 정치적인 평을 자초한 면도 있는 점 및 나아가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배후에서 지시 내지는 조종하고 있다'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제사실에 대한 논평 내지 의혹의 표현이라 볼 여지가 많고, '언론탄압 및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다' 부분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특히 피고 조선일보사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방송사들은 유독 피고 조선일보사에 부정적인 뉴스(조선일보 반대운동 등)들을 집중적으로 방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② 부분

이 부분 중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과 일치하므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 증의 3의 기재, 증인 최정심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1. 5. 12. 보조금이 당초 신청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단체 내부사정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사단

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001. 7. 4.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단체의 전 역량을 신문개혁활동에 집중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보조금 반납신청을 한 사실, 위 원고들은 2001. 이전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한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사실, 위 원고들은 2002.에는 다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의 보조금 반납이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의 판단기준의 관점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 반납 시기가 위 원고들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지하고 언론사주의 탈세를 규탄하는 성명발표나 시위 등을 함과 아울러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전개한 시기와 거의 같은 점 및 위 원고들은 2001. 이전 및 이후에는 한 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독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1.에만 보조금을 반납한 점에 비추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위 원고들의 보조금 반납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에 위 1)항에서 본 이유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부분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전체 내용 중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의견 또는 논평의 전체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1. 보도자료

[보도자료] 검찰, 친여매체, 외곽단체는 한 통속인가?

검찰과 친여매체, 그리고 외곽 단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언론장악문건대로, 검찰이 홀리고 방송이 불어주고 외곽단체가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건씩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국민여론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몰이 방식이 치졸해서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 다시 다른시위에도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9일부터 검찰의 신문사주 본격 소환 홀리기 보

도와 함께 이뤄졌던 외곽단체의 언론사 세부 조사 옹호 시위의 보도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아 래 -

1.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 노조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주장을 방송들이 1일 1건씩으로 메인뉴스를 비롯한 뉴스시간을 통해 이를 확대 보도를 하면서 한 통속이 되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심증을 갖게했다.

2. 또한 일부시민단체나 노조 등이 언론개혁 관련 성명이나 시위, 주장을 통해 특정매체를 공격하고 방송들이 앞장서 매일 이를 보도함으로써 특정신문을 죽이는데 공조하고 있음도 입증됐다.

3. 언론탄압 교본 즉 언론장악문건대로 검찰은 비판언론의 사주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친여 방송매체들은 이를 확대 보도하고 외곽단체들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형식을 빌리는 등 언론문건의 내용과 완전일치돼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 ① 검찰 고발 후 매일 단체별로 돌아가며 하는 "언론개혁" 지지시위는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정의혹이 짙다.

② 매일 다른 단체가 시위를 하지만 모체는 같다고 판단된다.

- 7월 24일 시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운영위원)이며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다

- 7월 18일 시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다

- 11일 시위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

혁시민연대(언개련)산하이며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운영 위원)이다.

- 방송은 이들 단체가 시위할 때마다 여과 없이 보도하여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

③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대표 중 14개 단체들이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원금액이 8억 6천만 이고 그 외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이들 단체는 7월초 금년도 지원금을 반납했으나 이마저도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당은 이 같은 검찰, 친여매체, 일부 외곽단체들이 흥위 병식으로 동원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부 여당의 비열한 비판 언론말살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2001. 7. 26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대특별위원회

언론말살국조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관용) 끝.

2. 기사

검찰수사 사주 죽이기 초점...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야, 언론죽이기 비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와 언론말살국정조사준비특

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친여(親與)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관용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TV방송 3사의 메인뉴스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각각 1일 1건씩 확대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세청이 언론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 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면서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위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시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3일과 10일 각각 시위를 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18일 시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또 11일 시위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개련 산하이며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은 이들 단체가 시위할 때마다 여과없이 보도하며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올해 행자부로부터만 8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7월 초 이를 반납한 것은 현재의 언론

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말살국조준비특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야당의원들

의 국정심의를 위한 조사활동을 ‘탈법적’ 행위로 보는 김중권(金重權) 민주당 대표의 상식 이하의 망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

판결 4

원고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는 공익에 관한 사안으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2. 6. 14.자 판결(2001가합2947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2년 6월 14일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근 씨가 동아일보사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현준 진승현 사건 모두 금융기관의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이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담당국장인 장○이이 자살하여 금융감독원 고위직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증언에서 정현준이 원고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던 원고가 정현준 사건에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일간신문이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었던 점, 원고가 금융감독원 대변인을 통하여 정현준 사건에 대한 관련설을 해명하면서 2000. 11.경 귀국할 것을 밝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귀국을 미룬다면 오히려 의혹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진승현 사건에 대한 원고의 개입 여부에 관한 의혹이 새로이 제기된 후 귀국을 늦추었던 점, 피고 성기영이 원고가 위 해명 당시 직접 밝힌 전자메일 주소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기 위하여 2000. 12. 중순경부터 원고의 소재를 알 것으로 생각되는 국내외의 주변인물들과 연락을 취했으나 원고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컬럼비아대학에서조차 원고를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및 나아가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사는 주간동아 2001년 1월 18일자 제40면에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잠적』이라는 제하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원고가 정현준 진승현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어, 언론의 취재나 검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잠적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29471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용 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이 호 신, 조 준 완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재호, 김학준
2. 성기영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 론 종 결 : 2002. 5. 3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1.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8. 퇴임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는 주간지 ‘주간동아’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성기영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이다.

나. 기사 보도 전의 정황

(1) 2000. 10.경 한국디지털라인 사장이었던 소외 정현준이 소외 이경자가 부회장으로 있던 동방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소위 정현준 게이트)으로 인하여 위 정현준 등의 공직간부에 대한 로비의혹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후 그와 관련하여 수뢰 의혹을 받고 있던 금융감독원의 담당 국장인 소외 장○○이 자살하는 등 그 배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정현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위 정현준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하였는데, 정현준은 같은 해 11. 6.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증언과정에서 “이경자가 원고 등과 친분을 과시했다”, “이경자 씨로부터 원고를 한국디지털라인 회장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직 퇴임 후인 같은 해 9. 15.자로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의 초청연구원으로 초청받아 이미 같은 해 10. 27.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4) 위 증언 이후 동아일보 등 국내 주요일간신문은 위 정현준의 국정감사 증언내용과 함께 원고의 출국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2000. 11. 8.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는 검찰에서 원고의 출국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날 중앙일보에는 원고의 정현준 사건 로비 연루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각 게재되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하여 '정현준 씨가 원고 부분도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증언했는데도, 원고는 출국했으며, 이는 검찰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출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국내 보도를 접하고 같은 해 11. 8.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을 통하여 원고는 정현준 등과 만난 사실도 없어 정현준 사건의 로비의혹과는 무관하고, 원고의 출국은 이미 퇴임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11월 하순경 일시 귀국할 예정이니 원고의 해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면 원고의 전자메일 주소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같은 달 10. 추가 해명서를 통하여 다시 원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6) 원고는 위 11월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2000. 12. 2.자 문화일보에는 원고가 그 전날인 1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렵 새로이 제기된 진승현의 리젠트증권 추가조작사건(소위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원고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7) 원고의 위와 같은 귀국 연기에 대하여 2000. 12. 1.자 중앙일보는 원고가 귀국여부를 묻는 전자메일이나 전화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정현준 진승현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원고가 귀국하여 이를 해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그 무렵 문화일보, 세계일보도 위 의혹에 대한 해명이 기대되었던 원고의 귀국일정이 연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다. 기사의 보도

피고 성기영은 원고가 위와 같이 귀국을 연기하자 2000. 12. 중순경 원고의 출국경위와 미국에서의 행적을 취재하기로 하여 원고의

소재를 알만한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이를 취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잠적'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는 주간동아 2001. 1. 18.자(제268호) 제40면에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1 내지 24호증, 29호증, 31호증,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초청받은 컬럼비아대학의 관계자 등 원고의 미국 내 소재를 알만한 이들의 진술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원고가 컬럼비아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고 하는 한편, 원고가 정현준 진승현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층 관련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되었던 사실이 있어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잠적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바, 이러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독자들에게 원고가 전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현준 진승현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어, 언론의 취재나 검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잠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성기영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동아일보사는 피고 성기영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물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원고의 정현준 진승현 사건 관련 여부는 금융기관의 불법대출이나 주가조작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위 사건 당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도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주간동아지에 게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성기영은 원고의 출국경위와 미국내 소재에 대하여 취재하기로 하고 먼저 2000. 12. 21. 원고에게 원고가 같은 해 11.경 금융감독원 대변인을 통하여 밝힌 전자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정현준 진승현 사건에 관

한 취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피고 성기영은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행사에서도 원고를 보거나 소식을 들은 바 없고 원고가 뉴욕에 있는 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로부터 원고는 전직 장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소재를 알리지 않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소외 김광수 금융감독원 과장으로부터도 원고의 소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인 소외 최범수 박사는 피고 성기영에게 금융감독위원회 국제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를 통해 원고가 연구원 초청장을 받았으며 미시킨 교수가 세계은행 초청 연구원으로 떠나 교수의 연구실이 바게 되면 원고가 이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성기영은 미시킨 교수가 컬럼비아대학에서의 원고의 소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2000. 12. 28. 위 미시킨 교수에게 주간동아의 기자임을 밝히고 미시킨 교수가 원고를 컬럼비아대학에 초청하였고 원고가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하면서 취재와 관련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으나, 미시킨 교수는 2001. 1. 3. 피고 성기영에게 전자메일로 그러한 정보(원고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원고가 컬럼비아대학에 아직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 바, 피고 성기영은 위 미시킨 교수의 메일을 받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주간동아지가 출판, 배포된 후인 같은 해 2.7. 피고 성기영이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컬럼비아대학의 경영대학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메일에 의하면 위 관계자 역시 위 대학의 다른 관계자인 휴 패트릭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미시킨 교수가 원고를 컬럼비아대학에 소개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교수의 사부실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그 사부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바) 원고 자신도 컬럼비아대학측에 원고의 신병을 비밀로 하여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툴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5내지 28호증,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먼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뉴욕에서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2000. 11.말경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바꿔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피고 성기영이 원고의 소재를 알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접촉한 미시킨 교수 등이 하나같이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중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 이 전 위원장이 컬럼비아대학 초청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금감원측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부분 및 원고가 '컬럼비아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는 부분 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

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하여 '고위층 비호설'의 주인공 또는 배후로 지목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사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사 부분은 더 나아가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실제로 위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JJ게이트 관련설로 잠적 배경에 관심'이라는 소재명과 함께 '자칫하면 세풍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나 PCS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같은 또한 명의 장기유랑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고 하여 위 관련설을 원고의 잠적사실과 연관시키는 부분에 의하여 원고가 위 관련사실로 인하여 미국에 잠적 내지 도피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바, 실제로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의 기사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정현준 진승현 사건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현준 진승현 사건 모두 금융기관의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이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담당국장인 장래찬이 자살하여 금융감독원 고위직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증언에서 정현준이 원고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원고가 정현준 사건에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고 실제로 다수

의 일간신문이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었던 점, 원고가 금융감독원 대변인을 통하여 정현준 사건에 대한 관련설을 해명하면서 2000. 11.경 귀국할 것을 밝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귀국을 미룬다면 오히려 의혹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진승현 사건에 대한 원고의 개입 여부에 관한 의혹이 새로이 제기된 후 귀국을 늦추었던 점, 피고 성기영이 원고가 위 해명 당시 직접 밝힌 전자메일 주소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기 위하여 2000. 12. 중순경부터 원고의 소재를 알 것으로 생각되는 국내외의 주변인물들과 연락을 취했으나 원고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컬럼비아대학에서조차 원고를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및 나아가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전체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게재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14.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 기사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잠적
출국 이후 행적 오리무중...초청 주선했던 컬럼비아대 교수도 "행방 모르겠다"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고위층 비호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던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뉴욕에서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뉴욕행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진 컬럼비아대학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그가 컬럼비아대학에 도착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답변해 이 전 위원장이 컬럼비아대학 초청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금감원측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금감원측은 동방금고 사건과 진승현 게이트 사건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야당 등에 의해 '고위층 비호설'의 배후로 지목되자 이 전 위원장이 컬럼비아대학 초청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고 진승현 게이트 배후 의혹이 제기되자 "11월 귀국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JJ게이트 관련설로 잠적 배경에 관심

이 전 위원장은 퇴임 후 주변의 권고에 따라 외국행을 결심한 뒤 본인이 스스로 뉴욕행을 원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80년대 말 재무부 뉴욕 재무관을 지낸 바 있어 현지에 상당한 지인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금감위 자문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최범수 박사가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을 소개했고 금감위 국제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를 통해 연구원 초청장을 받았다고 한다. 최박사는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가 '세계은행 초청 연구원으로 떠나 연구실이 비게 될 것이므로 내 연구실을 쓰면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는 이 전 위원장의 뉴욕 체류 여부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미시킨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컬럼비아대학의 에이펙(APEC)센터와 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위원장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지난 학기 내내 어떠한 행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을 보거나 소식을 들은 바 없다. 그가 뉴욕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도 "현직이 아니더라도 장관급 인사 방

문시 의견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아무에게도 소재를 알리지 않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소재를 모로기는 국내 금감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이용근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금감위 김모 과장 역시 "이 전 위원장 출국 당시 공항에도 안 나갔으며 소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이 살고 있던 압구정동 아파트의 전화번호도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 이 위원장은 슬하에 3녀가 있으나 출가, 유학 등으로 본인과 부인 단둘이서만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이 전 위원장이 컬럼비아대학의 초청을 받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컬럼비아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뉴욕에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감위 주변에서는 동방금고 사건과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위원장이 선블리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세풍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나 PCS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같은 또 한 명의 장기 유랑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끝. □

일본 판결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범죄보도에서 진실성의 입증은
보도시점 이후의 자료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 고 인 : 주식회사 北海道新聞社
피상고인 : 甲野太郎
최고재판소 1996 (才) 제576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2. 1. 29. 제3소법정 판결, 파기환송.
1심 동경지방법판소 1993 (ㄱ) 제22985호외, 1995. 4. 20 판결.
2심 동경고등재판소 1995 (ㄱ) 제1928호외, 1995. 11. 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동경고등재판소
(2심)에 환송한다.

이 유

1. 본건은 상고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
된 기사가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유로 피상고인이 상고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
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상고인은 일간지 '北海道新聞'을 발행하
는 신문사이다.

2) 1981년 8월 13일, 미국 LA 시내의 한 호
텔에서 당시의 피상고인의 처 花子(하나코)가
누군가에 의해 둔기로 맞아 부상한 사건(이하
'구타사건'으로 한다)이 발생했다.

3) 피상고인은 구타사건과 관련, 살인미수
죄로 기소되어 1987년 8월 7일 동경지방법원
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경고등재판소는
1994년 6월 22일 피상고인의 동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4) 상고인은 1985년 9월 12일자 北海道新聞
에 제1심 판결 별지3 기재의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를 게재했다.

본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상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걸려있는 생명보험금을 목적으로 구타사건을 저지른 범인으로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며 피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본건 기사의 게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음이 인정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 본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며 피상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증명은 그 행위당시에 있어서의 그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본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본건 기사가 게재된 1985년 9월 12일이므로 본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의 증명도 대체적으로 상기 게재 당시에 존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 충분하다.

구타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동년 10월에 피상고인이 기소된 후 1987년 8월에 형사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심리를 거쳐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내려지고 있으므로 상기 유죄판결의 존재를 가지고 보더라도, 본건 기사 게재 당시에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심의 상기 판단은 시인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상기 행위는 위법

성이 없다. 또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기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최고재판소 1962년 제815호 동 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심(事實審)의 구두변론 종결시에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그때에 명예훼손 행위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고려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어쩌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행위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진실성의 입증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것을 행위당시에 있어서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입증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진실성의 입증에 위한 증거방법을 행위 당시에 존재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도 없다.

한편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행위자에게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예훼손 행위 당시의 행위자의 인식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위시에 존재한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겠으나, 진실성의 입증은 이러한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하는 판단과는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건과 관련시켜 보면, 원심은, 진실성의 증명은 그 행위당시에 있어서의 그것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구타사건의 유죄판결

이 명예훼손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내려졌다는 것을 이유로, 동판결을 본건에 있어서의 진실성 입증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본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때의 입증의 대상 또는 입증을 위한 증거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상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위법이 있으며,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위법이 있으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1. 원판결은, 본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보도 당시이며 진실성의 증명도 대체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나, 그 원판결이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일반상식 및 법률상의 정당한 해석에도 반하고 있다.

2. 본건은, 자기의 명예가 신문보도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1심 원고가 금전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이다. 따라서 1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피해사실 성립여부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그것이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 그 보전(補填)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민사불법행위이론으로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행위에 눈을 돌려, 그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평가 판단하려는 형법적 이론에 따라서는 안된다.

3. 위 원심의 법률적 판단과 해석은, 형사법학이론을 적용한 불합리가 있으며 내세운 이유에는 모순이 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이른바 진실성 입증의 문제는 민사·형사 동일의 근원에 의한 법률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 규율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형법은 제230조의2에서 구현화되어 있으나 민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정화되어 있지는 않다. 민사법리론에서 형사실체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용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4. 위 이론에서 진실증명의 대상인 '진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진실의 증명도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특히 본건의 범죄보도의 경우는, 그 진실증명은 형사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이 나면 충분하며, 민사상의 판단에서는 형사재판의 확정을 요구할 정도의 엄격함은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아래 상세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내려진다. 반면 보도한 측은 그나름의 객관적 자료에 의거한 판단이나 의견의 선택이 가미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뉴스원의 비닉(秘匿)이라는 요청. 특히 본건에서 이른바 통신기사의 문제까지 겹쳐 입증활동은 심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진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실상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는 자료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론으로서도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민사법정의 진실입증 요구수준은 형사확정판결, 혹은 이와 동등한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6. 따라서 1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본건 기사는 이른바 범죄보도이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는 것, 오로지 공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 불이익은 본인이 수인(受忍)해야만 한다.

원심판결과 같이 "사람의 명예는 불변 부동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위치한 객관적 상황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며, 그 객관적 상황에 상응한 명예(사회적 평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심 원고가 가령, 본건 기사내용의 범죄를 범했다고 한다면(형사법상으로는 아직 무죄추정을 받는다) 그 사실은 범죄행위의 시점에서부터 불변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7. 따라서 본건 각 기사에 의한 보도시점에 있어서, 범행이 진실하다고 형사재판판결이라는 방법으로 민사상 명백해진 경우에는, 본건 각 기사에 의한 1심 원고의 범죄행위에 관한 보도는 진실의 증명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은 조각(阻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원심판결과 같이 한정된 보도시점에 있어서의 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진실성을 엄밀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

8.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건과 같은 범죄보도는, 원심의 사고에 따르면 본건 1심원고의 형사범죄사건이 확정되기까지, 혹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보도에 대해, 보도시점에서의 자료가 민사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입증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입증활동에 제약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입증에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는 언제나 배상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9. 원심의 이론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정도로, 가급적 선제이셔널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체포되어, 자신에 관한 형사재판 확정전의 보도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 계류중은 물론 확정복역 후에도 민사배상소송을 제기, 결과적으로 막대한 자산을 획득하여 복역 후에는 그 자산을 가지고 출소할 수 있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전적으로 정의에 반하는 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

반면 언론사는 이 같은 배상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체포나 유죄판결의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독자의 의욕을 조금도 돌을 수 없는 관보적 체제와 기술로 보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10.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건전한 흥미와 관심에 대한 생리적 작용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되어, 보도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고 매스컴의 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폭거가 될 것이다.

11. 이상과 같이 민사재판에서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이론은 피해자라는 자에게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 손해전보(填補)를 누가 할 것인지, 혹은 본인이 수인(受忍)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형사재판과 같이 어떤 자의 행위를 일정한 시점에서 포착하여 그것을 법률적으로 평가제재 해서는 안된다.

12. 또한 본건 1심 원고의 유죄는 미확정이기는 하나, 이 형사사건의 검거는 수사, 사법기관에 앞선 보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한다. 1심 원고와 지원자(支援者)의 본건 등 일련의 재판에 관한 소행을 도식적으로 받아드린다면 현재의 사회제도, 법률질서의 취약점에 공격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13. 이상과 같이 원판결은 1심 피고의 항변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 명예훼손의 진실성 입증에서 그 자료와 판단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게도 시기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령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돼야만 한다.

상고보조 참가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인 본인의 보도현상으로부터의 의견)

1. 원판결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령(민법709조, 동710조)의 해석적용 및 이에 관해 확립된 최고재판소 판례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법령위배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법령위배이다.

또한 원판결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 심리부진(不盡), 이유불비, 이유저어(齟齬)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2. 원판결의 판시

1) "본건 기사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각 기사가 '道新스포츠'에 게재된 1988년 10월 21일~22일이므로 각 기사 내용의 진실성의 증명도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순조롭지 않게 되는데, 앞의 갑7호증의 12, 을17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총격사건에 대해 위 유죄판결은 동년11월에 기소된 후 1994년 2월 결심까지 5년여의 심리를 거쳐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 인정되므로 위 유죄판결의 존재를 가지고서도 각 기사 게재당시에 있어서 그 진실성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의 명예(사람이 그 품성, 덕행, 명성 및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는 부동산변의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놓여진 객관적 상황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다. 그 객관적 상황 하에서 그에 상응한 명예(사회적 평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 그대에 있어서의 명예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기사가 게재된 시기는 1988년 10월 20일에 1심원고가 총격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다음날과 그 다음날이므로 1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체포된 피의자로서의 한도에서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저하는 그 한도에서이며 각 기사에 의해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인상을 사회에 주는 일로부터는 보호되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이것은 1심 원고가 각 기사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본건 기사에 대해서는 진실성의 증

명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1심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은 유죄의 형사판결이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진실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소송은 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진실성의 증명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의 그것이어야 함을 요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므로 1심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2) 그러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진실성의 증명에 관한 법령 및 판례의 해석·적용의 오류

1)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진실성의 증명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66년 6월 23일 판결에 따른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만일 위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판결은 그 판결문 중에 이와 다른 설시를 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본건 기사에 신문게재에 대해 피상고인의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판례로서 이미 확립되어있다.

2) 상기 최고재판소 1996년 판결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있어서도 진실성의 증명을 판단함에 있어 증인·서증 그밖의 증거를 폭넓게 감안하고 있고, 본건 원판결과 같이 진실을 ‘행위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진실’로 한다든지, 혹은 진실성의 증명을 위한 자료를 행위당시에 존재한 자료에 한정하는 등의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3) 또 진실성의 증명에 관해서도, 위 최고재판소 1966년 판결의 판지(判旨)를 답습, 부연하고있는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83년 10월 20일에 대해 정당하다고 시인된 당해 판결 원심(大阪高等재판소 1980년 9월 26일 판결)에서도 당해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행위 후의 여러 사실의 인정도 받아드리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본건 원심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자료는 명예훼손 행위 당시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판단은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

4) 아무튼 원판결의 판단은, 명예훼손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당해 적시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위시점에 이용가능한 증거만으로는 당해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위법성의 조각(阻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법령 및 확립된 판례의 해석적용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리부진(不盡)·이유불비·이유저어(齟齬)의 위법에 빠졌으며, 이러한 위법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출처 : 『판례시보』, 1778호 p49~55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 판결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립적 보도특권은 Time Inc. v. Pape 사건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Norton v. Glenn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

판결 요지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Pennsylvania Superior Court)은 피고측이 중립적 보도특권(neutral reportage privilege)을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측의 명예훼손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뒤집었다. '중립적 보도특권'이라는 것은 Time Inc. v. Pape 사건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 탄생한 것이고, 따라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그러한 특권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사건개요

James B. Norton III 와 Alan M. Wolfe(항소인들)는 Troy Publishing Company, Tom Kennedy 그리고 William Caufield(피항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배심원의 평결에 기한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음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제1심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항소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뒤집어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 관계와 소송의 경과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에 적절히 실시되어 있다. 이 소송의 발단은 Chester County Daily Local이라는 신문의 1995년 4월 20일자 기사이었다. '욕설, 모욕이 마을을 논쟁으로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전날 저녁 Parkesburg 시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다. 그 날 시의회의장이던 원고 James Norton은 시의회 회의장에서 일어나곤 하는 싸움과 욕설에 중지부를 찍고자 노력했다. 기사는 당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이던 피고 Glenn이 Norton, Parkesburg 시장 Alan M. Wolfe 그리고 시의 법무담당 공무원 James J. Marlowe에 대하여 한 발언을 실었다. 그 기사에서 피고 Glenn은 Wolfe와 Norton을 '동성애자들(queers)', '아동 성희롱자들(child molesters)'로 지칭하였고, 원고 Marlowe를 '악덕 유태계 변호사(shyster Jew)'라고 불렀다. 그 기사는 그 당시 Daily Local지 기자이던 피고 Tom Kennedy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 William Caufield는 Daily Local지의 소유주이었으며, 피고 Troy Publishing은 그 발행인이었다. 그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들은 즉각 피고들을 상대

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에 기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식 재판에 앞서서, 피고들 전원은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을 신청하였다. 1999년 8월 2일자 결정에서, Paula Francisco Ott 판사는 원고 Marlowe에 대한 Glenn의 약식재판 신청을 받아들였고, 원고 Norton과 Wolfe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Ott 판사는 또한 Troy Publishing Company, Tom Kennedy 그리고 William Caufield의 약식재판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 대신 이 사건의 정식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단은 공정정보특권 (fair report privilege)에 기초하여 평결을 내리도록 지도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다.¹⁾

재판은 배심원단이 출석한 가운데 2000년 3월 27일 열렸다. 2000년 3월 31일에, 배심원단은 피고 Glenn에 대하여 원고 Norton에게 배상적 손해액으로서 10,000 달러, 징벌적 손해액으로서 7,500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놓았다. 배심원단은 원고 Wolfe에 대하여도 동일한 평결을 내놓았다. 그리고 피고 Troy Publishing Company, Tom Kennedy 그리고 William Caufield (즉 언론기관 측 피고들)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평결하였다.

항소인들은 재판 직후 피항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재판 후 신청(post-trial motions)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항소인들의 재판 후 신청을 기각하였

다. 항소인들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새로운 재판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적용될 심사 기준은 확립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이 그 재량을 남용하였거나 또는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법률상의 오류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자 항소인들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이 적용한 중립적 보도 특권을 펜실베이니아 주가 채택하여야 하는가 여부이다.²⁾ 다른 어느 법률적 쟁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심사 범위는 절대적이다. 이 쟁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제1심 법원에 의하여 적용된 중립적 보도특권이 헌법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념은 미합중국의 헌법 본문 및 그 수정 조항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특권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헌법 또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법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중립적 보도특권은 1977년 미합중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Edwards v. National Audobon Society* (556 F.2d 113) 사건에서 처음 승인되었다. 그 사건에서,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피항소인들의 약식재판신청을 기각한 1999년 8월 2일자 의견에서, Ott 판사는 '공정 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과 '중립적 보도특권(Neutral Reportage Privilege)'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중립적 보도특권이 적용된다고 지도받았다.

2) 양측의 어느 누구도 중립적 보도특권이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인된 상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관례 중 이 특권을 다른 유일한 사안은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DiSalle v. P.G. Publishing Co.* (544 A.2d 1345) 사건의 항소심 판결인데, 그 판결에서의 판단은 법(law)이 아니라 부수적인 방편(dictum)에 불과하다.

National Audubon Society와 같이 책임감 있고 유명한 단체가 공적인 인물에 대하여 중대한 비난을 가할 때에, 그 비난 내용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보도하는 행위는, 그 비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 견해에 상관 없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Time, Inc. v. Pape, 401 U.S. 279; Medina v. Time, Inc., 439 F.2d 1129 참조). 그러한 비난과 관련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비난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이다. 수정 헌법 제1조 하에서, 단지 그 비난의 진실성에 관하여 언론기관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 보도가치 있는 발언을 은폐하도록 요구받는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발언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그 의심스러운 비난들에 공격을 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Edwards 사건의 판례가 위 Time, Inc. v. Pape 사건의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Time, Inc. v. Pape 사건은 Time지가 1961년도 미국 민권위원회 보고서 (United States Commission on Civil Rights Report)의 일부분을 다시 기사화함으로써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이었다. 그 보고서는 James Monroe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는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시카고 경찰국의 손에 의해 잔인한 짓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카고 경찰국의 부국장이던 Frank Pape는 Time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러한 주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Monroe의 주장이 마치 미국 민권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판단받은 쟁점

은, '주장된(alleged)'라는 단어를 생략한 Time지의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그 정도로는 현실적 악의를 인정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선언된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Time, Inc. v. Pape 사건은 '유명한(prominent)' 단체들에게 보다 넓은 권리를 허용하는 특권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았고, 발언자가 누구냐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상관하지 아니하는 법리를 지지하지 않았다.

1979년 제3순회 항소법원이 선고한 Dickey v. CBS Inc. (583 F.2d 1221) 사건의 판례는, 비록 우리 법원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판례는 아니지만, 위 Edwards 사건의 판례가 Time, Inc. v. Pape 사건의 판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한 설득력이 있다. Dickey v. CBS Inc. 사건에서 제3순회 항소법원은 중립적 보도특권과 Time, Inc. v. Pape 사건의 판례를 인용한 Edwards 판례의 확대해석을 정면으로 배척하였다. Time, Inc. v. Pape 사건의 판례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선언된 오랜 법리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중립적 보도특권의 이와 같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과 관할을 달리하는 법원 중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특권을 적용하는 법원들이 있다. 그러한 법원들 중에는 미국 연방 제8 순회 항소법원 (Price v. Viking Penguin, Inc., 881 F.2d 1426), 뉴욕 주 남부 지역 관할 미국 연방 지방법원 (Colinatis v. Dimas, 965 F. Supp. 511, 520),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 관할 미국 연방 지방법원 (Barry v.

Time, 584 F. Supp. 1110, 1127)이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특권은 미국 연방 헌법,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 또는 펜실베이니아 주 법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판례 중에서도 중립적 보도특권을 채택한 사건은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iSalle 사건이 중립적 보도특권을 언급한 유일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서도 부수적인 방론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러한 특권을 채택한 다른 관할 법원의 판례 중 어느 것도 이 법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궁극적인 질문은 펜실베이니아가 중립적 보도특권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부정적인 것이다.

중립적 보도특권이라는 것은 Time Inc. v. Pape 사건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 탄생한 것이고, 따라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그러한 특권을 채택하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특권을 적용하고, 그러한 전제 하에 증거 판단을 하였고, 또한 배심원단에도 그 특권이 적용된다고 지도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의 오류를 범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 항소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뒤집는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30권 pp. 1637-1640

번역 : 장상균 판사 (서울고등법원)

□

영국사례 1

첨예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확인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

불만신청

유명 배우인 Jimmi Harkishin씨는 자신의 잠자리 성향에 대해 보도한 2002년 3월 31일자 Sunday Sport지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를 어겼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기사는 Coronation Street의 배우인 신청인이 Marie Howsin이란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저녁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 기사에서 Howsin양은 나이트클럽에서 둘이 만난 후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날 일에 대해 그녀의 입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청인은 Howsin양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나가자는 그녀의 제안을 거

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를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Coronation Street의 홍보팀에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는 Howsin양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고 신문사가 녹음한 전화통화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상대 여자로 알려진 Howsin양이 신청인의 차를 식별하고 신청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화통화 녹음 테이프가 Howsin양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사화하기를 포기한 다른 신문사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신청인은 그녀를 만날 당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

고 자신의 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그날 밤 친구들과 그녀의 대화 도중에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그녀가 8개월의 기간동안 2개의 신문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평 결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의 진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PCC의 일도 아닐 뿐더러 권한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편집자가 보도실천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정확하고, 독자를 오도할 수 있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기사를 다룰 때에 편집자들은 그 제보내용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쪽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PCC는 밝혔다.

Howsin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신문사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건을 게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국사례 2

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독자편지를 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신청

신청인 Kim Noble부인은 12월 6일 화요일자 Jersey Evening Post지에 게재된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3조 사생활보호에 위배되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Noble부인이 불만을 제기한 기사의 내용은 주정부 주택위원회 위원장인 Terry Le Main 부지가 제출한 편지에 관한 것으로 주정부의 거주민 정책을 비판한 신청인의 서신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사는 Le Main 부지가 보낸 독자편지를 게재하면서 사적이고 기밀사항인 신청인의 임차료 내역을 상세하게 공표했다. 신청인은 그 상세한 내역이 주정부 건설당국의 자료로,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되어 신청인의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

해, 신문사 편집자는 문제의 편지가 공공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유력한 정부관계자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집자는 보도실천강령에 부합하지 않고 만일 이를 어겼다면 위원회의 평결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평 결

PCC는 이 사건이 독자 편지의 형식으로 신문에 공표된 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보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PCC는 취재기자 및 편집자는 기사를 게재할 때 기사의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임대료와 관련한 상세내역은 명백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편집자는 그 편지를 작성한 자가 고위 정부 관료라는 사실을 고려했는지라도 정보공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독자 편지에서 비롯된 사안을 둘러싸고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PCC는 신청인의 임대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의 이익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보도실천강령의 위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

영국사례 3

범죄현장 목격자인 아동의 이름 및 주소를 공표한 기사에 대한 불만신청은 정당

불만신청

Andrew Hall 씨는 The Eastbourne Argus지 2002년 5월 10일자 “유괴 당한 소녀에 대한 테러” 제하의 기사에서 사건의

희생자이면서 목격자인 자신의 딸의 신원을 어떠한 동의도 없이 공표하여, 보도실천강령 제 10조(범죄관련보도)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신청인과 그의 부인은 12세인 딸이, 딸의 친구 납치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납치기도를 했던 남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다시 납치하겠다고 위협했다. 피신청인 외에 Argus지가 이 사건을 보도할 때 신청인 딸의 이름과 주소의 일부분을 공표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이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고 믿고 있었다. 신문사는 기자가 신청인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세부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의 부인은 기자와 통화한 시점은 이미 기사가 작성된 상황이라 판단했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는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주소가 기사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언급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의 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야기할 자세한 사항의 보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 결

신문사 취재기자가 신청인의 부인과 전화통화에서 적절히 행동했는지라도 PCC는 신청인의 딸에 관해 게재된 기사 내용은 전화통화를 통해 얻어진 것이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보도실천강령 제10조(범죄관련 보도)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희생당한 어린이들은 잠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PCC는 이 조항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

해 신청인의 부인이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말한 딸의 이름과 주소의 일부분이 기사에 포함되는 것은 신청인의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PCC는 신문사가 보도실천강령이 요구하는 범죄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

영국사례 4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장소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게재한 것은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

불만신청

신청인 Hugh Tunbridge씨는 Dorking Advertiser지 2월 22일자 “버터블 타트(파이의 일종)에 머리를 들이박고 먹고 있는”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에 자신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진은 보도실천강령 제4조(괴롭힘)에 위배된 것이라며 불만을 신청했다.

그 기사는 지역 식당에 관한 것이고, 식당내부를 촬영한 많은 사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식당에서 신청인은 몰래 사진을 찍혔다. 신청인은 명백히 그와 그의 동행자를 알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사진은 그가 알지도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채 촬영·게재된 것으로 인격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그 기사가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신문사측은 카페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이므로 신청인의 사생활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진기자는 사진촬영시 고정카메라를 사용했고, 비밀스

런 내용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였다. 그 사진은 단순히 식당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었고 손님의 사생활을 해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평 결

PCC는 문제의 보도는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실천강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적 공간이란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지길 바라는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라고 명백히 하고 있고, 제4조는 동의 없이 이러한 장소에서 개인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PCC는 과거에

Ryle씨가 News of the World 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여전히 보호될 거라 기대하는 공공장소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곳도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장소임을 확실히 밝힌 바 있다. PCC는 카페의 손님들도 비밀리에 사진을 찍혀 신문에 게재되는 걱정 없이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거리에서 쉽게 보이지도 않았던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PCC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그의 동행인이 충분히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장소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불만신청을 수용하였다. □

계획된'이란 표현은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인간성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어의 사용은 인종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목과 관련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시된 단 하나의 증거는 익명의 목축주민의 의견과 익명의 노동자와 소방수의 언급뿐이었다.

The Weekend Australian지는 원주민이 방화를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 명의 진술이 있으며, 또한 이들이 주장이 모순된다는 두 명의 전문가 의견도 인용보도한 점을 강조했다. 표제는 기사의 주요 핵심을 반영한 것이고 매우 합리적이라고 신문사는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내용과 '원주민에 의해 계획된'이란 문구는 인종차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The Weekend Australian지는 신청인들이 편집자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청인들은 문제의 기사내용에 항의하는 다른 20명과 함께 그 기사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적절한 시기에 전했다.

호주사례 1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한 기사 제목은 잘못된 것이며 신청인들의 불만제기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호주신문평의회는 The Weekend Australian지에 실린 2001년 9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Krisina Schmah와 Elke Nicholson 씨의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 대상 기사는 '산불의 배후에 원주민'이란 제하의 기사로 Tennant Creck 주변에

살고 있는 목축민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공유지에서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원주민에 의해 행해진 '상대를 악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는 보도내용이다.

신청인들의 주요한 관심은 기사 제목이었다. '원주민에 의해

다. 편지는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시점으로부터 몇 주 후에 보내졌는데 당시에 이상하리만치 평소보다 많은 양의 편지가 쇄도했지만, The Weekend Australian지측의 독자편지 편집자는 신청인들이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의 기록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신문평의회는 The Weekend Australian지가 어떠한 연유에 서이든 독자들의 관심과 우려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았으며 유감을 표명했다. □

호주사례 2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안의 보도이므로 정당

호주신문평의회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살인자가 호주의 한 지역에서 하루동안 여행을 한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한 The West Australian지의 2001년 12월 1일자 기사에 대한 불만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한 사유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신문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보다 중요한 공공의 알 권리에 대한 보도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범죄자에 관한 경우이다.

살인자 Kevin Elliott Kenny는 1994년 두 명을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정신이상 상태에서 살인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

Kenny를 대신하여 불만을 신청한 단체는, 신문사가 기사

에서 살인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가 Perth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그리고 7년 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문평의회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공적인 기록이나 명백하고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의 보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기되었다.

신문사는 불만이 제기된 이 사안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고려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요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수용된 살인자의 상황은 공공에게 알려져야 하고, 법원이 대중의 안전을 위해 억류한 살인자가 훈련받은 감시원이 아닌 단지 한 명의 병원 직원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도록 한 것은 일반 대중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했다.

신문평의회는 신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그 기사가 비밀정보보호 조항을 어겼고 “보호받을 수 없는 미친 남자”라는 부제가 근거 없이 살인자의 인격을 모욕했다는 불만 신청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신문평의회는 비밀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고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3

재판관련 보도에 있어 정확성이 결여되었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무시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사기와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Lionel Anthony Godwin씨의 재판에 관

해 보도한 The Northern Territory News지의 기사에 대해 Godwin씨 어머니가 제기한 불

만신청을 수용하였다.

Godwin씨는 Darwin에 거주하는 두 사업자에게 부동산 개발에 공동 투자하자며 이들을 설득하여 두 사업자의 이름을 도용, 730,000달러를 차용해 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은 2월에 이 사건을 표제기사로 하여 재판의 경과와 선고내용에 대한 Godwin의 어머니인 Lesley Godwin 부인의 입장을 기사화했다. 이 기사내용과 신청인의 사진은 자매지인 Centralian Advocate지에도 보도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이들의 기사가 증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먼저 신청인은 판결선고일에 보도된 표제기사에서 자신의 아들인 Godwin씨가 동업자에게 그가 사업을 위해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다면서 “자신 소유의 상당한 토지, 주식, 현금 및 자동차가 있고 그의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을 문제삼았다.

신청인은 그녀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이 문제삼은 기사는 세부적인 측면이 아니라 Godwin씨 자산 전반에 대해 거짓을

말한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신문사는 2월 기사에서 복권당첨에 관한 Godwin부인의 자세한 설명을 기사화했다.

신청인은 또한 신문사가 신청인의 아들이 피해자들에게 그가 실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취했다고 한번 이상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법정사건을 보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문사는 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를 잘못 전했고 이런 측면에서 불만은 받아들여졌다.

신청인은 또한 최초의 보도에 이은 2월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기사는 신청인의 전자메일과 신청인과의 장시간 전화 인터뷰에 근거를 둔 내용이다.

신청인은 신문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거물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신청인의 전자메일에도 그러한 문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사는 신청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인용했고, 전화인터뷰에서 명백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정확히

인용보도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신문평의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평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한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하였다. 신청인의 전자메일에서 Godwin부인은 The Northern Territory News에게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신청인의 아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을 때 Centralian Advocate에 실렸던 사진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새로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진의 게재는 자신과 손자에 대한 사생활과 감정을 전혀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The Centralian Advocate은 신청인의 요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The Northern Territory News는 이 문제가 Godwin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관점에서 보면 The Centralian Advocate사의 결정과 피신청인의 결정이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었다. □

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월간조선은 상지대 뺀 실서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 공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원 상지학원이 <월간조선> 5월호의 기사(지금 상지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와 관련해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월간조선 다음호에 실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월간조선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완

료할 때까지 매달 3천만원을 상지학원에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월간조선이 해당 기사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제기되었다가 해결된 사례들을 짜깁기해 마치 지금 상지대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 보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월간조

선이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시민대학인가 민중대학인가'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에서도 상지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했다고 판시했다.

한겨레, 2002. 9. 11.

MBC, 월간조선에 반론보도청구

(주)문화방송(MBC)이 서해교전과 관련, 월간조선을 상대로 지난달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26일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MBC는 신청서에서 "월간조선 8월호

는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지적했다'는 편파보도와 함께 '문화방송은 친북적 보도행태로 인해 시청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근거없는 기사를 게재해 피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달 월간조선 8월호에 대해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신청내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02. 8. 26.

"이승복사건 조작주장은 명예훼손" 소보 주장 2명에 슈죄판결

북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가 학살됐다는 '이승복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대등 부장판사는 3일 '이승복 사건'이 조선일보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연(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입장 등 특수 사정을 고려한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이승복 군 진술의 진위

여부는 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는지는 당시 현장 사진의 존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誤報) 전지회를 열면서 68년 '이승복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설명 등과 함께 전지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미디어오늘 등에 같은 취지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

했다.

당시 취재를 맡았던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그러나 법원은 조선일보가 제출한 현장사진 10장을 주요 근거로 '현장 취재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 등은 "당시 취재를 맡았던 조선일보 강릉주재 기자가 '작문'이라고 털어놓은 내용이나 현장에서 강 기자를 본 적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논란은 2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2002. 9. 4.

문화방송, 저작권침해 등 손해소

(주)문화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여성앵커 김주하 씨는 13일 무단 도용한 뉴스화면을 광고에 이용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

다. 문화방송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지난 2월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헛개나무 열매속 알코올 분해 및 간염치료 물질 함유'란 보도내용과 화면을 무단으로 스포츠신문 광고란 등에 게재, 저작권

과 초상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원고가 특정 제품을 홍보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2. 9. 13.

한나라, 일부 언론사에 '소송전'

한나라당이 일부 언론사들과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문화방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오마이뉴스, 신동아, 일요시사의 발행인과 기자 등 10여 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소송을 각각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문화방송이 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대의 명분에 떠밀려 마지막에 경선을 실시..." 등의 표현으로 불공정하게 보도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오마이뉴스, 신동아 등은 지난 97

년 대선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짓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는 것.

앞서 한나라당은 이후보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언론인 정경희씨에 대해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대대적인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후보와 관련된 악재가 이슈화하

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때 오마이뉴스의 취재 기자에게 취재편의 제공을 거부, 오마이뉴스측과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연씨의 주가조작 의혹이 금감원에서 무혐의 처리되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한광옥 전 대표와 송석찬 의원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문화일보, 2002. 6. 27.

탤런트 S자매 스포츠지에 손해소

탤런트 S양 자매는 최근 연예계비리와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스포츠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자매는 소장에서 "우리들 영문 이니셜을 쓰면 원고자매를 지칭함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과없이 우리들의 이니셜을 사용하면서 '검찰에 출두해 성상납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고의 이미지는 연예인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중

요하지만 한 여자로서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못된 보도로 원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 8. 22.

"PD수첩 검찰 명예훼손" 현직검사 MBC에 3억 손해소 제기

현직 검사인 정모 씨는 20일 MBC 'PD수첩'이 '죄 없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검사가 위증 혐의로 몰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해 자신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담당 PD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 검사는 소장에서 "목격자인 이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MBC는 검사가 이씨를 위증죄로 몰았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1월 '나는 본대로 말했을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4월 경남 창원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목격자가 법정 증언 후 위증죄로 처벌받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사고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동아일보, 2002. 8. 21(A29면)

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산დე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조모 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

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 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씨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2002. 8. 22(2면).

"신문설 씨 '홍위병 비유' 정당"...시민단체 명예훼손소송 패소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했던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을 '홍위병' 등에 빗대어 표현한 소설가 이문열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인영률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나 친북세력으로 몰아세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표현이 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유지

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친북세력 발언 역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수사(修辭)적 과장 표현이라는 점, 자유로운 견해를 개진하는 공개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점, 즉각적인 반격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책 반환 행사 도

중 이씨의 명예와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조시(弔詩)를 낭송함으로써 과장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이씨가 지난해 7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기고한 '신문 없는 정부 원하냐'와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시민단체를 홍위병에 비유하고 같은 해 12월 부산의 한 서점에서 열린 독서토론회에서 친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2. 8. 17.

조선일보, 친실 민간법정 보도한 한겨레기자 상대로 손해소 제기

조선일보사는 지난 1월 <한겨레>가 '조선일보 민간법정'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쓴 <한겨레> 고명섭 기자와 안수찬 기자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지난 1월 31일자 <한겨레> 1면의 '반민족적 언론, 조선일보 윤휴'와 3면의 '시효 없는 시민의 친일 심판' 기사에 원색적인 제목을 붙이고,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격렬한 욕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했다"며 "피고들의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인해 80여 년에 걸쳐 쌓아온 국내 최고 언론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또 "조선일보사는 동아일보사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문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가장 많은 압수와 정간을 당한 신문이지만 때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다"며 "다양한 평가가 제기될 수 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마치 조선일보가 '자발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제의 주구 노릇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마치 '역사학계의 일치된 평가'로 정착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일 뿐 아니라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각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소송 제기로 본질을 왜곡하려는 조선일보의 작태를 전국언론노조 1만8천여 조합원과의 연대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2. 8. 2.

“허위보도로 검사 명예훼손” 동아일보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 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7월 26일 대검 이모 검사가 “동아일보가 자신을 이용호 씨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는 이 검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이 검사가 이용호 씨와 한 차례 통화한 사실만으로 이 검사가 ‘이용호 게이트’에 깊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만큼 이 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9월 ‘이용호 씨, 권력층과 수시 통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과 이용호 씨가 1999년 4~6월 사이 자주 통화하는 등 친밀관계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2002. 7. 27.

주병진 씨, PD·기자 등 8명 고소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는 자신을 고소한 강모(여)씨를 비롯, 방송사 PD, 잡지사 기자, 의사, 경찰관 등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지법에 고소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주씨는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소인 강씨 말만 믿고 언론 등이 본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세우는 바람에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제작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

남동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02. 7. 25.

월간조선 발행금지요구 MBC 가처분 기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9일 MBC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출판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기관 상호간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서해교전과 관련된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수 차례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MBC 역시 자사 뉴스와 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월간조선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등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했다”며 “MBC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4일 (주)월간조선이 서해교전과 관련, ‘추적, 버림받은 MBC뉴스-서해도발에 대한 오보·왜곡 계속, 여론과 사실로부터 고립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월간조선 8월호에 게재해 판매하자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선일보, 2002. 7. 30(27면).

한국노동당에 명예훼손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1일 “좌익공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이 한국노동당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장기복역 양심수들에게 연하장을’이란 제목의 글은 공산주의자들이 부당하게 복역한 것

처럼 왜곡 또는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노총과 관련, ‘공산계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유가 지나치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단체’, ‘체제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등의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과격한

시위구호에 대한 수사적 표현 등을 감안, 언론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노동당이 자신들을 ‘좌익공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 민변·전국연합·참여연대·연노련 등은 상고심에서 각각 2천만원씩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었다.

연합뉴스, 2002. 7. 21.

현재, 경쟁제한 등 신문고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헌 재판관)는 18일 "신문 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無價紙)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한 신문고시 조항은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며 김모 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문 발행업자에게 같은 제한을 규정한 신문고시 조항과 신문 가

격 제한을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김씨 등과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제한한 신문고시 조항은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문판매 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신문 판매업자의 사업활동 및 재산권 행

사 자유에 대한 이익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은 99년 1월 철폐된 신문고시를 정부가 지난해 7월 부활시키자 같은 해 8월 신문 구독자인 시민 김모 씨와 모 신문사 지국장 윤모 씨의 명의로 "신문고시가 자유와 창의의 원칙, 재산권 행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동아일보, 2002. 7. 19

조선일보 반론보도문 MBC뉴스 방송하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0일 조선일보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전후해 조선일보와 다른 경쟁신문과의 열독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MBC는 조선일보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으로 조선일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문화방송은 판결문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조선일보의 반론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9시 뉴스데스크 시작 20분내에 평소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읽으라"고 매우 구체적으

로 문화방송측에 주문했다.

반론보도문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열독률 격차는 크게 줄어든 바가 없고,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전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열독률 변화는 없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2002. 7. 11.(31면)

연혼사 상대 손배소, 산동수 전 장관 패소 판결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중앙·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5억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안 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아들의 병역면제가 청탁과 무관한데도 마치 자신이 병역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안씨 아들이 병역면제 관정을 받았고, 면제청탁 명목으로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이 금품을 수수

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안 씨 부부가 병역비리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 7. 13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정형근 의원 월간 말지상대 소송 제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일 "허위 주장을 확인절차 없이 게재해 제1야당 유명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 '말'지와 기자 안모 씨, 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방모씨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 의원은 소장에서 "방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 마치 원고가 불법고문을 자행한 것처럼 보도하고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을 원고가 배후조정한 사건이라 단언하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

북사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신이 방씨를 고문,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99년 12월호 '말'지에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2002. 8. 21(29면)

현재, 온라인 표현규제는 쉬현 결정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온라인 매체상의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법) 제5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표현물을 어느 선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7일 1999년 PC통신에 서해 교전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 통신법을 근거로 글 삭제 및 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대학생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통신법 53조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통신법 53조의 효력은 없어졌으며 이 조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표현물은 원상복구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신법은 53조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불온통신으로 규정,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불온통신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53조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은 막연한 규제가능성 때문에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조항으로 징집반

대, 징총거부, 통일 등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측은 “가장 열린 매체로 자리를 굳힌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 질서유지를 강조한 기존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6월 PC통신 ‘나무누리’에 개설된 동호회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살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6일 뒤 게시물을 삭제당하고 통신망 이용이 1개월간 중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일보, 2002. 6. 28.

이홍근 전 금감위원장, 동아일보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 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이홍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사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간동아의 의혹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공익에 관한 사안이었기 사실

확인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의혹이 부풀려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국을 늦추고 언론사의 접촉시도에 응하지 않은 점, 주변 인물들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이씨는 주간동아가 지난해 1월 18일자 ‘이홍근 전 금감위원장 미국서 잡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이 ‘정현준 게이트’ 등의 고위층 비호설 배후로 지목돼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예정된 연수를 떠났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2. 6. 15.

신문사 상대 전 지국장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13일 A신문사 전 지국장 조모 씨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의 대금을 돌려달라”며 A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신문사로부터 신문을 계속 공급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납부해

왔던 점으로 미뤄 조씨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 판단 하에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신문사가 체결한 계약에 신문사측의 확장계획에 따라 공급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돼 있고 비수기에는 감부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문사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1년 6월부터 98년 4월 까지 상당 부수의 신문이 판매되지 않고 폐기처분되고 있어 부수 감부를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신문사측이 적정판매부수를 넘는 신문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갔으며 99년 8월 6천700여 만원의 반환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6. 13.

2002년도 정기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재위원과 선거기사심의위원, 언론사 데스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 바치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대주제하에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김영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보도심의 청구에 비친 언론보도』, 이용식 문화일보 정치부장



의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몽항 위원(서울제5중재부, 광운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언론사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문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영식 위원장은 세미나 기간 중인 6일 양양군청을 방문하여 군 관계자로부터 양양군의 수재상황을 청취하고, “온 국민이 수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만큼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명곤 위원, 부위원장에 선출됨

위원회는 9월 16일, 박인순 전 부위원장의 임기만료로 공석인 부위원장에 서울제4중재부의 이명곤 위원을 선출했다. 이 위원은 재적 중재위원 74명 중 52명의 찬성을 얻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에 앞서 운영위원회는 9월 5일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 위원을 후보로 추천키로 결의한 바 있다.

중재위원 6명 새로 위촉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일자로 임기만료된 중재위원 후임으로 아래와 같이 5명의 중재위원을 위촉했다.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2002년 9월 2일부터 2005년 9월 1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서울2부 황성재 전 중재부장 후임으로 손태호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16일 위촉됐다. 손 중재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03년 8월 31일까지이다.

<신임 중재위원 명단>

- 서울제2중재부 손 태 호 위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서울제2중재부 이 경 일 위원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 서울제5중재부 조 관 행 위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서울제5중재부 김 재 덕 위원 (전 국민일보 부사장)
- 서울제5중재부 임 연 택 위원 (전 KBS 국장)
- 서울제5중재부 조 수 정 위원 (변호사)

제16대 대통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12월 19일 실시됨에 따라 8월 21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선심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양삼승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박기순 교수를 선출한 뒤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심위는 대통령선거일 30일 이후인 내년 1월 18일까지 6개월간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의하고,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양삼승 변호사
부위원장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	김해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용배 전 한국일보 이사 (이병훈 위원의 사퇴로 9. 5.자 위촉)
	성한표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이성준 전 한국일보 편집인·부사장
	전민기 변호사
	임상택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해외언론학자 등 위원회 방문 잇따라

최근 외국의 저명한 언론학자를 비롯 언론중재 제도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나 법률 전문가의 위원회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7월 15일 'Claud-Jean Bertrand' 파리-2 대학 언론학 교수가 위원회를 방문한데 이어 8월 8일에는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의 나카오 아카라 검사가 위원장을 예방했다. Bertrand 교수와 나카오 검사는 언론피해구제기구의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나카오 검사의 우리 위원회 방문은 일본 법무성에서 새로운 인권보호제도 확립을 위한 자료조사차 이뤄진 것으로서, 위원회는 회지와 홍보책자 등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다.

8월 26일에는 한국 매스미디어의 현황 및 언론정책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대학 법학부 신문학과 아마노 카츠후미 교수 등 일본 연구조사단 3명이 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위원장과 언론중재제도 및 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해 면담을 가졌다.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은 7월 12일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양구 KBS청주방송총국장, 지식원 청주MBC 시장, 이재천 CBS청주방송본부장, 이두영 청주방송(CJB)

대표이사와 충북중재부의 이한주, 우종인, 오두방, 김재중 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발생시의 신속한 구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2002년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운영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결산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가 발간됐다.

이 백서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법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종합평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선거기사심의의결 현황을 결정 내용별, 매체별, 위반내용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산 좌담이 게재되어 있다.

- 김구철, 『방송뉴스리포팅 침삭지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김재협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2002.
-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I -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7.
- 왕상한, 『디지털방송과 법』, 나남, 2002.
-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7.
- 한태열,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 풀빛, 2002.
- MBC PD수첩팀, 『PD수첩, 한국PD저널리즘의 보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권혁남, “선거보도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2002. 7. 30.
- 김서중, “언론윤리방향의 실제와 개선방향”,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여름호.
- 김영호, “매체비평 : 신문 - 익명보도 남발이 신뢰성 떨어뜨린다”, 2002년 6월호.
- 김재협, “비판과 의견 교환 표현의 범위”, 『신문과방송』, 2002년 6월호.
- 김재협, “소문에 빚댄 보도의 책임은 언론”,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김재협, “미묘한 문제에 대한 열린 보도의 중요성”, 『신문과방송』, 8월호.
- 김재협, “범죄보도의 몇가지 유의점”, 『신문과방송』, 2002년 9월호.
- 김정기, “특집 / 지방선거 보도 검증 : 2002년 선거보도 총평”,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김창룡, “방송의 선정·폭력성 현주소 - 뉴스보도 원칙은 없고 오직 시청률만 있다”, 『방송21』, 2002년 6월호.
- 김창룡, “언론의 한견주위와 부정확한 예단이 빚어낸 이 중살인”,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김창룡, “집중점검 : 법조기자 - 언론학자가 본 법조기자”,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목철수, “특집 / 지방선거 보도 검증 : 방송 - ‘철저한’ 외면, 추구채널로 이름 바꿔야”,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문재원, “집중점검 : 소송과 사회부 기자 - 명예훼손소송과 언론의 위축효과”, 『신문과방송』, 2002년 8월호.
- 박형상, “집중점검 : 소송과 사회부 기자 - 법률전문기자가 본 위축효과론”, 『신문과방송』, 2002년 8월호.
- 배금지,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성동규, “특집 / 지방선거 보도 검증 : 중앙지 - 정책보도 ‘공수표’, 선거 무관심 부추켜”,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성영훈, “집중점검 : 법조기자 - 법조인이 본 법조기자”,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성낙인,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성낙인, “선거보도 : 선거법과 언론”, 『신문과방송』, 2002년 8월호.
- 송종길, “케이블TV 선거방송 현황과 과제”, 『방송21』, 2002년 6월호.
- 심영섭, “독일의 출입기자제도”, 『신문과방송』, 2002년 9월호.
- 안기석, “언론사 후보지지 표명과 관련한 언론 현장의 문제”, 새언론포럼, 한국언론재단 주최 〈언론사의

- 후보지지 공개표명 문제 토론회), 2002. 7. 5.
- 양승찬,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2002. 7. 30.
- 윤철홍,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이명권, "집중점검 : 법조기자 - 현장에서 본 법조기사",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이상기, "방송 뉴스메거진 프로그램의 저널리즘적 특성",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 주최<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세미나, 2002. 9. 5.
- 이성원, "TV토론 방송의 방향과 과제", 한국방송협회 주최 <방송과 선거> 세미나, 2002. 5. 2.
- 이수형, "집중점검 : 소송과 사회부 기자 - 타이거풀스 기사로 본 위축효과", 『신문과방송』, 2002년 8월호.
- 이은택, "언론인의 도덕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 : 언론윤리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200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재진,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이창현, "방송의 공정성 실현방안 - 선거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 주최<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세미나, 2002. 9. 5.
- 이효성,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2002. 7. 30.
- 이효성, "언론의 후보지지 문제 : 찬반론과 선거법을 중심으로", 새언론포럼, 한국언론재단 주최 <언론사의 후보지지 공개표명 문제 토론회>, 2002. 7. 5.
- 여종국, "명예훼손 소송판결에 나타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 장호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지협회 주최 <지역언론활성화 토론회 : 지역언론 현실과 제도적 개선책>, 2002. 7. 11.
- 조준원, "집단명예훼손소송에서 피해자의 특징", 『방송문화』, 2002년 7월호.
- 조준원,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 적격", 『방송문화』, 2002년 8월호.
- 조준원, "의혹제거보도의 면책사유", 『방송문화』, 2002년 9월호.
- 진행남, "인터넷미디어의 뉴스 영역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2년 봄 (46-2호).
- 차재영, "대전지역 선거보도-경영년·무기력 속에 지방의원 후보 정보 실종",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여름호.
- 채 백, "부산지역 선거보도-중앙지와 닮은 꼴, 군소후보 배려 희망도",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여름호.
- 최영목, "방송의 선정·폭력성 현주소 - '엽기 텔레비전의 황색 폭력', 『방송21』, 2002년 6월호.
- 허 석, "집중점검 : 법조기자 - 현장에서 본 법조기사", 『신문과방송』, 2002년 7월호.
- 한영학,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② - 방송계의 자율적 고충처리기관 BRO",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 한영학, "일본의 기자실 운영실태", 『신문과방송』, 2002년 9월호. □

On-Line 중재 상담실



방송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보았다면?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1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로 장애인들이 지하철 철로를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한 방송사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항의하던 여학생과 관련한 부분을 왜곡 편집보도했습니다. 이 여학생을 장애인의 무단점거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학생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의 매일을 안다면 제가 물어볼텐데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방영된 당사자(이 여학생)가 직접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한 피해회복 외에 법적인 소송을 하는 항알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전화하 주십시오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모 방송 프로그램에 문의 아니게 출연하게 된

학생입니다. 거리에서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사전에 촬영허락도 없었을 뿐더러, 사후에 출연거부를 요청하였고, 알았다는 응답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군요.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시청자를 방송도구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때문에 말이죠.



본인이 방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초상이나 인터뷰 내용이 방영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보도되었거나 본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영되었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본인의 초상이나 인터뷰 내용이 해당 보도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허위보도로 징계까지...

저는 전남의 한 피출소에 근무하는 말단 경찰입니다. 그런데 모 지역 신문에서 4회에 걸쳐

하위, 편파보도를 하여 내부적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 정신적 피해와 신문상 불이익 처분을 보았습니다.

“탈출한 윤락녀를 경찰관이 붙잡아 조사도 하지 않고 업주에게 인계” 했다는 오지의 기사인데, 주관적이며 편파적인 시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몰라 지금까지 누구에게 하소연 한 번 못해보고, 언론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느껴 보았으며, 저 같은 말단 경찰은 인권이라는 게 없구나 하는 비통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소리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주와 유착하고, 윤락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방관한 것처럼 편파·허위보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명예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저와 가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말씀하신 신문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 공주중재부(정경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재신청은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담당 경찰관 개인이나 경찰서와 명의로 하실 수 있으며, 보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지막에 언급된 7월 27일자 기사에서는 경찰측의 주장이 보도된 것으로 보이며, 그 보도의 내용이 타협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7일자 기사에 보도된 내용 외에 달리 추가로 주장할 중요한 사실이 없다면 중재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경보도나 반론보도 외에 법원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공주중재부 (062-676-0380)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실명보도에 대해

지난 6·13 선거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

니다. 그때 본인이 사는 지역의 신문이 이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본인의 성(姓)만 게재하던 지방지가 관련 보도를 다시 하면서 본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사회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중재위원회(정경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지만, 본인의 실명이 보도되어 입은 피해는 정경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기자들의 추태요청과 문의가 빈번한 곳입니다. 간혹, 일방적인 취재 요청으로 인해 직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이 기자임을 내세워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유력 일간지의 기자가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기자들의 횡포에 그대로 잠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화가 나는군요. 이러한 경우는 어느 곳에 이야기해야 하는 건가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2차 서민기자선교선 54(02-754-4242) 혹은 기자협회 통합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지에 본인 허락없이 사진이 올라와서

모 월간지 9월호 표지에 제 사진이 게재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8월 4일에서 18일까지 알프스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등반에 참가한 대원 한 명이 이 월간지 지방 주재기자입니다. 귀국 후 필름을 기자에게 주었는데 허락 없이 월간지에 실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은 게재하지 말 것을 편집장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표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침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초상을 촬영한 사진이 허락 없이 게재되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눈꺼울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된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잡지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문보도를 통해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경우

저는 완도 현대아파트 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모 지역 일간지에서 "가스공급계약 일방적 결 말쟁"이란 제하로 기존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공동의 재산을 개인화하려는 부도덕한 상흔을 뿌리뽑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공급업체에 가격인하와 재계약을 종용한 바 있으나 묵살당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과 달리 기존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매각하였다는 업체의 대표를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고 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바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현 업체가 인수전 관리실에 문의한 소유권에 관련된 질의에 관리소장을 통하여 주민공동소유임을 알린 바도 있으며 분양사의 회신과 권모 씨 전화통화를 통하여 양측 모두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의 소유임을 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한 채 업체의 주장만을 듣고 모든 것이 전체 주민들의 여론인 듯 편파보도함은 지극히 기자로서의 자질에 의무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문기사의 보도내용이 일면의 사실만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반문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문보도청구권은 양측 주장이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 한쪽의 주장만 보도될 경우 이에 대해 다른 한쪽의 주장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광주중재부르 문의해 주십시오.



신문구독을 그만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는 모 일보 구독을 원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구독을 사절하였으나, 신문사에서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신문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신문을 보지도 않고 계속 반송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구독사절한다고 직인까지 찍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보측에서는 신문을 계속 보내오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문 대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했구요. 구독사절 의사도 그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은 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가 원하지 않는 신문구독을 강요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신문사나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02-734-3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주 모 방송사 드라마 방영 중에 제 휴대폰 번호와 비슷한 번호가 나오는 바람에 벌써 1주일 가까이 확인전화와 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냐고 한 두 번은 웃고 넘어가려 했는데, 자꾸 계속되니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피해가 막대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니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 보기 어려우므로, 저희 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와드리기 어려운 내용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송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에 관한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2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실관계의 오보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것인데 이 부분은 상대 언론사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시중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판단이 아닌, 매우 독특하고 소수의견에 속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본 신청인 단체에 매우 악의적인 시각을 가진 취재원을 취재하고 이를 기사화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은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닌, 담당 기자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네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단이다'라는 가치 평가 같은 것이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단인지, 아니면 제법 쓸모있는 집단인지를 누가 최종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그 기사에 의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단으로 몰리면서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재시 쌍방간에 해당 '의견'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요? 말하자면, 증인이나, 또는 쌍방간에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중재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각종 증빙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는지요?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자료 수집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중재신청 대상이 되는 보도는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을 밝힌 보도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의 주관적 견해나 가치판단에 대한 서술은 그 자체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판단이 잘못된 사실관계에서 근거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반론이 가능할 것이며, 가치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모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보았는데, 시간 부족 및 여휴가 기간과 겹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응이 늦어져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 언론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전문 월간지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금년 6월호에 문제의 기사가 실렸으나, 발행부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그 기사를 접한 것은 7월 중순 경이었습니다. <중재신청 관련 안내>의 '중재신청 기간' 항목에 나오는 다음 내용 2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중재신청은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보도된 것을 안 날을 어떻게 증명 또는 확인시킬 수 있을까요? 중재신청인이 그 보도를 알게 된 날이, 중재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둘째,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한 경우는 협의 불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정해진 양식'(가령, 서

류 제출 등에 의해 상대언론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만 의미하는지요?

저희는 상대언론 쪽과 몇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다음주 중에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를테면 최종담판을 시도할 생각인데, 그런 만남이 위에서 얘기하는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한 경우에 속하는지요?



R 중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중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신청인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지일 이전에 신청인이 언론사에 전화로 물어 항의했다거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신청인이 보도인지 여부를 허위 기재항목에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표견정인에게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간첩법 제16조 1항에 의거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의 문서는 아니나 이 서면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외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달판' 약속과 별개로 일단 기간도과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라도 개별접촉의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중재신청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만일 개별접촉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중재심리를 통해 화해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순수한 농촌사람들을 기만한 보도에 대하여

몇 년 전 고향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노인분들이 모종양일간지 불매운동을 해야겠다며, 몸싸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모 기자가 농촌마을의 미풍양속 등 미담을 취재하러 왔다고 하여, 반가운 마음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쏟으며, 고향 동네에서의 노인들의 일과 레저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서 취재 협조를 하고 신문에 게재될 사

진도 찍었는데, 정작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끝에 나온 신문기사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합니다. 이농현상으로 가뜩이나 적적하고 외로운 시골 노인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러한 기사는 못 쓸망정 사실을 기만하는 기사를 실어 배신감에 몸싸 분개하고 있는 고향 노인분들을 보니, 나 자신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도 만일 고향의 어른들이 언론중재위를 통하여 해당언론사를 단체로 고발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R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에 언급된 친목계원 등 당사자와 명외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수년전의 기사라면 재회 중재위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해당 보도를 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중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재신청 기간이 도과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의료전문잡지도 중재대상이 되나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비즈○○라는 잡지사에서 지난 6월, 용담동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시위를 하고 있는 제 어머니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의료사고 법정싸움만이 해결방법 인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가 의사들이 보는 의료잡지이라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잡지사에게 항의했더니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의학잡지인줄 알았다면 인터뷰도 안 했을 텐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쏙 빼놓고, 사고를 낸 병원 원장은 아직까지도 사과를 안했는데, 사과했다는 식으로 쓰고, 결정적인 건 분명 의사의 과실로 죽은 언니의 죽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은 채 시위를 하는 제 가족만 이상한 사람 만들었지 뭐니까. 중재대

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된 잡지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사자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지도 해당되나요?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련 잡지에 동호회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타 동호회와 함께 저희 동호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때 아주 편파적이고 기분 나쁜 내용이었습니다. 사과 요구에도 전혀 성의가 없더군요.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대한 저희의 동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제대로 된 정정기사 혹은 사과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팀입니다. 잡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귀하가 운영하는 동호회와 관련된 잘못된 기사가 나왔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호회가 정식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인의 형태) 단체의 명의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과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은 하실 수 없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의 허락없이 기사화된 경우

만약 신문사에 제보한 사건이 제보자의 허락 없이 보도될 수 있나요? 즉 제보한 사건을 기자가 조사를 한 후 기사를 써서 제보자의 허락없이 신문에 실을 수 있는지... 만약 보도된 내용이 제보자가 제보하려는 내용보다 부풀려 졌을 경우 그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보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있는지?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때 반드시 제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황 기사로 인해 제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보도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결과적으로 제보자의 명誉为 훼손되거나 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중재신청 가능하나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특정 공무원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언론중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속 기관장 명의로 대표해서만 할 수 있나요?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에서 특정 공무원 개인의 행동이나 발언내용 등이 보도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해당 공무원 개인의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도의 내용이 특정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무원 개인의 중재신청은 불가능하며, 기관장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전에 중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언론중재위의 중재(또는 다른 수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언론중재위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회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민형사상의 고소와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소송은 법원에 바로 제기하실 수 없으며, 사전에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실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을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

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부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

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

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문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 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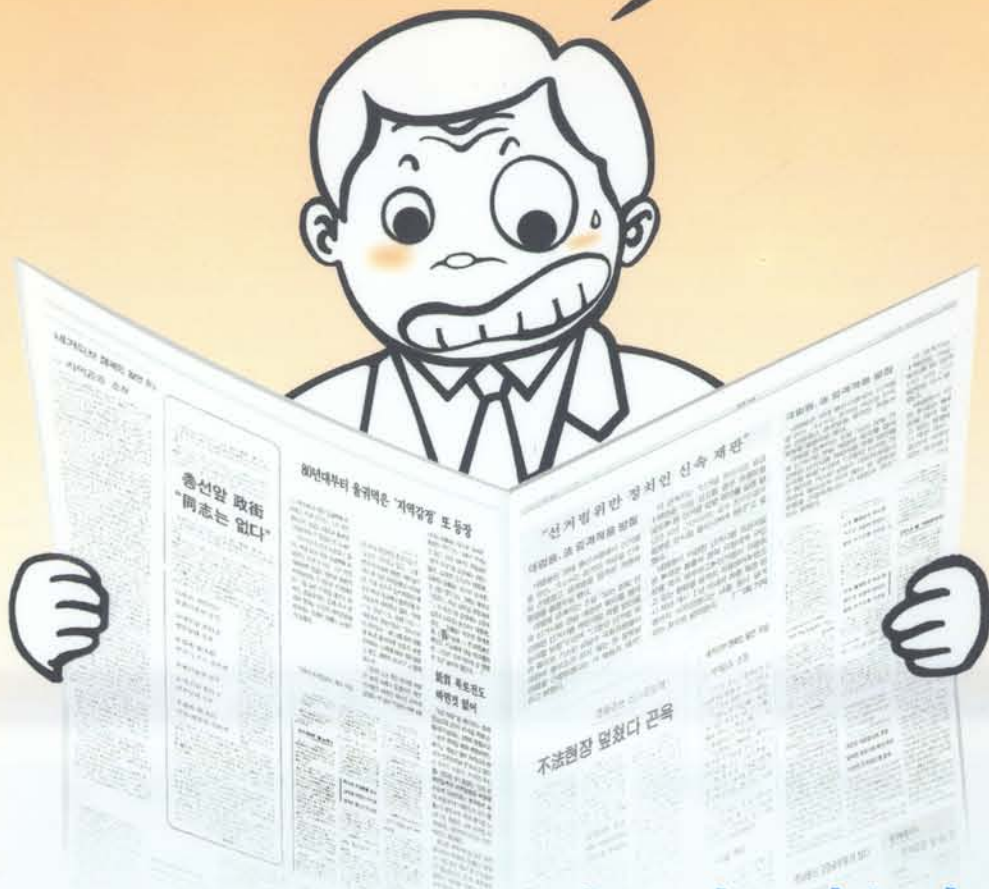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주십시오.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심의합니다.
-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회부받아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제보해 주십시오. (<http://www.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담: (02)732-6023~4

<http://www.pac.or.kr>